

#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2014. 12.

김재진·홍범교



## 서 언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쉽게 회수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자금의 선순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7년 9월에 제정된 이후로 벤처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벤처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핵심정책은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로서 벤처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현황 및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벤처산업 지원정책 의사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유효성을 실증분석하였으며,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으로 재정여건이나 벤처산업 육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소득세·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등의 제도를 강화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이 향후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책결정자는 조세지원제도 설계 및 정책 입안 시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본 연구원의 김재진 박사와 홍범교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원내 세미나 등을 통해 유익한 도움 말씀을 주신 원내 연구위원들과 외부 위원들,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집필에 큰 도움을 준 강미정 전문연구원, 허윤영 전문연구원, 함장현 인턴사원과 원고정리 및 교정을 맡아 준 주애란 연구행정원 및 출판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에 참여한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 요약 및 정책시사점

벤처기업이란 “위험은 높으나 성공 시 기대수익이 큰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생 중소기업”<sup>1)</sup>을 말한다.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쉽게 회수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자금의 선순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국정목표 중 첫 번째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핵심정책은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인 바, 벤처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1997년 9월에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벤처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벤처산업의 현황 및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벤처산업 지원정책 의사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유효성을 실증분석하였으며,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수는 2013년에는 29,135개로, 2000년 8,798개에서

---

1) 김진수·김재진(2000), p. 186.

연평균 약 19.4%씩 증가하였다. 벤처캐피탈 신규투자금액과 투자잔액은 2013년 기준으로 각각 1조 3,845억원, 4조 4,673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초기 및 중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8년 이후로 7년을 초과하는 후기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4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유형은 장외매각 및 상환이 2013년 기준 4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공개(IPO)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유형은 2008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2년 기준 16.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 수는 2013년 기준으로 신규 기업공개(IPO) 기업 수 37개 중 17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 수가 벤처기업 기업공개(IPO) 수 23개 가운데 95.7%인 22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창업단계 및 인수·합병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은 크게 벤처캐피탈의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투자 및 보유단계, 처분단계별로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물론, 벤처기업 지원요건 충족 시 추가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적용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에 있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단계별로 더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2014년 7월부터 2개월에 걸쳐 벤처기업 817개, 벤처캐피탈 23개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는 74.7%가 조세지원제도라고 응답하였으며,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77.7%, 73.9%로 높게 나타났다.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에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가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으로는 ‘자격요건 완화’가 1순위 기준 32.2%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벤처캐피탈의 경우에는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로 나타났으며, 세제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제도도 동일하게 동 제도들로 나타났다.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의 지원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기업의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유효법인세율의 크기를 1999~2013년 동안 6,42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T-test 및 ANOVA를 한 결과, 그룹별 유효법인세율의 크기는 벤처기업 < 비벤처중소기업 < 비벤처대기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기업성과가 조세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약 0.2~0.4%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당성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적 성향과 벤처투자자금 회수기회의 부족이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여 벤처기업 투자가 사회적 최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다는 시장실패<sup>2)</sup>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은 고용창출 및 장기성장을 위한 기술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OECD(1996)에서도 정부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3)</sup>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정여건이나 벤처산업 육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벤처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등의 제도를 강화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라는 벤처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자본시장으로의 접근 기회가 제한적인 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조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벤처자금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여 벤처투자자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책 방향은 재정여건이나 벤처산업 육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벤처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등의 제도를 강화하거나 벤처투자자의 투자이익 과세이연제도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가장 큰 공헌점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첫째, VENTUREIN(벤처인)에서 공시한 2014년 5월 말 기준 벤처기업 명단 약 25,000개와 NICE 신용정보(주)의 KIS-VALUE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명단 중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수작업으로 대조하여 명단을 구축하였으며, 이 중 벤처기업 817개, 벤처캐피탈 23개를 대상으로 온라인조사·전화조사·면접조사의 방법으로 2014년 7월부터 2개월에 걸쳐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벤처기업에 대한

---

2) 김진수·김재진(2000), pp. 34-37 참조

3) OECD(1996), p. 4

조세지원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 목 차

I. 서 론	23
II. 벤처산업 현황	26
1. 벤처기업	26
가. 벤처기업의 수	26
나. 경영성과	27
다. 재무 현황	28
2. 벤처캐피탈	30
가. 신규투자 현황	30
나.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	31
다. 업종별 신규투자 현황	33
라. 회수실적	34
III. 벤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37
1. 현행 조세지원제도	37
가. 벤처투자자	37
나. 벤처기업	41
2.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변천과정	46
가.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46
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57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4

---

IV.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	66
1. 미국 .....	66
가. 개관 .....	66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69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	72
라.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에 대한 조세지원 .....	76
마. 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	77
바. 연구개발(R&D)에 대한 일반적 조세지원 .....	78
2. 영국 .....	79
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79
나. 벤처캐피탈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	80
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지원 .....	90
3. 이스라엘 .....	90
가. 벤처캐피탈 관련 통계 .....	91
나. 자본투자촉진법상의 조세혜택 .....	92
다. 벤처캐피탈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우대 .....	95
라. 특정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우대 .....	96
4. 일본 .....	97
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우대 .....	99
나.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 .....	100
다. 중소기업의 자본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 .....	102
라.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일반적 세액공제 .....	102
마. 엔젤세제 .....	104
5. 대만 .....	110
가. 촉진산업등급조례(促進產業昇級條例) .....	110
나. 산업창신조례(產業創新條例) .....	114

---

6.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116
<b>V.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 .....</b>	<b>120</b>
1. 조사 개요 .....	120
가. 조사 목적 .....	120
나. 조사 내용 .....	120
다. 조사 설계 .....	121
라. 응답자 특성 .....	122
2. 조사 결과 .....	126
가. 벤처기업 .....	126
나. 벤처캐피탈 .....	149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69
가. 벤처기업 .....	169
나. 벤처캐피탈 .....	170
다. 정책적 시사점 .....	172
<b>VI.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b>	<b>173</b>
1. 선행연구 .....	173
2. 연구설계 .....	175
가. 자료수집 및 표본선정 .....	175
나. 분석방법 및 변수 측정 .....	177
3. 실증분석 결과 .....	181
가. 기술통계량 .....	181
나. 분석결과 .....	182
4. 요약 및 시사점 .....	186

---

Ⅶ.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	187
1. 벤처산업 조세지원의 타당성 .....	187
2.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	189
3.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선택과 집중 .....	191
가. 실효성 없는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	192
나. 실효성 있는 제도 지원 강화 .....	196
Ⅷ. 요약 및 결론 .....	204
참고문헌 .....	209
부 록: 질문지 .....	214

---

---

## 표목차

〈표 II-1〉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연도별 경영성과 비교 .....	27
〈표 II-2〉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연도별 자본구조 비교 .....	29
〈표 II-3〉 연도별 신규투자 현황 .....	30
〈표 II-4〉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 .....	32
〈표 II-5〉 업종별 신규투자 현황 .....	33
〈표 II-6〉 연도별 회수실적 비중 .....	34
〈표 II-7〉 연도별 코스닥 IPO .....	36
〈표 III-1〉 벤처투자자 관련 투자주체별·단계별 세제지원 현황 .....	38
〈표 III-2〉 벤처투자자 투자단계 세제지원 .....	39
〈표 III-3〉 벤처투자자 보유단계 세제지원 .....	40
〈표 III-4〉 벤처투자자 양도단계 세제지원 .....	41
〈표 III-5〉 벤처기업 관련 단계별 세제지원 현황 .....	42
〈표 III-6〉 창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44
〈표 III-7〉 벤처기업 인수·합병 단계 세제지원 .....	45
〈표 III-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변화 추이 .....	48
〈표 III-9〉 벤처투자자 보유단계 세제지원 변화 추이 .....	52
〈표 III-10〉 벤처투자자 관련 주식 등 양도 시 세제지원 추이 .....	56
〈표 III-11〉 벤처기업 창업단계 세제지원 변천과정 .....	59
〈표 III-12〉 벤처기업 인수·합병단계 세제지원 변천과정 .....	63
〈표 IV-1〉 연도별 미국 벤처캐피탈 펀드의 수 및 모집금액 .....	66
〈표 IV-2〉 연도별·투자단계별 벤처캐피탈 투자액 추이 .....	67
〈표 IV-3〉 미국의 법인세율(2014) .....	70

---

〈표 IV-4〉 기업 유형의 연도별 변천 추이 .....	77
〈표 IV-5〉 영국의 법인세율(2011~2014년) .....	80
〈표 IV-6〉 영국 VCT를 통해 조성된 펀드의 크기와 VCT의 수 .....	82
〈표 IV-7〉 영국 EIS를 이용해 펀드를 조성한 기업 .....	87
〈표 IV-8〉 이스라엘의 자본투자촉진법상의 세제혜택 .....	94
〈표 IV-9〉 일본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	100
〈표 IV-10〉 일본의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	102
〈표 IV-11〉 R&D 시험연구비와 기타비용 .....	103
〈표 IV-12〉 엔젤세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분류 기준(2010) .....	104
〈표 IV-13〉 엔젤세제 중 우대 조치 A의 수혜 요건 .....	106
〈표 IV-14〉 우대 조치 A의 적용 사례 .....	106
〈표 IV-15〉 엔젤세제 중 우대 조치 B의 수혜 요건 .....	107
〈표 IV-16〉 우대 조치 B의 적용 사례 .....	107
〈표 IV-17〉 대만의 벤처 관련 조례의 일몰·제정 후의 조세지원제도 비교 .....	115
〈표 IV-18〉 각국의 벤처기업/캐피탈 관련 조세지원제도 정리 .....	118
〈표 V-1〉 조사 항목 .....	121
〈표 V-2〉 표본 설계 .....	122
〈표 V-3〉 조사 방법 .....	122
〈표 V-4〉 응답자 특성 - 벤처기업 .....	123
〈표 V-5〉 응답자 특성 - 벤처캐피탈 .....	125
〈표 V-6〉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	126
〈표 V-7〉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여부 .....	128
〈표 V-8〉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	129
〈표 V-9〉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	131
〈표 V-10〉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132

---

〈표 V-11〉 실효성이 높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134
〈표 V-1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135
〈표 V-13〉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136
〈표 V-14〉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138
〈표 V-15〉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140
〈표 V-16〉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폐지해야 할 제도	141
〈표 V-17〉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142
〈표 V-18〉 신설이 필요한 조세지원제도	144
〈표 V-19〉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벤처기업)	145
〈표 V-20〉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	147
〈표 V-2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여부	150
〈표 V-2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151
〈표 V-23〉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152
〈표 V-24〉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153
〈표 V-25〉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54
〈표 V-26〉 실효성이 높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156
〈표 V-27〉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157
〈표 V-28〉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158
〈표 V-29〉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159
〈표 V-30〉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160
〈표 V-31〉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폐지해야 할 제도	161
〈표 V-32〉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162
〈표 V-33〉 신설이 필요한 조세지원제도	163
〈표 V-34〉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벤처캐피탈)	164

---

〈표 V-35〉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벤처캐피탈) .....	166
〈표 V-36〉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벤처캐피탈) .....	168
〈표 VI-1〉 우리나라 명목법인세율 변천과정 .....	178
〈표 VI-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180
〈표 VI-3〉 기술통계량 .....	181
〈표 VI-4〉 상관관계분석 .....	182
〈표 VI-5〉 연도별 평균 유효법인세율 .....	183
〈표 VI-6〉 벤처기업과 비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 차이 검증결과 .....	184
〈표 VI-7〉 조세지원제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	185
〈표 VII-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활용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순위) .....	194
〈표 VII-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활용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순위) .....	196

---

---

## 그림목차

[그림 II-1] 벤처기업의 수 추이 .....	26
[그림 II-2] 연도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추이 비교 .....	28
[그림 II-3] 연도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지분구조 추이 비교 .....	29
[그림 II-4] 연도별 신규투자 추이 .....	31
[그림 II-5] 업력별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추이 및 규모 .....	32
[그림 II-6] 업종별 투자 현황 .....	33
[그림 II-7] 연도별 회수실적 추이 .....	35
[그림 II-8] 연도별 코스닥 IPO 추이 .....	36
[그림 IV-1] 연도별·투자단계별 벤처캐피탈 투자 비중 추이 .....	68
[그림 IV-2] 미국 지역별 벤처캐피탈 투자액 .....	69
[그림 IV-3] 회계연도별 영국 VCT를 통해 조성된 펀드의 규모 .....	83
[그림 IV-4] 회계연도별 영국 VCT의 수 .....	83
[그림 IV-5] 각국별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비율 .....	91
[그림 IV-6] 이스라엘 첨단기술 캐피탈(high-tech capital) 모금액 .....	92
[그림 IV-7] 일본의 벤처기업 투자 현황 .....	98
[그림 IV-8] 일본의 기업 수에 따른 개·폐업률의 추이(1차 산업 제외) .....	98
[그림 IV-9] 일본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메커니즘 .....	101
[그림 V-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	127
[그림 V-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여부 .....	128
[그림 V-3]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	130
[그림 V-4]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	131

---

[그림 V-5]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132
[그림 V-6] 실효성이 높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	133
[그림 V-7]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	135
[그림 V-8]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	137
[그림 V-9]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	139
[그림 V-10]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	140
[그림 V-11]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폐지해야 할 제도 .....	142
[그림 V-12]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	143
[그림 V-13]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 .....	146
[그림 V-14]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벤처기업) .....	148
[그림 V-15]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벤처기업) .....	149
[그림 V-16]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여부 .....	150
[그림 V-17]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	152
[그림 V-18]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	153
[그림 V-19]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	154
[그림 V-20]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155
[그림 V-21] 실효성이 높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	156
[그림 V-2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	157
[그림 V-23]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	158
[그림 V-24]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	160
[그림 V-25]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	161
[그림 V-26]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폐지해야 할 제도 .....	162
[그림 V-27]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	163
[그림 V-28]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 .....	165

---

[그림 V-29]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벤처캐피탈) .....	167
[그림 V-30]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벤처캐피탈) .....	169
[그림 VI-1] 연도별 평균 유효법인세율 추이 .....	183

---



---

# I. 서론

---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수는 1998년 2,042개에서 연평균 약 19.4%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29,135개에 이르렀다. 또한, 벤처캐피탈 신규투자금액은 2013년 기준 1조 3,84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잔액도 200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기준 4조 4,673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벤처캐피탈의 투자액 비중은 2012년 기준 0.054%로 통계가 가용한 31개의 OECD 국가들 중 7위에 해당하나<sup>4)</sup>, 벤처기업의 초기 단계에서 자금조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엔젤투자금액은 2000년 5,493억원에서 2011년에는 94% 이상 크게 감소한 296억원으로, GDP 대비 0.00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현 정부의 국정목표 중 첫 번째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핵심정책은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인 바, 경제 활력을 회복하면서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처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벤처기업은 “위험은 높으나 성공 시 기대수익이 큰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생 중소기업”<sup>6)</sup>으로,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바,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쉽게 회수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자금의 선순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김진수·김재진(2000)은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

4) OECD(2013b), p. 10

5)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2), 김재진(2013), p. 37 재인용

6) 김진수·김재진(2000), p. 186

여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적 성향과 벤처투자자금의 회수 기회 부족이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투자의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시장실패”로 설명하였다.<sup>7)</sup> 즉, 벤처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여 벤처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OECD(1996)에서도 벤처기업은 고용창출 및 장기성장을 위한 기술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sup>8)</sup> 미국의 전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1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2008~2010년 동안 미국의 벤처캐피탈사들이 투자한 기업들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2.0%로 나타나 민간부문의 전체 연평균 고용증가율 -3.1%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한 동 기간 동안 벤처캐피탈사가 투자한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증가율은 1.6%인 반면, 민간부문의 연평균 매출증가율은 오히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8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1986년과 1997년에 제정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의 다양한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및 지원 수준 등을 재검토하여 기존제도의 변경 또는 추가적인 지원 등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벤처산업의 활성화 및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벤처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정리하였다. 더불어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벤처산업 지

7) 김진수·김재진(2000), pp. 34-37 요약

8) OECD(1996), p. 4

9) NVCA(2011), p. 4, 김재진(2013), pp. 47-49 요약

원정책 의사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유효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각도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가장 큰 공헌점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첫째, VENTUREIN(벤처인)에서 공시한 2014년 5월 말 기준 벤처기업 명단 약 25,000개와 NICE 신용정보(주)의 KIS-VALUE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명단 중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수작업으로 대조하여 명단을 구축하였으며, 이 중 벤처기업 817개, 벤처캐피탈 23개를 대상으로 온라인조사·전화조사·면접조사의 방법으로 2014년 7월부터 2개월에 걸쳐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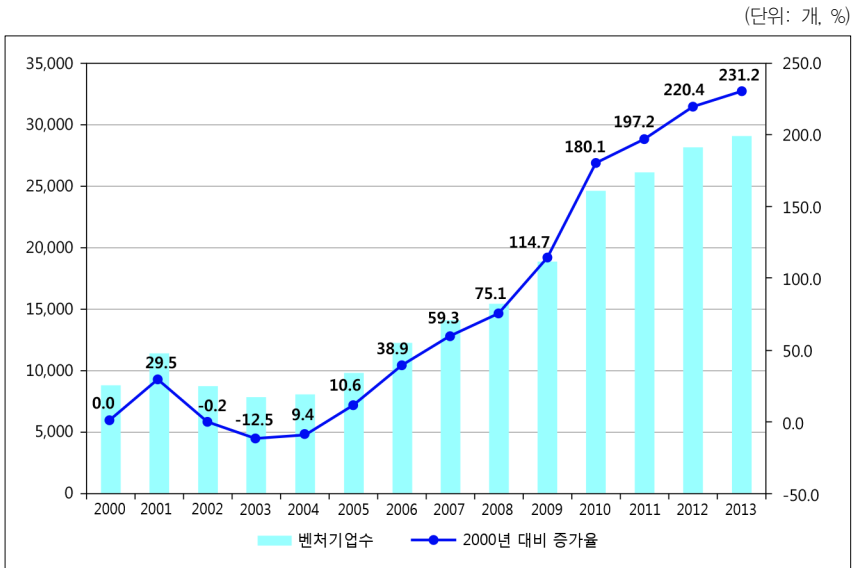
## II. 벤처산업 현황<sup>10)</sup>

### 1. 벤처기업<sup>11)</sup>

#### 가. 벤처기업의 수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수는 2002~2003년 'IT 벤처 버블' 붕괴로 인하여 크게 감소하였다가 2004년 정부가 추진한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그림 II-1] 벤처기업의 수 추이



자료: 중소기업청(2014),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p. 4, 김재진(2013), p. 14를 참조하여 업데이트

10) 김재진(2013), pp. 13~21을 바탕으로 하여 가장 최근의 수치로 업데이트하여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여 분석함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기술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확충, 현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창조경제의 일환인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2013년에는 29,135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8년 2,042개에서 약 1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1998년 이후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9.4%를 보이고 있다.

## 나. 경영성과

최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는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벤처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5.2%로 중소기업 3.2%, 대기업 4.7%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순이익률도 이와 유사하게 벤처기업이 가장 양호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수익성은 2008년 이후로 경쟁 심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정보통신 분야의 호조로 인하여 2012년 이후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연도별 경영성과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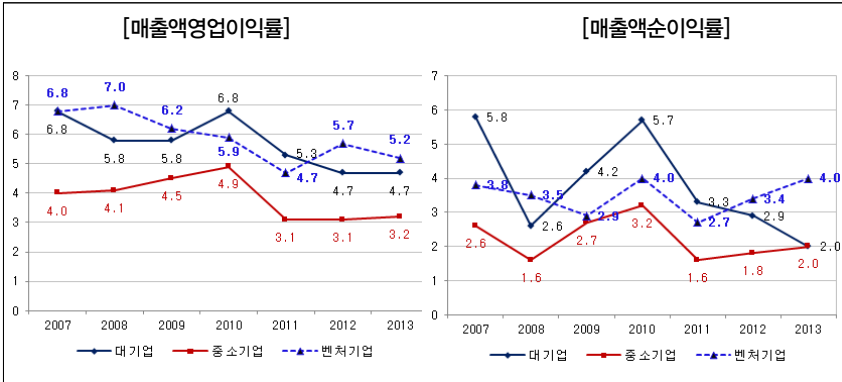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2007	6.8	4	6.8	5.8	2.6	3.8
2008	5.8	4.1	7.0	2.6	1.6	3.5
2009	5.8	4.5	6.2	4.2	2.7	2.9
2010	6.8	4.9	5.9	5.7	3.2	4.0
2011	5.3	3.1	4.7	3.3	1.6	2.7
2012	4.7	3.1	5.7	2.9	1.8	3.4
2013	4.7	3.2	5.2	2.0	2.0	4.0

주: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 100, 매출액순이익률 = (순이익/매출액) × 1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p. 20 재인용, 김재진(2013), p. 15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그림 II-2] 연도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p. 20 재인용, 김재진(2013), p. 16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 다. 재무 현황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서 2013년 12월 말 기준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의 부채비율은 대기업보다는 높고,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자본비율도 대기업보다는 전반적으로 낮고, 중소기업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부채비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3년 동안에는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1년도의 경우 벤처기업의 부채비율은 2010년 대비 4.6%p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각각 42.2%p, 42.8%p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II-2〉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연도별 지분구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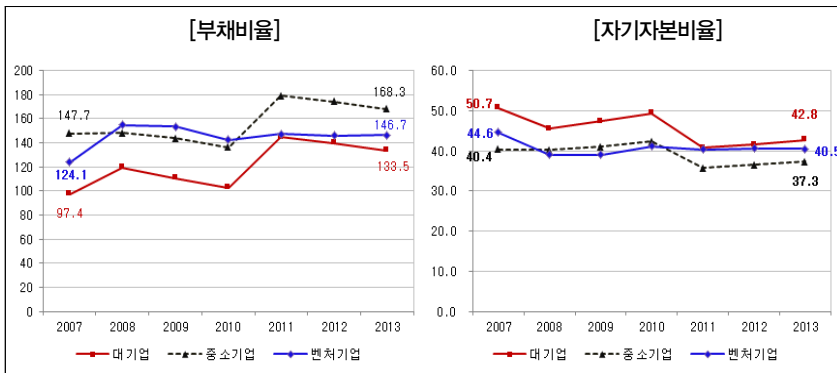
(단위: %)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2007	97.4	147.7	124.1	50.7	40.4	44.6
2008	119.4	148.3	154.9	45.6	40.3	39.1
2009	110.9	144.0	153.7	47.4	41.0	39.1
2010	102.7	136.4	142.7	49.3	42.3	41.2
2011	144.9	179.2	147.3	40.8	35.8	40.4
2012	140.1	174.3	146.1	41.6	36.5	40.6
2013	133.5	168.3	146.7	42.8	37.3	40.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p. 17 재인용, 김재진(2013), p. 16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그림 II-3] 연도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지분구조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p. 17 재인용, 김재진(2013), p. 16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 2. 벤처캐피탈<sup>12)</sup>

### 가. 신규투자<sup>13)</sup> 현황

지난 10년간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2013년 신규투자금액은 2003년 6,306억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1조 3,845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신규투자금액도 2003년 10.0억원에서 2013년에는 18.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기업에 투자된 후 회수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되어 남아 있는 투자잔액은 2006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2013년 기준 4조 4,673억원으로 집계되었다(〈표 II-3〉과 [그림 II-4] 참조).

〈표 II-3〉 연도별 신규투자 현황

(단위: 억원, 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규투자	6,306	6,044	7,573	7,333	9,917	7,247	8,671	10,910	12,608	12,333	13,845
업체 수	630	544	635	617	615	496	524	560	613	688	755
업체당 평균	10.0	11.1	11.9	11.9	16.1	14.6	16.5	19.5	20.6	17.9	18.3
투자잔액	27,627	26,271	22,675	21,957	24,781	26,613	27,628	31,010	35,913	39,525	44,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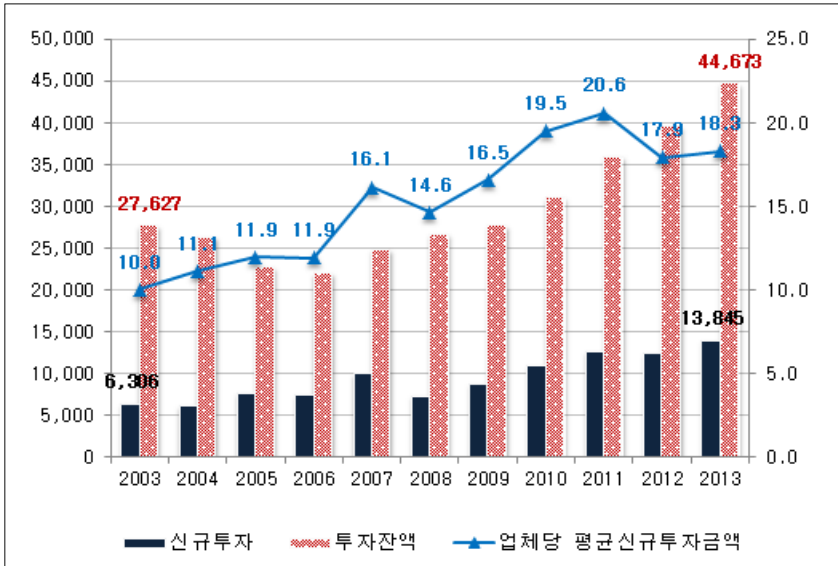
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등에 따라 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 투자만 포함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Vol. 87, 2014, 10, p. 40, 김재진(2013), p. 18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 12)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은 투자대상과 사업의 성격, 투자자의 유형, 투자방법, 벤처캐피탈 경영환경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OECD는 벤처캐피탈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생·비상장기업에 제공되는 자본(Venture capital is capital provided to young, unquoted firms with high growth potential)으로 정의하였고, 김진수(2011)는 벤처기업 설립 초기단계에 자본참여를 통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활동 및 기관으로 정의하였음(김재진(2013), p. 17 재인용)
- 13) 당해 기간 동안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이 창업 7년 이내의 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

[그림 II-4] 연도별 신규투자 추이

(단위: 억원)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Vol. 87, 2014, 10, p. 40, 김재진(2013), p. 18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 나.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현황을 벤처기업 업력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는 업력 7년 이하의 초·중기 단계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8년 이후에는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후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에는 초기단계<sup>14)</sup>와 중기단계<sup>15)</sup>의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각각 2,460억원, 3,281억원으로 그 비중은 39.0%, 52.0%로 나타났다. 반면, 후기단계<sup>16)</sup>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9.0%인 565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2003~2006년의 기간에는 벤처 버블 붕괴로 인하

14) 초기단계(Early stage, start/seed)란 창업(유망, 초기)단계로 보통 설립 후 3년 이내 기업

15) 중기단계(Expansion)란 안정(생산, 마케팅)단계로 보통 설립 후 3~7년 기업

16) 후기단계(Later stage)란 안정(성장, 회수)단계로 보통 설립 후 7년 초과 기업

여 중기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09년 이후로는 후기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40%대에 진입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약 50%인 6,887억원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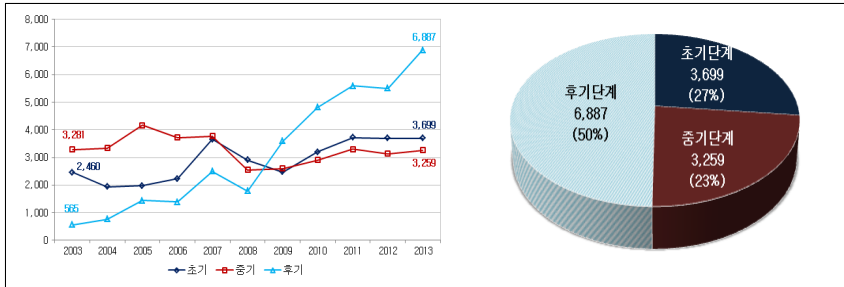
[그림 II-5] 업력별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추이 및 규모

[업력별 신규투자 추이]

(단위: 억원)

[2013년 업력별 투자비중]

(단위: 억원, %)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Vol. 87, p. 42, 2014. 10, 김재진(2013), p. 19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표 II-4>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

(단위: 억원, %)

	초기단계		중기단계		후기단계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3	2,460	39.0	3,281	52.0	565	9.0	6,306	100.0
2004	1,940	32.1	3,343	55.3	761	12.6	6,044	100.0
2005	1,972	26.0	4,162	55.0	1,439	19.0	7,573	100.0
2006	2,224	30.3	3,721	50.7	1,388	18.9	7,333	100.0
2007	3,650	36.8	3,774	38.1	2,493	25.1	9,917	100.0
2008	2,908	40.1	2,553	35.2	1,786	24.6	7,247	100.0
2009	2,476	28.6	2,601	30.0	3,594	41.4	8,671	100.0
2010	3,192	29.3	2,904	26.6	4,814	44.1	10,910	100.0
2011	3,722	29.5	3,296	26.1	5,590	44.3	12,608	100.0
2012	3,696	30.0	3,137	25.4	5,500	44.6	12,333	100.0
2013	3,699	26.7	3,259	23.5	6,887	49.8	13,845	100.0

주: 초기기업(설립후 3년 이내 기업), 중기기업(설립 후 3~7년 기업), 후기기업(설립 후 7년 초과 기업)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Vol. 87, p. 42, 2014. 10, 김재진(2013), p. 19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 다. 업종별 신규투자 현황

2013년 업종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투자금액 중 35.2%를 차지한 정보통신이 4,878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일반제조와 문화콘텐츠가 각각 3,118억원(22.5%), 2,856억원(20.6%)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는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문화콘텐츠 분야는 2008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업종별 신규투자 현황

(단위: 억원, %)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정보통신	3,409	27.0	3,511	28.5	4,878	35.2
일반제조	3,696	29.3	3,427	27.8	3,118	22.5
생명공학	933	7.4	1,052	8.5	1,463	10.6
문화콘텐츠	3,097	24.6	3,478	28.2	2,856	20.6
서비스/교육	530	4.2	234	1.9	597	4.3
원료재생/환경복원	10	0.1	103	0.8	241	1.8
유통	740	5.9	317	2.6	496	3.6
기타	193	1.5	211	1.7	193	1.4
합계	12,608	100.0	12,333	100.0	13,845	100.0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Vol. 87, p. 41, 2014, 10, 김재진(2013), p. 20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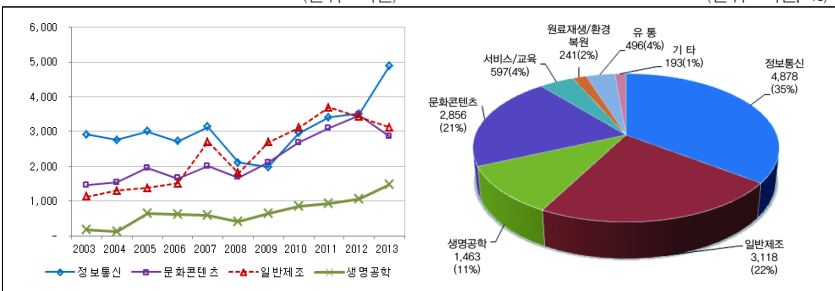
[그림 II-6] 업종별 투자 현황

[주요 업종별 투자 추이]

(단위: 억원)

[2013년 업종별 비중]

(단위: 억원, %)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Vol. 87, p. 41, 2014, 10, 김재진(2013), p. 20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 라. 회수실적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을 살펴보면, 2013년 벤처캐피탈의 회수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49.8%로 장외매각 및 상환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프로젝트 투자<sup>17)</sup> 회수와 IPO<sup>18)</sup>를 통한 회수가 각각 23.5%,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M&A를 통한 회수는 2013년 기준 0.3%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2008년 이후로 M&A를 통한 회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벤처캐피탈 회수가 장외시장 매각 및 상환의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져 벤처투자기업이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sup>19)</sup> IPO 비중은 금융위기에서 회복된 2011년 이후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에는 15.7%로 전년 대비 2.1%p 감소하였다.

〈표 II-6〉 연도별 회수실적 비중

(단위: %)

	IPO	M&A	프로젝트	장외매각 및 상환	기타 <sup>1)</sup>	합계
2003	19.6	0.8	18.5	61.1	0	100.0
2004	17.7	2.4	15.1	64.7	0.1	100.0
2005	21.4	3.3	15.6	59.7	0	100.0
2006	23.2	4.7	16.5	55.6	0	100.0
2007	17.2	2.6	17.7	62.5	0	100.0
2008	17.1	5.9	23.2	53.8	0	100.0
2009	15.7	7.1	16.4	59.2	1.6	100.0
2010	14.2	4.9	23.7	56.2	1.0	100.0
2011	18.1	1.5	18.5	61.3	0.6	100.0
2012	17.8	1.0	22.4	56.0	2.8	100.0
2013	15.7	0.3	23.5	49.8	10.7	100.0

주: 1) 기타는 해외투자 등을 의미함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Vol. 87, p. 45, 2014, 10, 김재진(2013), p. 21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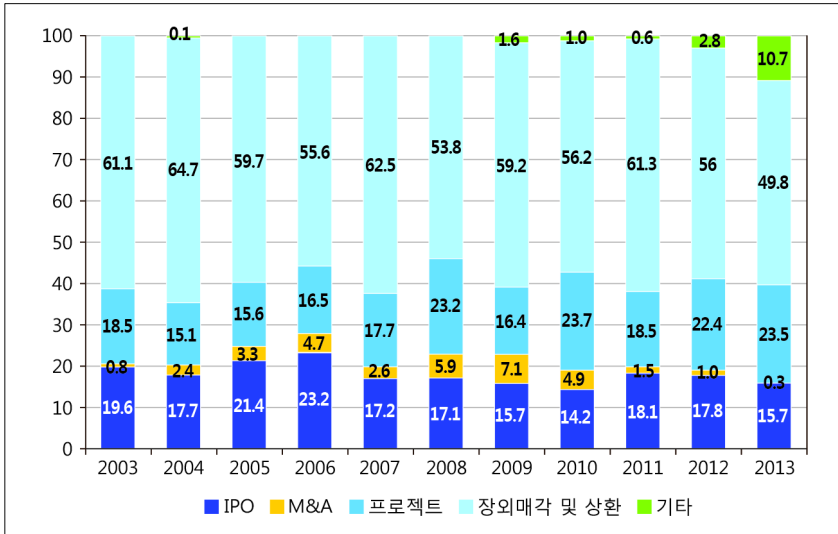
17) 프로젝트 투자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의 일환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한 이후 그로부터 연계 되는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투자를 말함

18)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란 코스닥 등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것임

19) 김재진(2013), p. 21.

[그림 II-7] 연도별 회수실적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Vol. 87, p. 45, 2014, 10, 김재진(2013), p. 22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한편,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1,009개사, 신규 IPO 기업 수는 37개로 나타났다. 2013년 신규 IPO기업 37개 중 벤처기업의 IPO 수는 약 77.3%인 23개였으며, 이 중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KVF)로부터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의 IPO 수는 95.7%인 22개로, 대부분이 이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신규 IPO 수는 2011년 63개에서 65.1%(41건)나 급감한 22개였다가 2013년에는 37개로 다소 회복되었다.

〈표 11-7〉 연도별 코스닥 I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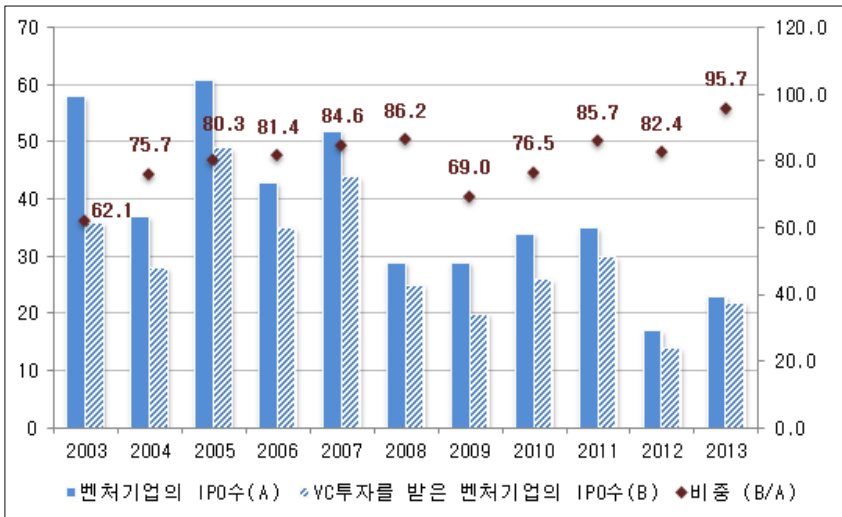
(단위: 개,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상장기업 수(누계)	879	890	918	963	1,023	1,038	1,028	1,029	1,031	1,005	1,009
IPO 수	71	52	70	56	67	38	55	76	63	22	37
벤처기업의 IPO수(A)	58	37	61	43	52	29	29	34	35	17	23
VC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의 IPO수(B)	36	28	49	35	44	25	20	26	30	14	22
비중 (B/A)	62.1	75.7	80.3	81.4	84.6	86.2	69.0	76.5	85.7	82.4	95.7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Vol. 87, p. 46, 2014, 10, 김재진(2013), p. 22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그림 11-9] 연도별 코스닥 IPO 추이

(단위: 개, %)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Vol. 87, p. 46, 2014, 10, 김재진(2013), p. 22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

## Ⅲ. 벤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은 1997년 8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로 벤처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시행한 다양한 벤처지원제도와 전 세계의 벤처붐에 힘입어 큰 성장을 이루었다. 벤처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금융지원, 벤처기업의 보증 및 보험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지원 및 기술인력지원 등과 같은 일반지원과 더불어 소득세·법인세 감면,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취·등록세 면제 등과 같은 조세지원제도가 있다. 본 장에서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현행 조세지원제도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크게 벤처투자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가. 벤처투자자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은 크게 벤처캐피탈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투자 및 보유단계, 양도단계에서 광범위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1〉 벤처투자자<sup>1)</sup> 관련 투자주체별·단계별 세제지원 현황

벤처 관련 주체별		단계별 세제지원	
벤처 투자자	개인 (엔젤)	투자단계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양도단계	②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합	투자단계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보유단계	② 벤처투자조합 배당소득·귀속소득 원천징수특례 ③ 벤처투자조합 소득금액 계산특례(이자·배당소득 필요경비 인정)
		양도단계	④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⑤ 벤처기업 등 출자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법인	양도단계	①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기금운용법인 <sup>2)</sup> 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벤처 캐피탈	보유단계
	양도단계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③ 벤처기업 등 출자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주: 1) 벤처투자자는 벤처캐피탈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와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음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2

자료: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

### 1) 투자단계

벤처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들 수 있다. 이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조세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효성을 높이고자 1999년부터 도입·시행되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경우에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이며, 공제한도는 총소득금액의 50%로 한다. 그러나 개인 등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때 투자금액 중 5천만원 이하 시 50%, 5천만원 초과 시 3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2〉 벤처투자자 투자단계 세제지원

구분	내 용	관계법령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일 또는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투자 또는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한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li> <li>소득공제율 및 한도</li> </ul>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제율</th> <th>한도</th> </tr> </thead> <tbody> <tr> <td>조 합</td> <td>10%</td> <td rowspan="2">종합소득금액×50%</td> </tr> <tr> <td>개 인 *</td> <td>30%/50%</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율	한도	조 합	10%	종합소득금액×50%	개 인 *	30%/50%
	구분		공제율	한도						
	조 합		10%	종합소득금액×50%						
개 인 *	30%/50%									
주: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보유기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 시 추정</li> </ul>										

자료: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

## 2) 보유단계

보유단계에서는 벤처기업 등 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및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등의 세제혜택이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그리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과 귀속소득 원천징수 시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표 III-3〉 벤처투자자 보유단계 세제지원

구분	내용	관계법령
벤처기업 등 투자 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li> </ul>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3항
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li> </ul>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분배금에 대하여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li> </ul>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 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함</li> </ul>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

자료: 김재진(2013), p. 28

### 3) 양도단계

벤처기업의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면제함으로써, 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 주식 보유로 인하여 받는 배당소득과 해당 주식의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양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또한 면제한다. 개인투자자에게도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표 III-4〉 벤처투자자 양도단계 세제지원

구분	내 용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보유한 특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li> <li>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li> <li>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li> <li>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할 경우</li> </ul>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 2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투자자 및 투자조합이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li> <li>① 개인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기업에 출자 시</li> <li>② 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시</li> </ul>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li> </ul>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자료: 김재진(2013), p. 29

## 나. 벤처기업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더불어 벤처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단계와 인수·합병 단계로 크게 구분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에서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다.

〈표 III-5〉 벤처기업 관련 단계별 세제지원 현황

벤처 관련 주체별	단계별 세제지원	
벤처기업	창업단계	①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지방세 감면: 재산세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면제
	인수·합병단계	①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의 과세특례 ② 벤처기업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2012년말까지 합병한 경우만 허용)

자료: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

### 1) 창업단계

#### ①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해당 사업으로 인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지방세의 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간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인지세는 2년간 전액 면제하고 있다. 창업일로부터 5년간 사업용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세도 50%의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 창업중소기업 등의 설립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 ㉡ 주소변경 등기: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 ㉢ 벤처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벤처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등기

또한 예비창업벤처기업(벤처기업 확인 후 6월 이내 설립등기)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면제한다. 또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리고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한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및 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한다.

〈표 III-6〉 창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	감면기간	감면세율	관계법령
① 소득세·법인세	최초소득발생 연도와 그 다음연도 개시일 ~ 5년 내	5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②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4년 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20조 제3항
	재산세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5년 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인지세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2년 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9호
	농어촌특별세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한 농특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자료: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

## 2) 인수·합병단계

### ①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창업단계뿐만 아니라 인수합병단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주식 교환 또는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현 시까지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제휴법인의 주주(그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0% 이상 보유한 주주)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 또는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롭게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주주가 주식 교환 또는 현물출자(주식 교환 등)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sup>20)</sup>

과세이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제휴법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제휴법인의 주주와 벤처기업 간에 주식 교환 또는 주식현물출자(주식 교환 등)를 통하여 벤처기업과 제휴법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 교환 등이 이루어질 것, 둘째, 제휴법인의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의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셋째,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 교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 간에 체결할 것 등이다.

②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2007년부터 벤처기업을 흡수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동 제도는 현행 「법인세법」상 합병과세 특례 규정으로도 세제지원이 충분하여 제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적용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표 III-7〉 벤처기업 인수·합병 단계 세제지원

구분	내 용	관련 법령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시)가 소유하는 주식을 벤처기업(주권상장 법인 제외)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li> </ul>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2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벤처기업 포함)이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비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li> </ul>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3

자료: 김재진(2013), p. 26

20) 「조특법」 제46조의 2

## 2.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변천과정<sup>21)</sup>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귀속소득 원천징수 특례규정 및 취득등록세 감면 외에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감면 등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벤처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세제지원은 크게 벤처투자자 지원과 벤처기업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벤처투자자는 투자단계, 보유단계 및 양도단계로, 벤처기업은 창업단계와 인수·합병단계로 나누어 세제지원의 연도별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크게 투자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로 나누어 연도별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투자단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실효성을 높이고자, 1998년도 세법개정에서는 1999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출자금액의 2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20%를 소득공제하며<sup>22)</sup>, 공제한도는 총소득금액의 70%로 한다.<sup>23)</sup>

그러나 1999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엔젤투자자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여 1999년 8월 31일 이후 출자 및 투자분부터 적용한다.<sup>24)</sup>

21)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중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발췌하여 정리함

22) 「조특법」 제16조 제1항

23) 「조특법 시행령」 제14조

그리고 2000년도 세법개정에서는 벤처기업, 창투조합, 벤처기업증권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 등에 개인이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30%를 종합소득(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70%)에서 공제하는 규정의 일몰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sup>25)</sup>

그러나 2001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출자금의 소득공제율을 15%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종합소득금액의 50%로 축소하였다. 2003년 세법개정에서는 2004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2005년도 세법개정에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개인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금에 대해 15%(종합소득금액 50% 한도)를 공제해 주던 출자대상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하여 2005년 7월 13일 이후 최초 출자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였다.<sup>26)</sup>

2006년도 세법개정에서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자 및 투자분부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율을 10%로 축소하지만,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원임을 감안하여 일몰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sup>27)</sup>

2008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규정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자 및 투자분부터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30%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2010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창투조합, 벤처조합 및 벤처기업 등<sup>28)</sup>에 출자할 경우에 출자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던 규정이 2010년 말로 일몰됨에 따라, 이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출자·투자분부터 적용하였다.<sup>29)</sup>

---

24) 「조특법」 제16조 제1항

25) 「조특법」 제16조 제1항

26) 「조특법」 제16조 제1항

27) 「조특법」 제16조 제1항

2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투자

2011년도 세법개정에서는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자분까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투자금액의 20%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로 확대하였다.<sup>30)</sup>

2012년도 세법개정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자분까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로 조정하고, 예외규정을 두어 개인이 직접 또는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로 상향 조정하였다.<sup>31)</sup>

그리고 2013년도 세법개정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1일 출자 및 투자분부터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율 적용의 예외규정을 둔다.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0%, 5천만원 초과하는 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였다.<sup>32)</sup>

〈표 III-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변화 추이

시행연도	개정내용
1999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출자금액의 20%</li> <li>•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70%</li> <li>• 일몰시한: 2000.12.31</li> </ul>
1999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출자금액의 30%로 상향 조정</li> <li>•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70%</li> <li>• 일몰시한: 1999.8.31 ~ 2003.12.31 까지</li> </ul>

29) 「조특법」 제16조 제1항

30) 「조특법」 제16조 제1항

31) 「조특법」 제16조 제1항

32) 「조특법」 제16조 제1항, 「조특법」 제132조, 「조특법 시행령」 제14조

〈표 III-8〉의 계속

시행연도	개정내용
2001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시한 연장(2001.1.1 ~ 2003.12.31까지)
2002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출자금액의 15% 하향 조정</li> <li>•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50% 축소</li> </ul>
2004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시한 연장(2004.1.1 ~ 2006.12.31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출자금액의 15%</li> <li>•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50%</li> </ul>
2005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대상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출자금액의 15%</li> <li>•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50%</li> <li>• 일몰시한: 2005.7.13 ~ 2006.12.31</li> </ul>
2007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출자금액의 10% 하향 조정</li> <li>•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50%</li> <li>• 일몰시한 연장: 2007.1.1 ~ 2008.12.31까지</li> </ul>
2009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출자금액의 10%</li> <li>•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30%</li> <li>• 일몰시한: 2009.1.1 ~ 2010.12.31까지 연장</li> </ul>
2011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출자금액의 10%</li> <li>•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30%</li> <li>• 일몰기한 연장: 2011.1.1 ~ 2012.12.31까지</li> </ul>
2012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예외 규정 및 일몰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예외 규정(개인이 직접 또는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li> <li>•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li> <li>• 일몰시한: 2012.1.1 ~ 2012.12.31까지</li> </ul>
2013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예외 규정 및 일몰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예외 규정(개인이 직접 또는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로 상향 조정)</li> <li>•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li> <li>• 일몰시한: 2013.1.1 ~ 2013.12.31까지</li> </ul>
2014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예외 규정(개인이 직접 또는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li> <li>•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50%</li> <li>• 일몰시한: 2014.1.1 ~ 2014.12.31까지</li> </ul>

자료: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

## 2) 보유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보유단계에서의 세제지원은 크게 ① 벤처기업 등 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② 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귀속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그리고 ③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제지원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벤처기업 등 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1998년도 세법개정에서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sup>33)</sup>

그리고 2003년도 세법개정에서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2006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하였다.

2010년도 세법개정에서는 벤처기업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일몰시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2013년도 세법개정에서도 이를 다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 ② 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귀속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997년도 세법개정에서 1997년 8월 30일부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지급될 때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규정을 신설하였다.<sup>34)</sup> 즉, 투자조합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였다.

2005년도 세법개정에서는 투자조합으로부터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대상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하여 2005년 7월 13일 이후 최초 출자분부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하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

33) 「조특법」 제13조 제2항

34) 「조감법」 제13조 제5항, 1998년 이후에 「조특법」 제14조 제5항

함으로써 창업자 및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sup>35)</sup>

2010년도 세법개정에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이자,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일몰규정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다.<sup>36)</sup>

2012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중소기업 창투자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원천별로 원천징수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로 하였다.<sup>37)</sup>

### ③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1997년도 세법개정에서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 등으로 하였다.<sup>38)</sup> 2000년도 세법개정에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sup>39)</sup>

2005년도 세법개정에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주체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동일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해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로 처리하였다.

---

35) 「조특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

36) 「조특법」 제14조 제5항

37) 「조특법」 제14조 제5항

38) 「조감법」 제13조 제6항, 1999년 이후에 「조특법」 제14조 제6항

39) 「조특법」 제13조 제4항

〈표 III-9〉 벤처투자자 보유단계 세제지원 변화 추이

시행연도	개정내용
1997	- 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특례규정 신설(1997.8.30) -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규정 신설(1997.8.30)
1999	- 벤처기업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1999.1.1~2003.1.2,31까지)
2000	-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이자, 배당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설
2004	- 벤처기업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2004.1.1~2006.12.31까지)
2005	- 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특례 대상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 (2005.7.13부터)
2007	- 벤처기업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2007.1.1~2009.1.2,31까지)
2010	- 벤처기업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2010.1.1~2012.1.2,31까지) - 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 일몰규정 일몰기한 연장 (2010.1.1~2012.12.31까지)
2013	- 벤처기업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2013.1.1~2014.1.2,31까지) - 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 특례규정 일몰기한 연장 (2013.1.1~2014.12.31까지)

자료: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

### 3) 양도단계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다.

#### ① 창업자 등예의 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1998년도 세법개정에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주식을 취득한 경우 포함)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sup>40)</sup> 이때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기업에 대한 출자이어야 하며,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이거나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어야 하였다. 그리고 출자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처리하였다.<sup>41)</sup> 이 규정은 특수관계가 없고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00년도 세법개정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창투자, 신기술금융사가 창투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출자와 동일하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도록 하였다.<sup>42)</sup> 이때 비과세 주식은 선입선출법으로 판정하며, 비과세 양도차익은 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2001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관투자가 창투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당해 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처리의 적용시한을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1년간 연장하였다.<sup>43)</sup>

2002년도 세법개정에서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 시 비과세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sup>44)</sup>

2005년도 세법개정에서는 2005년 7월 13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한국

---

40) 「조특법」 제13조 제2항

41) 「조특법」 제14조 제1항

42) 「조특법」 제13조

43) 「조특법」 제14조 제2항

44) 「조특법」 제14조 제2항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하고자 한다.<sup>45)</sup> 그리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주체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해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배당소득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처리하였다.

2006년도 세법개정에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주식 등에 대해서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과세특례 일몰 규정을 신설하고,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비과세처리한다.<sup>46)47)</sup> 이 규정의 일몰기한을 신설한 것은 조세지원제도의 항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도 세법개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시한을 2012년 12월 31일 출자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일몰규정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2011년도 세법개정에서는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sup>48)</sup>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sup>49)</sup>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던 대상에 농식품투자조합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sup>50)</sup>를 추가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였다.<sup>51)</sup> 그리고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또는 출자지분) 중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하던 의무보유기간을 2012년 2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3년으로 완화하였다. 이는 투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

---

45) 「조특법」 제13조와 제14조

46) 「조특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47) 「조특법」 제14조 제1항

4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

49)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금융업자 등

50)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이 20% 이상 출자하여 만든 회사

51) 「조특법」 제14조

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14년 말로 하였다.<sup>52)</sup> 그리고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하여 2014년 12월 31일로 하였다. 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출자한 창업자, 벤처기업 등 주식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주식(출자후 3년 경과된 것), 장외호가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 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였다.

## ② 벤처기업 등 출자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벤처기업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9년도 세법개정에서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였다.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결성된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sup>53)</sup>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일몰 도래 시점에 일몰시한을 연장하여 왔으며, 2012년도 세법개정에서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규정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

52) 「조특법」 제13조

53) 「조특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표 III-10〉 벤처투자자 관련 주식 등 양도 시 세제지원 추이

시행연도	개정내용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규정 신설</li> <li>- 창업자 등의 출자에 관한 과세특례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투자자 및 투자조합이 창업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li> <li>•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의무보유기간 5년 이내일 것</li> </ul> </li> </ul>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2000.1.1~2003.12.31까지)</li> </ul>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투자등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제외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소유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해 취득할 경우는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li> </ul> </li> <li>- 창업자 등의 출자에 관한 과세특례(주식 및 출자지분양도차익 비과세) 일몰 적용(2001.1.1~2001.12.31까지)</li> </ul>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 등의 출자에 관한 과세특례(주식 및 출자지분양도차익 비과세) 일몰 연장(2002.1.1~2002.12.31까지)</li> </ul>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 등의 출자에 관한 과세특례(주식 및 출자지분양도차익 비과세) 일몰 연장(2003.1.1~2005.12.31까지)</li> </ul>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일몰연장 (2006.12.31까지)</li> </ul>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대상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포함(2005.7.13~)</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규정 신설 (2007.1.1~2009.12.31 출자분까지)</li> <li>-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일몰 연장 (2007.1.1~2009.12.31까지)</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시한 연장 (2010.1.1~2012.12.31 출자분까지)</li> <li>-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일몰연장 (2010.1.1~2012.12.31까지)</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 등의 출자에 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2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출자주식 의무보유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으로 완화</li> </ul> </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시한 연장 (2013.1.1~2014.12.31 출자분까지)</li> <li>-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일몰 연장 (2013.1.1~2014.12.31까지)</li> </ul>

자료: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

## 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1) 창업단계

#### ① 소득세·법인세 감면

1999년도 세법개정에서는 1994년부터 소득세·법인세 50%를 감면해주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1999년 8월 3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 벤처확인일 이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까지 발생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sup>54)</sup>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도권외의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벤처기업전용단지 등 입주요건을 폐지하여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2003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소득세, 법인세 세액 감면(50%) 기간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축소하였다.<sup>55)</sup>

2007년도 세법개정에서는 기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기간을 창업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일몰 없이 운용되는 조세감면제도를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고<sup>56)</sup>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다.

2012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50%) 기간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다음 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다.<sup>57)</sup> 이는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창

54) 「조특법」 제6조

55) 「조특법」 제6조

56) 「조특법」 제6조

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창업·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13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재산세 50% 감면대상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규정하였다.<sup>58)</sup>

## ② 지방세감면

1999년 8월 31일 이후 최초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분부터 창업 후 2년간 취·등록세를 100% 면제하였다.<sup>59)</sup> 또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였다.<sup>60)</sup>

2000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설립등기)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때문에 창업 시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1년 1월 이후 등기분 및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창업하는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 등록세 및 농특세를 비과세 처리하였다.<sup>61)</sup> 또한 창업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감면세액에 대해서 농특세를 비과세하였다.<sup>62)</sup>

2007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창업초기 벤처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2008년 1월 1일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취등록세 면제 기간을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로 감면기간을 확대하였다.<sup>63)</sup>

---

57) 「조특법」 제6조

58) 「조특법」 제121조

59) 「조특법」 제119조, 제120조

60) 「조특법」 제121조

61) 「조특법」 제119조

6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63) 「조특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

### ③ 사업손실준비금제도 손금산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손금산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2005년도 세법개정에서 2002년 12월 31일에 일몰시한이 종료된 사업손실준비금제도를 재도입하였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위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 2005년 7월 13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상장하는 벤처기업부터 적용하며 일몰시한은 2006년 12월 31일로 하였다.<sup>64)</sup> 그러나 이 규정은 2006년도 세법개정에서 일몰기한 도래로 폐지하였다.

〈표 III-11〉 벤처기업 창업단계 세제지원 변천과정

시행연도	개정내용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8.31 이후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li> <li>- 1999.8.31 이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다음 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li> <li>- 1999.8.31 이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소득세 100% 면제</li> <li>-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li> </ul>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등록세 및 농특세 비과세</li> <li>-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감면세액에 대해서 농특세 비과세</li> </ul>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다음 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li> </ul>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2005.7.13~2006.12.31)</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폐지(2007.1.1.~)</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확인받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기간을 2009.12.31까지로 연장</li> </ul> </li> <li>- 2008.1.1. 이후 취득소득세 감면기간을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로 확대</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다음 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적용기간을 2015.12.31로 연장</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 50%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대상을 2014.12.31일까지 창업하는 기업으로 규정</li> </ul>

자료: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

64) 「조특법」 제8조 제2항

## 2) 인수·합병 단계

1999년도 세법개정에서는 벤처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벤처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벤처기업의 주주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가 주식 맞교환 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이는 현행 기업집단 간 특정 계열사의 주식 교환을 통한 기업양수도시 개인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감면요건은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 교환이어야 하며, 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없고 교환주식가액의 총액이 동일해야 하였다. 교환양도한 주식을 10년 이내 재취득, 교환취득한 주식을 5년 이내 양도 또는 주식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65)</sup> 종전에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 부채상환목적으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용 부동산 또는 중복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를 감면해 주던 것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양도기한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였다. 기업이 합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등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였다.<sup>66)</sup>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지원기한을 연장하였다. 즉,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 등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취득하여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 지원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간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지원시한을 동일하게 연장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sup>67)</sup>

65) 「조특법」 제46조의 2

66) 「조특법」 제36조, 제37조, 제42조

그리고 2000년도 세법개정에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개인주주와 다른 벤처기업 간 주식 교환을 통해 현금을 수반하지 않고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고, 벤처기업이 제3자에게의 신주배정을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나, 주식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정하기로 하였다.<sup>68)</sup>

2003년도 세법개정에서 벤처기업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6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조세감면제도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신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규정을 신설하였다.<sup>69)</sup> 이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 합병분부터 적용되며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법인이 일정 요건<sup>70)</sup>을 충족할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고 승계 요건을 완화하였다.<sup>71)</sup> 그리고 부실한 벤처기업을 정리하고 건전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즉, 제휴할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제휴상대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비상장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벤처기업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하는 과세특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sup>72)</sup>

2009년도 세법개정에서는 벤처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 규정이 감면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어서 2009년 12월 31일로 일몰 조치하였다.<sup>73)</sup> 그리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67) 「조특법」 제56조

68) 「조특법」 제46조의 2

69) 「조특법」 제47조의 3

70) (1)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간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의 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이 3% 이상일 것, (4) 합병법인이 구분경리를 할 것

71) 「조특법」 제47조의 3

72) 「조특법」 제46조의 2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하였다.<sup>74)</sup> 그리고 2012년도 세법개정에서는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종료하였다.<sup>75)</sup>

2013년도 세법개정에서는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 시 과세이연 규정을 신설하였다.<sup>76)</sup>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을 매각 후 양도대금 중 80% 이상을 재투자할 시에 재투자 주식처분 시까지 과세이연하며 2014년 1월 1일 이후 매각대상 기업의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재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였다(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이때 「조특법 시행령」 제43조의 8에 기업매각 요건 등을 명시하였다. 매각대상기업(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동 기업의 최대주주인 자가 대상이 되며,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의 50% 이상 또는 본인이 보유할 주식의 80% 이상을 양도하여야 하며 기업매각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투자해야한다. 그리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였다.<sup>77)</sup>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식회사인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 법인의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주식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였다. 이때 전략적 제휴조건으로는 ①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이 계약 당사자가 될 것 ② 제휴 대상 사업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③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④ 기술, 정보, 시설, 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며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특례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주식 교환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하였다.<sup>78)</sup>

73) 「조특법」 제46조의 2, 제46조의 3

74) 「조특법」 제47조의 3

75) 「조특법」 제47조의 3

76) 「조특법」 제46조의 8

77) 「조특법」 제46조의 7

〈표 III-12〉 벤처기업 인수합병단계 세제지원 변천과정

시행연도	내 용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주식 등 교환(2000.12.31.이전) 시 양도소득세 50% 감면</li> <li>- 중소벤처기업이 1999.12.31 이전에 사업용 부동산 또는 중복지산 양도 시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 50~100% 감면</li> </ul>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주식 맞교환 시(2001.12.31.이전) 양도소득세 50% 감면</li> </ul>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4.1.1~2006.12.31)</li> <li>-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2007.1.1~2009.12.31까지)</li> <li>- 벤처기업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규정(2009.12.31.까지) 신설</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1.1 이후 최초 부여 분부터 벤처기업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법인세법으로 이관</li> <li>- 2009.12.31이후 벤처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과세 과세이연 규정 일몰</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2010.1.1~2012.12.31.까지)</li> <li>- 벤처기업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규정 연장 (2012.12.31일까지)</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li> </ul>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li> <li>- 2014.1.1 이후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매각대금 80% 이상 재투자 시 2015.12.31까지 과세이연</li> </ul> </li> </ul>

자료: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

78) 「조특법 시행령」 제43조의 7 신설

###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벤처투자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크게 투자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투자단계에서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실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1998년도 개정 이후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꾸준히 변천되어 왔으며,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원활화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보유단계에서는 벤처기업 등 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및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등의 세제혜택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도단계에서는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면제함으로써, 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크게 벤처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단계와 인수·합병 단계로 구분된다. 벤처기업의 창업단계 세제지원은 1999년 이후로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과 같은 지원요건 측면에서 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감면이라는 큰 틀에서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벤처기업 인수·합병단계 세제지원은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려는 정책목적하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및 이월결산금 승계에 초점을 두어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였다. 2014년에는 벤처생태계 조성 목적으로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뿐만 아니라

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세제상 혜택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정책적으로 유효한지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벤처기업 조세지원의 정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투자단계별·투자주체별로 다양한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는 김재진·김진수(200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성장잠재력이 없는 벤처기업을 무분별하게 양산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의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sup>79)</sup> 이러한 이유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주요 선진국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기 보다는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벤처투자자에 대한 간접적인 조세지원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79) 김재진·김진수(2002), p. 267

## IV.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 1. 미국<sup>80)</sup>

#### 가. 개관

미국의 벤처캐피탈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미국 내 벤처캐피탈 펀드 수는 총 191개였고, 총모집금액은 169억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2005~2013년까지의 평균인 총 204개의 펀드와 총 223억달러에 비해 하락한 수치이며, 2008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표 IV-1〉 연도별 미국 벤처캐피탈 펀드의 수 및 모집금액

(단위: 백만달러)

연도	벤처캐피탈 펀드의 수	벤처 캐피탈 펀드의 모집 금액
2005	233	30,071.9
2006	236	31,107.6
2007	235	29,401.0
2008	214	25,052.7
2009	159	16,122.0
2010	173	13,243.3
2011	185	18,962.1
2012	211	19,721.2
2013	191	16,916.9
2014(1Q)	58	8,871.4

자료: <http://nvca.org/pressreleases/venture-capital-funds-raised-8-9-billion-first-quarter-2014-strongest-fundraising-quarter-since-2007/>, 2014.06.01. 접속

80) 이하에서는 김진수·김재진(2002), pp. 134~142의 내용을 참조하고 최근 데이터로 업데이트하여 설명함

〈표 IV-2〉와 [그림 IV-1]에서 보듯이, 연도별·투자단계별 벤처캐피탈 투자액도 변화하여 왔는데, 주목할 점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2013년의 경우 초기단계와 후기단계에서의 투자는 증가(2001년, 20.97%, 21.14% → 2013년, 33.73%, 30.07%)한 반면, 확장단계에서의 투자는 급격하게 하락(2001년 55.90% → 2013년, 32.89%)한 점이다.

〈표 IV-2〉 연도별·투자단계별 벤처캐피탈 투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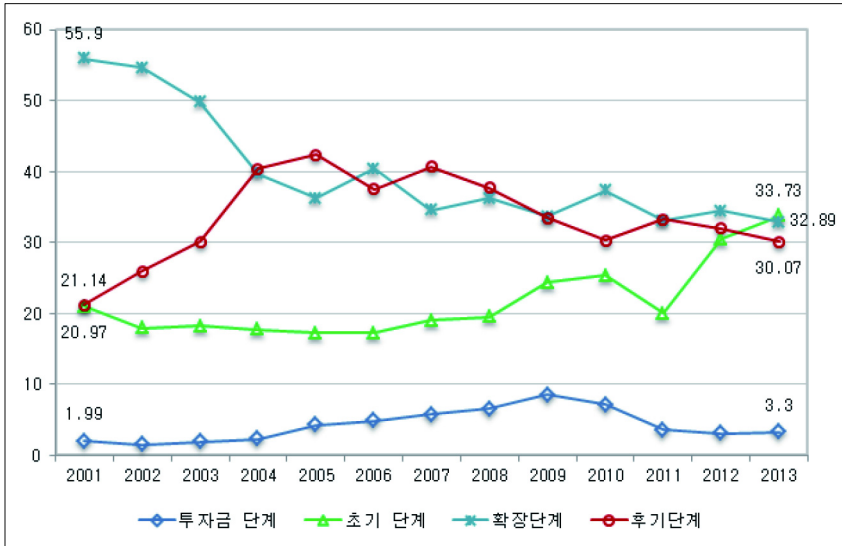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

	투자금 단계 (seed stage)		초기 단계 (early stage)		확장단계 (expansion stage)		후기단계 (later stage)		총 액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액수	비율	
2001	816	1.99	8,591	20.97	22,899	55.90	8,659	21.14	40,966
2002	340	1.53	3,981	17.94	12,116	54.60	5,753	25.92	22,191
2003	364	1.85	3,582	18.25	9,769	49.78	5,909	30.11	19,625
2004	516	2.26	4,040	17.71	9,043	39.64	9,212	40.38	22,813
2005	995	4.22	4,057	17.22	8,524	36.19	9,975	42.35	23,553
2006	1,336	4.84	4,764	17.25	11,151	40.37	10,370	37.54	27,623
2007	1,836	5.74	6,087	19.02	11,065	34.57	13,013	40.66	32,003
2008	1,982	6.55	5,898	19.49	10,960	36.23	11,413	37.72	30,254
2009	1,735	8.53	4,941	24.30	6,850	33.68	6,808	33.48	20,336
2010	1,676	7.16	5,916	25.29	8,722	37.28	7,081	30.26	23,397
2011	1,075	3.61	8,959	20.02	9,833	33.04	9,895	33.24	29,764
2012	841	3.07	8,336	30.44	9,444	34.49	8,763	32.00	27,385
2013	976	3.30	9,977	33.73	9,730	32.89	8,895	30.07	29,580

자료: <http://www.pwcmoneytree.com/HistoricTrends/CustomQueryHistoricTrend> 2014.06.01. 접속

[그림 IV-1] 연도별 · 투자단계별 벤처캐피탈 투자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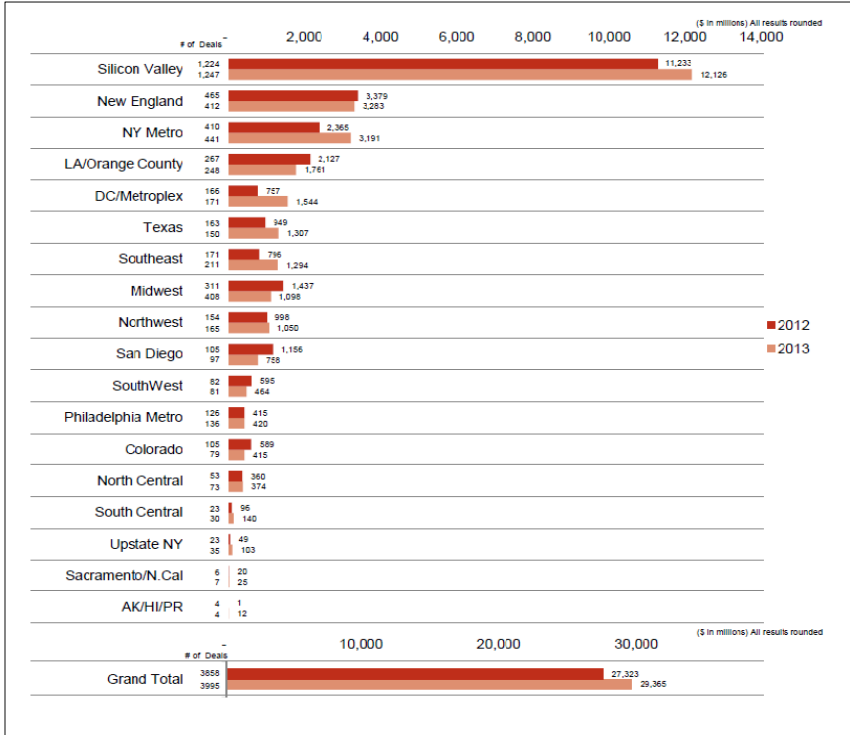


자료: <http://www.pwcmoneytree.com/HistoricTrends/CustomQuery-HistoricTrend> 2014.06.01. 접속

미국 내 지역별로 보면, 실리콘밸리가 벤처캐피탈과 관련해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으로 꼽혔으며, 이는 미국 벤처캐피탈 펀드 전체 모금액의 약 41%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뉴잉글랜드 지역이 두 번째로 투자를 많이 받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미국 벤처캐피탈 전체 모금액의 약 11%를 차지했다. 뉴잉글랜드에 이어 뉴욕 지역이 세 번째로 투자를 많이 받은 지역이며, 실리콘밸리, 뉴잉글랜드, 뉴욕을 합치면 미국 벤처캐피탈 펀드 모금액의 약 63%를 차지했다.

[그림 IV-2] 미국 지역별 벤처캐피탈 투자액

(단위: 백만달러)



자료: [http://www.pwc.com/en\\_US/us/technology/assets/pwc-moneytree-q4-and-full-year-2013-summary-report.pdf](http://www.pwc.com/en_US/us/technology/assets/pwc-moneytree-q4-and-full-year-2013-summary-report.pdf), 2014.06.01. 접속, Reuters(2014), p. 9

##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1) 초과누진 법인소득세율

미국의 내국세법(IRC) 중 법인세법(Corporate Income Tax)은 소득구간에 따라 15%, 25%, 34%, 35~39%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또한, 각 주(state)의 법인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연방의 법인소득을 손금에 산입해 주고 있다.

〈표 IV-3〉 미국의 법인세율(2014)

소득구간	세율	한계세율 적용소득
50,000달러 미만	15%	0
50,000달러 이상 75,000달러 미만	7,500달러 + 25%	50,000달러
75,000달러 이상 100,000달러 미만	13,750달러 + 34%	75,000달러
100,000달러 이상 335,000달러 미만	22,250달러 + 39%	100,000달러
335,000달러 이상 10,000,000달러 미만	113,900달러 + 34%	335,000달러
10,000,000달러 이상 15,000,000달러 미만	3,400,000달러 + 35%	10,000,000달러
15,000,000달러 이상 18,333,333달러 미만	5,150,000달러 + 38%	15,000,000달러
18,333,333달러 이상	35%	0

자료: IRC §11 [Tax Imposed], 2013 Instructions for Form 1120,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IRS, 2013, p. 18, IRS(2014), p. 17 참조

## 2) S 법인제도<sup>81)</sup>

미국의 내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은 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C 법인(C Corporation): 일반법인
- ② S 법인(S Corporation): 소규모 법인
- ③ 파트너십(Partnership) 또는 유한책임회사(LLC)<sup>82)</sup>
- ④ 개인사업주(Sole Proprietorship)

이 중에서 C 법인에 대해 가장 엄격한 이중과세(double taxation)가 적용된다. 즉,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 후, 그 소득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다시 한 번, 그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와는 달리, 나머지 3개 형태의 사업체 - S 법인, 파트너십, 개인사업주 - 에는 이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S 법인제도는 C 법인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과세 목적상 C 법인의 단점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 도입된 제도로서 특히 소규모

81) 장근호(2009), pp. 663~667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82)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조세목적상 파트너십과 동일한 투시단체(Pass-through entity)로 취급됨

회사가 주식회사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S 법인제도의 도입목적은 사실상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소규모 C 법인에 대해 이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C 법인으로서의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S 법인의 소득은 회사단계가 아닌 주주단계에서 과세되고 사업 손실을 주주단계에서 다른 소득과 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 핵심이다. S 법인은 법적으로는 C 법인으로 간주되지만 과세목적상으로는 파트너십 대우를 받으므로, 사업손익 등이 주주단계로 양도되어 과세되고, 이전에 주주단계에서 과세된 이윤은 세금 납부 없이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S 법인 주주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며, 일반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최저한세(AMT: Alternative Minimum Tax)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S 법인의 설립요건에는 크게 주주요건(shareholder requirements)과 회사요건(corporate requirements)이 있다. 주주요건은 모든 주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주주는 100명 이하(가족이 주주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1명의 주주로 취급)이어야 하고, 주주는 개인, 유산 자선단체 등의 일부 비과세기관이나 일부 기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C 법인이나 파트너십은 주주가 될 수 없다.<sup>83)</sup> 또한, 주주에는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없어야 한다. S 법인의 설립 요건 중 회사요건은 첫째, S 법인은 국내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둘째, 내국세법상 자격이 없는 주식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셋째,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해야 한다. 이때, 우선주의 발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S 법인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S법인으로 신고하는 데 동의를 해야 하지만, 주주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S 법인의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3년 연속 소극적 투자 소득(passive investment income)<sup>84)</sup>이 법인 총수입의 25% 초과 시 S 법인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조세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에 해당 법인의 손익에 대하여 주주에게 출자비용으로 배분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바로 S 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

83) IRC §1361(b)

84) 로열티, 임대료, 배당, 이자, 유가증권의 매매익 등을 말함

다.<sup>85)</sup> S 법인은 조세목적상 도관 또는 투시단체(pass-through entity)로 분류되어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S 법인의 소극적 투자 소득이 법인 총수입의 25%를 초과할 시에는 초과된 부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다.<sup>86)</sup>

##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 1) S 법인의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S 법인에 출자한 주주 개인에 대해서는 S 법인의 손익을 출자비율별로 주주에게 배분된 손익과 주주 개인의 통상소득을 합산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있다.<sup>87)</sup> 다시 말해, S 법인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와 S 법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 취득가액을 조정하므로 S 법인 주주의 세후 투자이익은 여타 기업에 투자할 때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sup>88)</sup> 또한, 투자한 S 법인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주에게 배분된 손실과 주주 개인의 다른 소득이 합산되므로<sup>89)</sup>, 결과적으로 주주가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가 경감되어 궁극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더욱이 S 법인의 주주는 파트너십과 개인사업주와 달리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2)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sup>90)</sup>

SBIC란 적격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1958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

85) IRC §1366 [Pass-through of items to shareholders]

86) 장근호(2009), pp. 663~667

87) IRC §1366 [Pass-thru of items to shareholders]

88) 김진수·김재진(2002), pp. 134~142, 김재진·김진수(1998), p. 164

89) 김진수·김재진(2002), pp. 134~142

90) 김진수·김재진(2002), pp. 137~138, 손원익(2004), pp. 40~41

을 그 설립 근거로 한다. SBIC에 투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① 주식매각익 과세경감<sup>91)</sup>: C 법인 이외의 납세자가 SBIC 주식에 투자하여 5년 이상 보유하고 이후에 매각 시 발생한 주식매각익의 50%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② 주식매각손과 통상소득의 합산<sup>92)</sup>: 1958년 세제 개정 시 도입되어 시행된 제도로, SBIC에 투자한 납세자는 동 주식의 매각 시 매각손이 발생한 경우에 통상손실로 인정받아 주식매각손실 전액에 대하여 납세자의 통상소득과 합산할 수 있다.
- ③ SSBIC(Specialized SBIC) 투자에 대한 특례제도<sup>93)</sup>: 납세자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각하여 처분이익을 실현하고 SSBIC의 주식이나 파트너십 지분을 60일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금액을 초과하는

---

91) IRC §1202 [50-percent exclusion for gain from certain small business stock] (a) Exclusion

(1) In general. In the case of a taxpayer other than a corporation, gross income shall not include 50 percent of any gain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held for more than 5 years.

92) IRC §1242 [Losses on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tock] If—

- (1) a loss is on stock in a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operating under the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and
- (2) such loss would (but for this section) be a loss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a capital asset, then such loss shall be treated as an ordinary loss. For purposes of section 172 (relating to the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any amount of loss treated by reason of this section as an ordinary loss shall be treated as attributable to a trade or business of the taxpayer.

93) IRC §1044 [Rollover of publicly traded securities gain into specialized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a) Nonrecognition of gain

In the case of the sale of any publicly traded securities with respect to which the taxpayer elects the application of this section, gain from such sale shall be recogniz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 amount realized on such sale exceeds—

- (1) the cost of any common stock or partnership interest in a specialized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purchased by the taxpayer during the 6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such sale, reduced by
- (2) any portion of such cost previously taken into account under this section.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any gain which is treated as ordinary income for purposes of this subtitle.

매각대금에 한하여 과세한다.<sup>94)</sup> 이러한 금액의 한도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연간 5,000달러와 전년도까지 과세가 이연된 주식매각이익을 합산한 금액과 50만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한다. 투자자가 C 법인의 경우에 이 한도액은 25만 달러와 전년도까지 과세가 이연된 주식매각이익을 합산한 금액과 100만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한다.<sup>95)</sup>

### 3) 비상장기업 주식매각손실 과세특례<sup>96)</sup>

1958년에는 특정 중소기업 주식의 매각손실에 대하여는 연간 3,000달러를 넘는 금액까지도 통상소득과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sup>97)</sup> 원칙적으로 주식매각손실은 개인별로 연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통상소득과 합산할 수 있으며, 공제하고 남은 부분은 다른 매각익과 합산할 수 있다.

주식매각손실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동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주식 발행 직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이 100만달러 이하의 내국기업일 것, ② 주식매각손실 발생 직전 5년 동안 임대료, 로열티, 배당금, 이자수익 및 유가증권 매매로

94) 김진수·김재진(2002), pp. 137~138

95) IRC §1044 [Rollover of publicly traded securities gain into specialized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b) Limitations

(1) Limitation on individuals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the amount of gain which may be excluded under subsection (a) for any taxable year shall not exceed the lesser of—

(A) \$50,000, or

(B) \$500,000, reduced by the amount of gain excluded under subsection (a) for all preceding taxable years.

(2) Limitation on C corporations

In the case of a C corporation, the amount of gain which may be excluded under subsection (a) for any taxable year shall not exceed the lesser of—

(A) \$250,000, or

(B) \$1,000,000, reduced by the amount of gain excluded under subsection (a) for all preceding taxable years.

96) 김진수·김재진(2002), pp. 138~140 참조

97) 남장근(1998), p. 119

인한 이익의 합계가 총수입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단, 설립 이후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설립이후로 부터 주식 매각 시까지 기간으로 계산한다. 한편, 개인이 주식매각손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적격중소기업의 설립 또는 증자 시 주식을 취득한 이후 그 회사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손실은 5만 달러(부부 공동신고일 경우에는 10만 달러)를 한도로 하여 통상소득과 합산할 수 있다.

#### 4) 주식매각 이익 과세특례<sup>98)</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 법인 이외의 납세자가 SBIC 주식에 투자하여 5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매각하여 발생한 주식매각이익의 50%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혜택은 적격 중소기업(qualifying small business)<sup>99)</sup>이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sup>100)</sup>

- ① 재무부장관이 정한 의무제출 보고서를 과세당국과 주주에게 제출하고 있는 내국기업으로서, 총자산이 5천만달러 미만일 것
- ② 총자산의 80% 이상을 적격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자회사 주식 제외) 및 부동산(적격사업 사용분 제외)의 합계가 총자산의 10% 이하인 기업일 것
- ③ 주식 발행을 전후로 하여 1년 동안 자기주식에 대한 환매 비율이 전체 발행한 주식의 5% 이하인 기업일 것
- ④ 주식 발행 전 2년 내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인수한 개인투자자나 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환매하지 않은 기업일 것

이러한 적격 중소기업의 1993년 이후 발행한 주식만이 주식매각손실 과

98) 김진수·김재진(2002), pp. 139~140 참조

99) 적격 중소기업이란 총자산이 5천만 달러 이하이고 총자산의 80%를 다음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① 법률·엔지니어링·설계·금융서비스예술·컨설팅·스포츠 등 종업원의 명성이나 기술이 자산인 사업 ② 은행·보험·리스·투자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 ③ 농업 ④ 호텔·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사업

100) IRC §1202 [50-percent exclusion for gain from certain small business stock] (c)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d) Qualified small business

세특례대상이 된다. 투자자가 주식발행 시 직접 또는 인수업자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만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며, 유통시장에서 2차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앞서 언급한 적격 기업의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이후 매각하여 발생한 주식매각이익의 50%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단, 비과세한도 금액은 당해 연도에 매각한 주식취득가액의 10배 또는 1천만 달러에서 전년도까지 과세되지 아니한 적격 주식에 대한 매각이익의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5) 엔젤에 대한 조세지원<sup>101)</sup>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격 중소기업 발행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매각하여 발생한 주식매각이익의 50%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비과세 한도 금액은 당해 연도에 매각한 주식취득가액의 10배와 1천만달러에서 전년도까지 과세되지 아니한 적격주식에 대한 매각이익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주식매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적격 중소기업의 설립 또는 증자 시에 개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주식의 매각으로 입은 손실은 통상소득과 합산된다. 합산한도는 5만달러로 제한하되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에는 10만달러까지 허용한다.

#### 라.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에 대한 조세지원<sup>102)</sup>

동 제도는 1958년 세제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SBIC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받은 주식에서 손실이 발행한 경우 이를 통상손실로 인정하고 있다. S 법인에 출자한 주주 개인에 대해서는 S 법인의 손익을 출자 비율별로 주주에게 배분된 손익과 주주 개인의 통상소득을 합산한다.

101) 김진수·김재진(2002), pp. 122-123, 김진수(2011), pp. 13-14 참조

102) IRC §1243 [Loss of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마. 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미국의 벤처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연방세법이나 주법에서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조합 설립의 활성화를 유도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트너십은 C 법인에 비해 설립요건이 간단하므로 가족기업 또는 전문업종의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 기업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표 IV-4〉 기업 유형의 연도별 변천 추이

(단위: 천개, %)

연도	총사업체 수	S 법인		C 법인		주식회사(S+C)		파트너십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총 합	7,776.1	3,341.6	43.0	2,059.6	26.5	5,401.2	69.5	2,375.4	30.6
신규기업	678.0	266.8	39.4	122.4	18.1	389.2	57.4	288.8	42.6
2000~2002	1,936.2	850.3	43.9	356.8	18.4	1,207.1	62.3	729.1	37.7
1997~1999	1,380.0	639.4	46.3	248.7	18.0	888.2	64.3	491.8	35.6
1994~1996	932.7	447.9	48.0	215.1	23.1	663.0	71.1	269.6	28.9
1984~1993	1,589.8	776.5	48.8	481.9	30.3	1,258.4	79.2	331.3	20.8
1974~1983	776.5	233.1	30.0	379.6	48.9	612.7	78.9	153.8	21.1
1964~1973	248.7	74.4	29.9	132.5	53.3	207.0	83.2	41.7	16.8
1954~1963	108.7	33.3	30.6	56.2	51.7	89.5	82.3	19.2	17.7
1953 이전	70.7	19.9	28.1	41.9	59.2	61.8	87.3	9.0	12.7
불명	55.4	0	0	24.5	44.1	24.5	44.1	31.0	55.9

주: 1.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는 제외  
 2. 총사업체 수 = 주식회사 + 파트너십, 주식회사 = S법인 + C법인  
 자료: Integrated Business Data, IRS, 2003  
 장근호(2009), p. 445에서 재인용

연방세법에서 조합은 기본적으로 도관이론(conduit/pass-through)에 따라 취급하므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이중과세되는 주식회사와 달리 투자 조합은 도관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이중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즉, 투자조합은 조합원에게 수입, 소득 및 손실, 공제 등이 흘러 들어가는 도관으로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03)</sup> 예를 들어, 조합이 과세되지

103) IRC §701 [Partners, not partnership, subject to tax], 장근호(2009), pp. 628-663 참조

아니하는 이자나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실현한 경우 이러한 소득 항목은 조합원이 조합의 출자지분에 준하여 배분받는 것이므로 조합원(partners)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sup>104)</sup> 조합원은 조합소득이 실제로 분배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조합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조합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은 개인 조합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다른 과세소득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의 손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sup>105)</sup> 다만, 조합원에 대한 이러한 공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제한이 있다.<sup>106)</sup> ① 조합의 손실 배분 시 동 공제는 손실이 발생한 회계 연도 말에 조정된 각 조합원 지분의 기초가액까지만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초과분이 조합에 다시 환급되는 회계 연도 말에 공제받을 수 있다.<sup>107)</sup> ② 제한된 예외조항으로서 공제는 조합원의 자본출자지분과 조합에 유보된 순소득분 및 조합의 상환부채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sup>108)</sup> ③ 수동적 손실제한 규정으로서 수동적 활동으로부터 입은 손실은 동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sup>109)</sup>

## 바. 연구개발(R&D)에 대한 일반적 조세지원

미국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R&D를 행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위한 전용 조세지원 제도는 아니다. 일반연구개발비의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tax credit with regular method)<sup>110)</sup>은 20%로 공제 상한선은 모든 적용 가능한 R&D 지출(일

104) IRC §704 [Partner's distribute share]

105) 장근호(2009), pp. 628~663 참조

106) IRC §704 [Partner's distribute share]

107) IRC §704(d) [Limitation on allowance of losses], 장근호(2009), pp. 628~663 참조

108) 김진수·김재진(1998), pp. 57~69 참조.

109) 조합의 영업손실(loss)은 그 조합원들에게 지분만큼 배분되어, 각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시 공제할 수 있음. 단, 손실의 종류에 따라 공제액에 대한 제한이 존재함.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의 경우, 손실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수동 소득(passive income)을 한도로 함. 이때, 미공제된 손실은 기간제한 없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음(김영수(2014), p. 483)

반연구비 증가분)의 50%까지이다. 단순 공제의 경우, 그 공제율은 14%이며,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지출의 50%를 넘는 적격 연구개발비가 공제대상이다.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연구개발 비용 공제의 경우, IRC §41에 규정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sup>111)</sup>. ① §174<sup>112)</sup>에 규정되어 있는 실험적 연구개발 활동이어야 한다. ② 기술적 특성(물리학, 생물학, 엔지니어링, 컴퓨터 과학 등)과 관련된 연구이어야 한다. ③ 실험 과정(process of experimentation)이어야 한다. ④ 기능개선, 성과, 신뢰성, 품질과 관련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어야 한다. 공제는 납세의무액(tax payable)에서 이루어지며 사용하지 않은 혜택의 경우, 모든 기업이 직전 1년으로 소급(carry-back)하거나 20년간 차기 연도로 이월(carry-forward) 가능하지만 환급받을 수는 없다.

## 2. 영국

### 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1) 법인세 인하

최근 4년간 영국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법인소득 150만파운드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21%의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30만파운드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20%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소득금액이 30만~150만파운드인 경우에는 법인세액의 400분의 1을 감면해 주는 슬라이딩 세율(sliding rate)이 적용되는바, 이는 법인소득의 증가

---

110) IRC §41

111) IRC §41

112) IRC §174, CFR §1.174-2 [Definition of research and experimental expenditure]: 납세자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또는 실험과 관련된 연구개발 비용을 의미. 일반적으로 제품의 개발 및 개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예: 특허 신청, 완성에 지출되는 변호사 비용 등 특허 획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됨). 제품은 공식, 기법, 견본품, 제조과정, 발명품,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 및 납세자가 거래 또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판매, 임대, 라이선스 목적으로 보유하는 제품을 의미함

에 따라 한계세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세율 또는 법인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IV-5〉 영국의 법인세율(2011~2014년)

	2011	2012	2013	2014
표준세율	26%	24%	23%	21%
법인소득이 30만파운드 미만	20%	20%	20%	20%
법인소득이 30만~150만파운드(standard fraction)	법인세액의 200분의 3 감면	법인세액의 100분의 1 감면	법인세액의 400분의 3 감면	법인세액의 400분의 1 감면
법인소득이 150만파운드 초과	표준세율 적용	표준세율 적용	표준세율 적용	표준세율 적용

자료: HMRC(2014), <https://www.gov.uk/corporation-tax-rates/rates>, 2014.06.14. 접속

## 나. 벤처캐피탈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벤처캐피탈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에는 VCT(Venture Capital Trust),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가 있다.

### 1) VCT(Venture Capital Trust) 투자자에 대한 세제우대<sup>113)</sup>

VCT는 개인투자자로 하여금 고위험·비상장 중소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되었다. VCT는 투자신탁(investment trusts)과 유사하며, 대형 투자 회사의 펀드매니저에 의해 관리된다. 투자자들은 VCT의 주식을 취득하고, VCT는 지속적으로 거래 적격 회사에 형성된 펀드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

VCT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113) HMRC, *Venture Capital Trusts: Introduction to National Statistics*,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 / <http://www.hmrc.gov.uk/statistics/vct.htm#1>

- ① VCT는 반드시 주식거래소에 등록(상장)되어 있어야 한다.
- ② VCT는 자신이 투자한 것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대해 면세된다.
- ③ VCT의 투자대상이 되는 기업은 주식발행 당시 정규직 직원이 250명 이하로 적격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VCT의 투자 전 총자산이 1,500만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으며, 투자 직후 총자산이 1,600만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VCT로부터 12개월 동안 최대 5백만파운드를 조달 받을 수 있다. 상한선인 5백만파운드에는 EIS 또는 SEIS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고위험 자본투자에 관한 European Commission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모든 투자가 포함된다.

VCT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우대조치로서, 18세 이상인 영국 내 거주자(개인투자자)는 VCT에 자금을 투자하면 최대 20만파운드의 연간 투자액의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sup>114)</sup>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투자 후 5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VCT의 보통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나아가 개인투자자가 VCT의 보통주를 처분할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배당금과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는 해당 주식을 2차적으로 취득한 투자자(예: 주식시장이나 상속에 의해 취득)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상의 세제우대 조치는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의 세제우대는 오로지 개인투자자에게만 해당되며, 수탁자(trustees), 회사 또는 기타 VCT에 투자하는 단

114) VCT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변천

회계연도	투자액 한도	소득공제율
2003-2004	10만파운드	40%
2004-2005	20만파운드	40%
2006-2007	20만파운드	30%
2012-2013	20만파운드	30%

자료: HMRC, *Venture Capital Trusts: Introduction to National Statistics*,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  
<http://www.hmrc.gov.uk/statistics/vct.htm#1>

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 IV-6〉 영국 VCT를 통해 조성된 펀드의 크기와 VCT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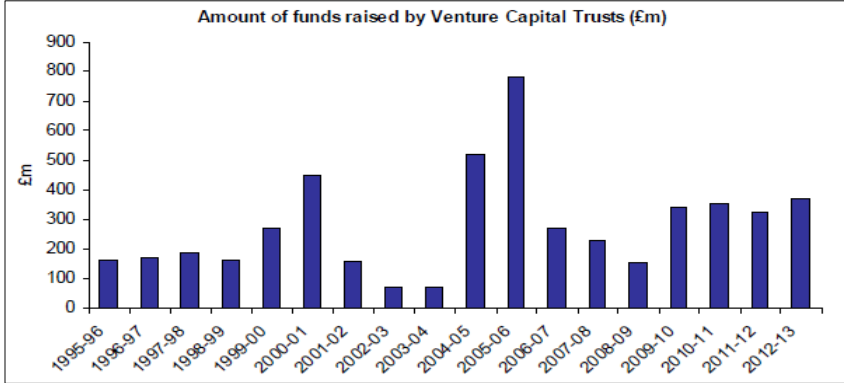
(단위: 백만파운드, %)

회계연도	모금된 펀드(총액)	당해연도 펀드를 조성한 VCT의 수	펀드를 관리하는 VCT의 수	소득세액 공제율
1995-96	160	12	12	20
1996-97	170	13	18	20
1997-98	190	16	26	20
1998-99	165	11	34	20
1999-00	270	20	43	20
2000-01	450	38	61	20
2001-02	155	45	70	20
2002-03	70	32	71	20
2003-04	70	31	71	20
2004-05	520	58	98	40
2005-06	780	82	108	40
2006-07	270	32	121	30
2007-08	230	54	131	30
2008-09	150	46	129	30
2009-10	340	68	122	30
2010-11	350	78	128	30
2011-12	325	76	124	30
2012-13	370	65	118	30
총계	5,035			

자료: PwC, Allenbridge, Trustnet, Investgate and London Stock Exchange VCTs Information and News Announcement, HMRC, *Venture Capital Trusts Statistics*, Table 8.6, Official Statistics Release에서 재인용, p.6

VCT를 통해 조성된 펀드의 규모는 매년 변동폭이 크게 변해 왔다(그림 IV-2 참조). 2000~2001년에 4억 5천만파운드로 첫 번째 정점에 도달했고, 2005~2006년에 역대 최고점인 7억 8천만파운드에 달하였다. 이는 소득세액공제율이 2004년부터 2년간 20%에서 40%로 상승하였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후 VCT 정책에 따라 그 변동폭이 변화되어 오다가 2009년 이후로 VCT를 통해 조성된 펀드의 크기는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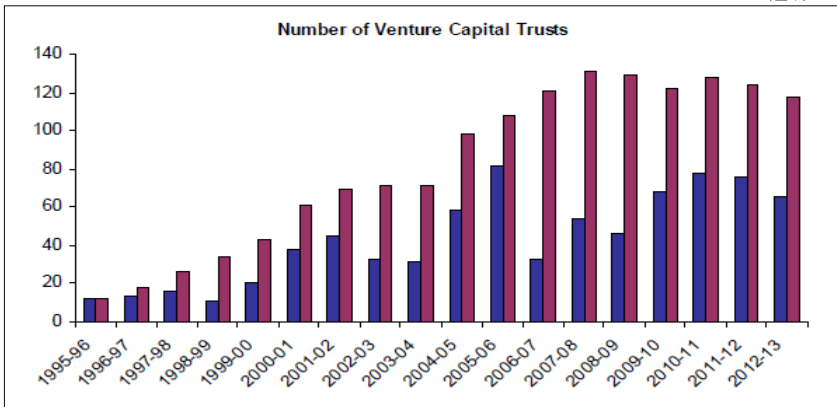
[그림 IV-3] 회계연도별 영국 VCT를 통해 조성된 펀드의 규모  
(단위: 백만파운드)



자료: HMRC, Venture Capital Trusts Statistics, Table 8.6, Official Statistics Release, p. 7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40507223953/http://www.hmrc.gov.uk/statistics/vct/commentary.pdf>, 2014.06.14. 접속

영국의 펀드를 조성하는 VCT의 수는 2005~2006년에 최대였고, 2009년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펀드를 관리하는 VCT의 수는 2008~2009년에 최대였고, 비록 2012~2013년에 약간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IV-4] 회계연도별 영국 VCT의 수  
(단위: 개)



주: 왼쪽 막대는 펀드를 조성하는 VCT의 숫자, 오른쪽 막대는 펀드를 관리하는 VCT의 숫자를 의미함  
 자료: HMRC, Venture Capital Trusts Statistics, Table 8.6, Official Statistics Release, p. 8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40507223953/http://www.hmrc.gov.uk/statistics/vct/commentary.pdf>, 2014.06.14. 접속

## 2)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주주에 대한 세제우대<sup>115)</sup>

EIS는 고위험·중소기업의 투자자들에 대해 다양한 세제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위험·중소기업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에 도입되었다. EIS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비상장 적격 기업이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우대이다.<sup>116)</sup> 즉, EIS 제도는 적격 기업(qualifying corporation)이 발행한 적격 주식(qualified share)을 적격 개인투자자(qualified investor)가 투자한 경우 적용되는 제도라고 하겠다.

EIS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사는 반드시 비상장(unlisted or unquoted) 기업이어야 한다.
- ② 그 회사는 반드시 다른 법인에 의해 지배받는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그 회사의 자회사 또한 다른 법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
- ③ 그 회사의 총자산(gross assets)은 반드시 그 회사의 주식발행 이전을 기준으로 7백만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주식발행 이후를 기준으로 8백만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④ 그 회사의 주식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직원 수는 50명보다 적어야 한다.
- ⑤ 투자자에 의해 조성된 모든 펀드는 반드시 주식발행 후 2년 내에 적격 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발행회사 또는 90% 적격 자회사를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적격 사업 활동이란 적격 거래 또는 주식 발행 후 2년 내를 기점으로 거래의 수행을 준비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적격 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 ⑥ 거래는 반드시 그 거래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영국 내에서 행해져

---

115) HMRC,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Introduction to National Statistics*,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56400/eis-intro.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56400/eis-intro.pdf)

116) 남장근(1998), pp. 150~156 참조

야 하고, 이익 실현의 관점에서 상업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⑦ 회사는 특정 제외되는 사업 활동<sup>117)</sup>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그 회사 거래의 상당한(substantial) 부분이 아니어야 한다.
- ⑧ 만약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이후 3년 이내에 앞서 언급한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투자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추징된다.

EIS 주주에 대한 세제우대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소득세법상의 우대조치로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개인투자자(주주)는 1년에 최대 100만파운드까지 투자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투자 후 3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sup>118)</sup>
- ②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주식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다.
- ③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손실은 다른 소득세 혜택을 차감한 후, 양도차익이 아닌 일반 소득에 대해 상쇄할 수 있다.

117) 대부분의 거래는 제외되는 사업 활동(excluded activity)에 해당됨. 2010~2011년 기준으로, 제외되는 거래는 토지, 상품, 금융상품, 대부, 도매, 소매, 은행, 보험, 매입금융, 임대자산의 임대차, 로열티의 수취 또는 라이선스 수수료, 법 또는 회계자문서비스, 자산개발, 농장업, 산림·목재생산업, 호텔 또는 편의시설업 등이 있음

118) EIS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변천

회계연도	투자액 한도	소득공제율
1997-1998	10만파운드	20%
1998-1999	15만파운드	20%
2004-2005	20만파운드	20%
2006-2007	40만파운드	20%
2008-2009	50만파운드	20%
2011-2012	50만파운드	30%
2012-2013	100만파운드	30%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86140/141126\\_NS\\_EIS\\_SEIS\\_Intro\\_Note\\_FIN.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86140/141126_NS_EIS_SEIS_Intro_Note_FIN.pdf), 2014.06.14, 접속

- ④ 양도소득세의 납부는 그 양도차익이 EIS 적격 기업의 주식으로 투자될 경우, 유예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익은 어떠한 자산(any asset)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차익이 발생하기 1년 전 (양도소득세 납부 이연에 대한 의도 없이 먼저 EIS 적격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후, 그날 이후 발생한 보유자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 이연 혜택을 얻고자 하는 경우) 또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후까지 EIS 적격 기업에 투자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익은 그 액수와 상관이 없으며, 또한 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도 상관이 없다.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개인투자자는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의 납부에 대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식의 소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납부가 유예된 양도차익은 그 주식이 처분될 때 또는 처분되었을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비로소 다시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표 IV-7〉 영국 EIS를 이용해 펀드를 조성한 기업

(단위: 개, 백만파운드)

연도	처음으로 펀드를 조성한 기업의 수	펀드를 조성한 전체 기업의 수	EIS 주식 취득 수	EIS 주식 취득 금액
1993-94	77	77	482	4
1994-95	399	427	4,969	41
1995-96	439	550	5,142	53
1996-97	474	651	11,819	94
1997-98	532	725	11,409	113
1998-99	1,036	1,267	15,328	294
1999-00	1,641	2,105	29,338	614
2000-01	2,379	3,314	45,780	1,065
2001-02	1,683	2,855	25,482	761
2002-03	1,339	2,455	27,636	667
2003-04	1,148	2,173	28,123	627
2004-05	1,209	2,188	32,358	606
2005-06	1,153	2,137	31,526	648
2006-07	1,149	2,168	39,681	733
2007-08	1,131	2,206	37,135	707
2008-09	941	1,918	23,544	518
2009-10	986	1,965	25,830	622
2010-11	1,061	2,015	32,527	545
2011-12	1,498	2,596	87,868	1,017
총계	20,275	**	515,977	9,729

자료: HMRC, Venture Capital Trusts Statistics, Table 8.6, Official Statistics Release에서 인용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90000/140213\\_Table\\_8.1.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90000/140213_Table_8.1.pdf), 2014.06.14. 접속

### 3)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sup>119)</sup> 투자자에 대한 세제우대

SEIS는 초기단계(seed stage)에 있는 소기업(small business)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우대세제를 제공하는 새로운 세제우대 조치를 말한다. 2012년 Finance Bill의 일부분으로 소개되었고,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의

119) <http://www.magma.co.uk/seed-enterprise-investment-scheme-introduction> 참조, 2014.6.20. 접속

조항들을 해석할 때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와의 차이점은 EIS가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SEIS는 소규모 회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SEIS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SEIS는 유한책임회사(LLC) 또는 파트너십이나 개인 소유기업이 아닌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② SEIS는 2012년 4월 6일 당일 또는 그 이후 적격 기업에 의해 발행되는 새로운 주식에 적용된다.
- ③ SEIS는 2017년 4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 ④ SEIS하에서 한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만파운드이다.
- ⑤ 개인투자자가 SEIS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세제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특정 회계연도 1년간 최대 10만파운드까지이다.
- ⑥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이 모집된 금액의 70%를 소비할 때까지 또는 거래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세제우대의 혜택을 주장할 수 있다.
- ⑦ 해당 기업은 모집된 금액을 반드시 3년 이내에, 적격 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⑧ EIS와 함께 SEIS를 적용하고 싶은 기업은 영국 국세청(HMRC)에 대해 미리 SEIS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SEIS의 투자자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투자액의 50% 소득공제(50%의 공제율은 납부세액의 한계세율과 상관 없다.)
- ② 소득공제 혜택의 전기로의 소급(carry back)은 2013~2014 회계연도부터 시작한다.

- ③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면제: 2012~2013년에 자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차익은 그 금액을 SEIS에 재투자하는 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2013~2014년에는 50%가 면제된다.
- ④ 손실(loss relief): SEIS에 대한 투자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소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 ⑤ 2년 후부터 SEIS는 상속세 목적상 반드시 Business Property Relief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EIS상의 적격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직원 수는 25명 미만이어야 하고, 총자산은 반드시 20만파운드 미만이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지 반드시 2년 미만의 기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EIS 또는 VCT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어야 하고, 배제되는 거래(excluded trade)가 아닌 실제 사업상의 거래(genuine trade)를 행해야 한다. SEIS 적격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자는 반드시 해당 기업의 사용자(employer)가 아니어야 한다. 단, 이사(director)는 이 요건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투표권(voting power)이 있거나 청산 시 자산 분배권을 가진 주식을 30% 이상 소유해서는 안 되고, 세제우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2013년 12월 현재, 영국에서는 SEIS를 통해 총 8천 2백만파운드의 펀드를 총 1,100개의 기업을 위해 모집·조달하였다. 이 중, 19개 기업이 매주 130만파운드를 모집하였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SEIS는 EIS에 비해 그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엄격하며 준수를 위한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SEIS 규정 준수상의 어려운 점 중 하나는 투자 후 3년간 관련 당국의 감시를 받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SEIS 적격 기업의 요건 중,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미만의 기업 요건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업 시작일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며, 이는 EIS가 이러한 사업시작일 요건이 없는 것과 대조된다. 나아가, 초창기 기업의 경우, 15만파운드 이상의 자금(SEIS 상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다.

## 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지원<sup>120)</sup>

영국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미국과 달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two-track 방식을 운영 중에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 추가소득공제(super deduction for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의 공제율은 225%인데 반해,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이 130%로 차등 적용된다. 이러한 법인 추가소득공제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서 감해지고, 공제 상한선은 없다. 그러나 공제자격을 얻기 위해서 기업은 당해 연도에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최소 1만파운드 이상 지출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혜택은 무기한 이월(carry-forward)이 가능하고 또한 환급(refund)도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조정 전 연구개발비세액공제(above the line R&D tax credit)와 당기에 100% 상각이 가능한 자본자산에 대한 지출의 감가상각(depreciation deduction) 제도도 있다.

## 3. 이스라엘<sup>121)</sup>

이스라엘은 GDP 대비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가로, R&D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산업·통상·노동성의 OCS(The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는 R&D 조세 지원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 비용 공제, 특정지역 내에 위치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이스라엘의 주요 조세지원제도이고, OCS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출상품을 창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초기 창업 준비금(pre-seed) 또는 창업단계(start-up)의 회사를 산업 R&D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프로젝트를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또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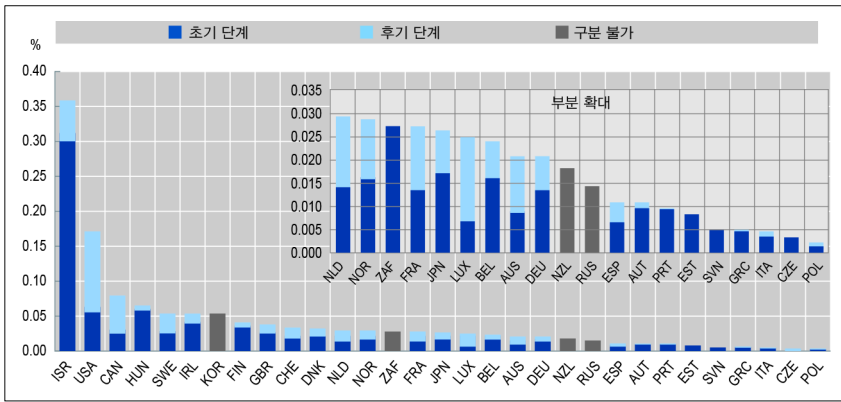
120) <https://www.gov.uk/corporation-tax-research-and-development-rd-relief#how-much-rd-relief-smes-can-claim>, 2014.06.14. 접속

121) PwC(2010), pp. 35-36 참조

벤처캐피탈 회사로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사전담변제도(advance tax ruling), 조세조약(tax treaties),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general capital gains exemption for non-residents)와 같은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IV-5] 각국별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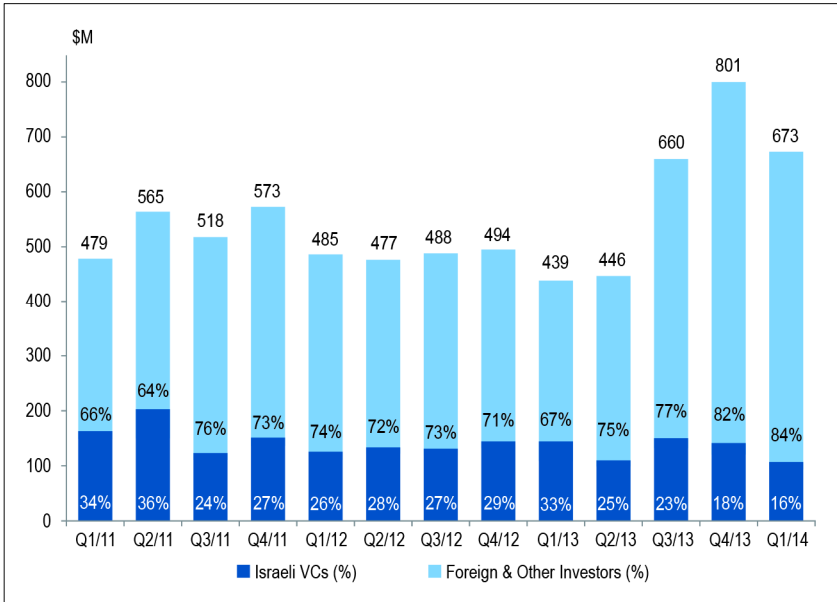
자료: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3*, 2013, p.91

### 가. 벤처캐피탈 관련 통계

이스라엘 첨단기술 캐피탈의 특징은 [그림 IV-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벤처캐피탈의 약세와 외국인 투자의 강세라는 상호 대비되는 투자 구조 추이를 지니고 있다. 첨단기술 캐피탈 투자 중 이스라엘 벤처캐피탈의 비중은 2014년 1사분기에는 16%까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외국인 투자 비중은 84%로 증가하였다. 이스라엘 지역 벤처캐피탈의 약세는 벤처캐피탈이 초기단계(early stage)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벤처의 후기 단계(later stage) 또한 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결국 벤처캐피탈의 약세가 첨단기술 캐피탈에도 구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V-6] 이스라엘 첨단기술 캐피탈(high-tech capital) 모금액

(단위: 백만달러)



자료: IVC-KPMG Report, Israeli high-tech companies raised \$673 million in Q1/2014  
[https://vcexperts.com/buzz\\_articles/1504](https://vcexperts.com/buzz_articles/1504), 2014.06.16. 접속

#### 나. 자본투자촉진법상의 조세혜택<sup>122)</sup>

자본투자촉진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은 이스라엘의 국내외 자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담은 법률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법에 의해 승인된 기업(AEs: Approved Enterprises)에 한해 다양한 형태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시설 또는 시설의 확장에 대한 자본투자는 AE로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는데, 승인받은 기업(AEs)은 현금 보조금의 수취 또는 미배분 이익에 대한 2~10년간(기업의 위치에 따라 다름) 법인세 기간면제(tax holiday)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미배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을 선택할 시, 만약 실제 해당 이익을 배분하거나 간주 배분할 경우, 법인세와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는 tax

122) Levenfeld, Platt, Romem(2009), p. 59 참조

holiday가 선택되지 않았더라면 적용되었을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배당금 소득에 대해서는 15%로 과세된다.

“Israel Track”에 의하면, 특정 우선 개발 지역에 있는 승인받은 기업(AEs)을 가진 회사는 거주자인 외국 주주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 총합의 15%만 과세하고, “Strategic Investment Track”에 의하면, 상당한 투자와 수익 수준을 가진 특정 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위해 10년간 법인세와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를 면제해 준다. 단, Strategic Investment Track은 2011년 개정을 통해 법인세에 대한 면제 혜택이 축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형다국적기업(연간 총매출이 200억NIS(52억미국달러)이고 R&D에 최소 1억NIS(2,600만미국달러)을 투자하며, 새로이 최소 2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해당할 경우, 5%(Priority Area A), 8%(그 외 지역)의 감면된 법인세율이 각각 적용된다는 것이다.

2011년에 자본투자촉진법(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은 상당한 개정을 통해 혜택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법에 의한 수혜대상 기업은 계속해서 기존의 법률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한 기업이 개정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기업(PE: Preferred Enterprise)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해당 기업은 반드시 이스라엘에 등록된 산업 기업이어야 한다.
- ②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즉 회사 총매출의 최소 25%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했어야 한다.
- ③ 해당 기업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산업 R&D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생명기술 또는 나노기술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기업은 우선기업(PE)의 신분으로 위의 혜택이 수여되는 기간 제한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법인세<sup>123)</sup> 감면 혜택으로서, 우선지역 A에 위치한 기업<sup>124)</sup>은 6%의 감면

123) 이스라엘의 일반적 법인세율은 26.5%(2014년 기준)임

124) 우선 지역 A(Priority Area A)는 The Galilee, Jordan Valley, The Negev, Jerusalem(for hi-tech enterprises)를 말함

된 법인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우선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12.5%의 감면된 법인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1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우선기업으로서 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리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대해 가속 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을 할 수 있다. 감가상각 시 첫 5년간 설비자산에 대해서는 200%의 비율로 상각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400%의 비율로 상각하게 된다.

〈표 IV-8〉 이스라엘의 자본투자촉진법상의 세제혜택

		Israel Track	Strategic Investment Track
구법	수혜요건	특정 우선개발지역에 있는 승인받은 기업	특정지역에 위치한 기업
	혜택	거주자인 외국 주주에 대한 배분의 경우, 법인세와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 총합의 15%만 과세	10년간 법인세와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 면제
2011 개정	수혜요건	우선기업(preferred enterprise)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이스라엘에 등록된 기업일 것 ② 국제경쟁력을 갖추었을 것(총매출의 25% 이상이 수출에 의한 것일 것) ③ 이스라엘 산업 R&D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생명 또는 나노기술 분야의 기업일 것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역 A에 위치한 기업: 6%의 법인세율 적용</li> <li>• 그 외 지역에 위치한 기업: 12.5%의 법인세율 적용</li> </ul>	대형다국적기업(연매출 200억NIS, R&D에 최소 1억NIS 투자하며, 최소 250명을 고용하는 기업)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역 A에 위치한 기업: 5%</li> <li>• 그 외 지역: 8%</li> </ul>

자료: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

### 다. 벤처캐피탈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우대<sup>125)</sup>

벤처캐피탈 펀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외국인 투자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주로 비거주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이스라엘 기술회사에 대한 투자의 실현(realization)으로 인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최근 확장된 소득세법(ITO: the Income Tax Ordinance)상의 조항에서, 이스라엘 사기업의 비거주자 주주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그들의 주식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① 해당 주식을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매입하였고,
- ② 그 주식을 비거주자에 의해 운영·유지되는 이스라엘 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소유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에서의 투자에 대한 감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실은 제외된다.
- ③ 부동산을 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 아니며,
- ④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related party)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비거주자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벤처캐피탈 펀드에 투자하는 비거주자 외국인 투자자는 이스라엘 회사의 펀드투자로부터 실현된 양도소득에 대해 면세된다는 사전 답변(advance tax ruling)을 과세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과세당국의 사전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펀드의 규모, 투자의 성격, 그리고 펀드관리의 장소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한적 요건들은 이스라엘로의 투자에 초점을 맞춘 펀드의 합리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은 일회성 또는 이스라엘 회사들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하는 비이

---

125) Ministry of Economy State of Israel, "Taxation Benefits for Foreign Investors in Israeli Investment Funds," <http://www.investinisrael.gov.il/NR/exeres/3405B5DE-829B-4F0B-A70D-A48F88080067.htm>, 2014. 6. 16 접속

스라엘 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형적으로, 벤처캐피탈 펀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 지위(tax exemption status)가 부여된다.

- ① 펀드의 총액이 최소 1,000만미국달러(이 중 최소 절반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함)이어야 한다.
- ② 펀드의 최소 50% 이상이 이스라엘에 위치한 기업 또는 산업, 정보기술, 의료기술, 바이오기술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에 관여하는 기업의 이스라엘에서의 플랜트 설립 또는 확장을 위해 모집되었어야 한다.
- ③ 펀드에 의해 조성된 펀드 총액의 최소 30%가 이스라엘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또한 이러한 회사가 이스라엘 내에서 주로 사업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펀드 내 모든 투자자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모든 외국 파트너십은 이스라엘에서 과세가 면제된다. 즉 그 펀드 내의 유한책임 외국인 파트너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라. 특정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우대<sup>126)</sup> (R&D Tax Incentives)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용(R&D Expense)은 그것이 자본비용(capital expense)을 의미하는 한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스라엘 소득세법(ITO) 20A조는 특별공제를 인정한다. R&D 비용에 대한 공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R&D 프로젝트를 구분한다.

- ① 제조, 농업, 교통, 에너지 분야의 기업 소유자에 의해, 그 기업을 위해 수행되거나 지원받는 R&D: R&D 비용은 그러한 비용이 R&D 비용으로서 OCS에 의해 승인받은 후에 그 비용이 발생된 당기에 공제 가능하다. 만약, OCS에 의해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은 차기 3년

---

126) PWC(2010), p. 36

간 매년 동일하게 나눠서 공제된다.

- ② R&D 비용이 위에서 언급한 산업 분야 이외에서 발생하거나, 그 납세자가 다른 개발자의 R&D에 합리적 대가를 주고 참여한 경우: R&D 비용은 차기 2년간 동일하게 나눠서 공제되고, 다른 개발자의 R&D 비용에 참여한 경우에 공제 가능한 비용은 그 비용이 발생했던 해를 기준으로 그 투자자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공제 가능한 R&D 경상비용은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한 사용인(employee)의 임금과 그 사용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간접비용을 포함하지만,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 4. 일본<sup>127)</sup>

일본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의 벤처기업 창업률은 4.6%로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일본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로 신규 사업에 도전하는 벤처기업 수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2012년도에는 개업 수보다 폐업 수가 앞서는 등 선진국 가운데 창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2014년 4월부터 소비세율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잠재적·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조치를 포함한 경제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3년 10월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기존의 5%에서 3%p 인상한 8%로 결정하였고, 민간 영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에게 저율의 법인세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영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Tax Reform Outline to Stimulate Private Sector Investment)’을 소비세율 인상과 동시에 발표하였다. 이는 소비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전략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설비투자 촉진을 위

---

127) Emst & Young(2013), pp. 2~6 참조

한 세제우대,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 엔젤 세제,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 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IV-7] 일본의 벤처기업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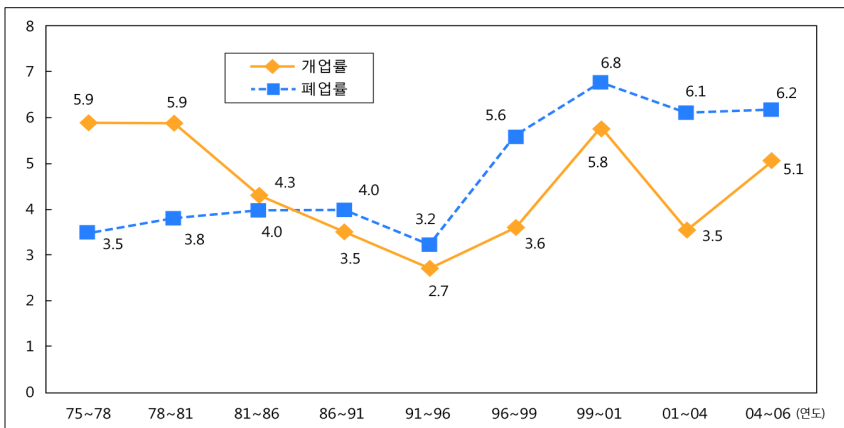
(단위: 억엔, 개)



자료: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일본, 벤처기업 등 개업 촉진지원책 마련」, 2014. 5. 13.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5454](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5454), 2014.06.16. 접속

[그림 IV-8] 일본의 기업 수에 따른 개·폐업률의 추이(1차 산업 제외)

(단위: %)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2008년판 중소기업백서』, 원종혁(2010), p. 11에서 재인용

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우대(Tax Incentives to Promote Capital Expenditure on Productivity-enhancing Equipment)<sup>128)</sup>

일본은 2013년 세법 개정에서 국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즉각적인 상각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 조치를 포함시켰다. 생산성 향상 설비(productivity-enhancing equipment)에 대한 정의는 산업경쟁력제고법(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높은 생산성의 최첨단 설비(cutting-edge equipment with high productivity)에 대한 투자 및 생산라인 또는 운영을 개선(to improve production lines or operations)하기 위한 투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세제우대 조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물류와 판매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세제우대를 받기 위해서 해당 회사는 산업경쟁력제고법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20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일본 내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설비를 취득한 뒤 이를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이용해야 한다.

- ① 모든 기계류, 도구, 가전제품, 건물, 건물에 부속하는 시설, 구조물 또는 소프트웨어가 생산을 위한 설비로 쓰일 것
- ②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설비일 것
- ③ 해당 설비의 한 단위 비용(a unit cost)이 책정된 수준을 넘어설 것 (above a set threshold)<sup>129)</sup>

위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취득가액의 최대 100%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 상각을 인정받거나,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건물과 구조물의 경우, 3%)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의 경우, 당해 연도 법인세의 20%가 상한선이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설비를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50%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 상각(건물과 구조물의 경우, 25%) 또는 취득가액의 4%를 세액공제(건물과 구조물의 경우, 2%) 받

128) Ernst & Young(2013), p. 2

129) 예를 들어, 특정 기계류 하나의 유닛에 대한 취득가액이 반드시 160만엔 이상이어야 함

을 수 있다.

〈표 IV-9〉 일본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설비취득일이 산업경쟁력제고법 시행일과 2016년 3월 31일 사이인 경우	설비취득일이 2017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
기계류 기타	즉각적인 특별상각 또는 5%의 세액공제	50%의 특별상각 또는 4%의 세액공제
건물과 구조물	즉각적인 특별상각 또는 3%의 세액공제	25%의 특별상각 또는 2%의 세액공제

자료: Ernst & Young(2013), p. 2

#### 나.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 (Tax Incentives to Promote Venture Capital)<sup>130)</sup>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 확장기에 있을 때의 관리와 투자를 위해, 2013년 10월 기업투자촉진 세제개정안에서 산업경쟁력제고법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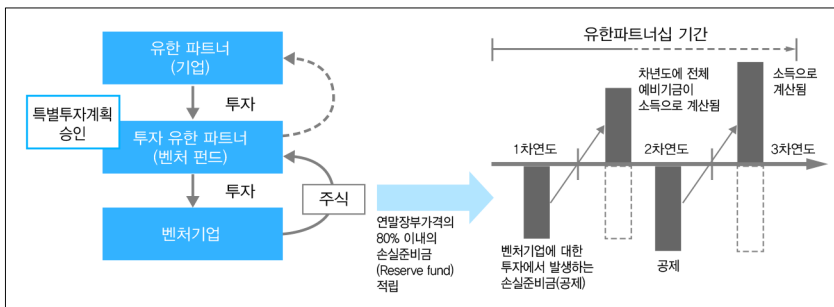
산업경쟁력제고법의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우대는 2014년 1월 20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특별한 투자 계획을 만들고 승인된 「투자 유한파트너십(an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예: 벤처펀드)」을 통해 형성된 투자에 적용된다. 그 과정에서 위의 파트너십은 청색신고(blue form tax return) 대상인 기업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는데, 만일 그 기업이 적격 기관투자자일 경우, 해당 파트너십의 유한파트너들은 반드시 2억엔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청색신고는 주로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특별신고(special tax return designed for people who are self-employed or freelancing)를 일컬으며, 복식부기 기장을 하는 기업의 경우, 청색신고를 통

130) Ernst & Young(2013), p. 3

해 그 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해 65만엔 만큼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청색신고를 통해 당해 연도의 손실을 차기 연도의 과세소득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sup>131)</sup>

위의 단계가 모두 끝나게 되면, 청색신고 대상 기업은 합의에 따라 파트너십에 투자하게 되고, 투자 이후부터 파트너십의 종료 기간 이전의 벤처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은 상기 투자계획에 따라 취득되어 파트너십의 자산이 된다. 투자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회계연도 말에 소유하고 있던 벤처 지분의 장부가액의 최대 80%까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보전금(reserve for losses resulting from an investment in a venture company)으로 대체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차기 회계연도에 과세소득을 통해 환수(recaptured)되지만, 그러한 소득은 차기 회계연도 말의 다른 손실보전금 신청에 의해 상쇄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회계연도가 2014년 4월 1일에 종료되거나 그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된다.<sup>132)</sup>

[그림 IV-9] 일본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메커니즘



자료: Ernst & Young(2013), p. 3

131) 세법연구센터(2013), pp. 146~151, 세법연구센터(2014), pp. 104~107

132) 상계서

다. 중소기업의 자본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Tax Incentives to Promote Capital Expenditure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sup>133)</sup>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sup>134)</sup>의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현재의 세제우대 조치(기계의 취득 시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는 일몰되지 않고 연장되며(2017년 3월 31일까지) 그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경쟁력제고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14년 1월 20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생산성 제고 설비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중소기업은 즉각적인 특별상각(설비 취득가액의 최대 30%) 또는 취득가액의 7%만큼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상한선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기 1년간 이월(carry-forward)이 가능하다.

〈표 IV-10〉 일본의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기업 자본	현 조세지원제도	수정된 조세지원제도 <sup>1)</sup>
3,000만엔~1억엔	30% 특별 상각(세액공제는 없음)	즉각적인 상각 또는 7% 세액공제
3,000만엔	30% 특별 상각 또는 7% 세액공제	즉각적인 상각 또는 10% 세액공제

주: 1) 이러한 중소기업의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조치상의 자산은 반드시 생산성 제고설비에 대한 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 조치의 범위 내에 있는 자산이어야 함

자료: Ernst & Young(2013), p. 5

라.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일반적 세액공제<sup>135)</sup>

일본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미국과 같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R&D를 행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위한 전용 조세지원제도는 아니다.

133) EY(2013), p. 5 번역

134) 중소기업이란 청색신고(blue tax return)를 하는 기업 및 농업협동조합의 자본 또는 투자된 자본이 1억엔 이하인 경우를 말함

135) Ernst & Young(2013), p. 6 번역

시험연구비에 대한 법인세액공제제도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R&D 조세 지원제도인데, 적격 시험연구비(Qualified Research Expense)란 아래의 시험연구비와 기타비용을 말한다.<sup>136)</sup>

〈표 IV-11〉 R&D 시험연구비와 기타비용

	시험연구비	기타비용
정의	새로운 제품의 제조 또는 개선, 고안 또는 발명을 위해 특별히 지출하게 되는 비용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경영조직 구성, 기술 개량, 시장 개척 또는 신사업 개시 목적으로 특별히 지출된 비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연구자의 인건비</li> <li>② 시험연구를 위한 원재료비</li> <li>③ 시험연구와 관련된 조사비 등 경비</li> <li>④ 외부에 시험연구를 위탁한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술 채택과 관련한 비용(기술 도입비, 특허권 사용 매뉴얼 사용료 등)</li> <li>② 경영조직 채택과 관련한 비용 (판매 제휴나 대리점 채용과 관련한 기획 담당자의 인건비, 회의비, 조사비 등)</li> <li>③ 기술 개량과 관련한 비용(제품화를 위한 연구자 인건비나 원재료비, 매뉴얼 작성을 위한 비용 등)</li> <li>④ 시장개척과 관련한 비용(신제품 PR을 위한 광고선전비, 시장조사비, 전시회 개최비, PR 상품 제작비나 광고 팸플릿 작성비 등)</li> </ul>

자료: 원중학(2010), p. 7 참조

대기업의 시험연구비에 대한 법인세액공제율은 8~10%이다. 8%가 기업 표준 혜택률이며, 시험연구비 총액을 기업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이 10%를 넘는 경우에는 혜택률이 10%가 된다.

중소기업의 시험연구비에 대한 법인세액공제율은 12%이고, 시험연구비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공제율은 10%인데, 이는 2014년 4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사업(회계)연도까지만 해당된다.

대체 법인소득공제율은 20%로 일본에 설립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일본 내에서 R&D 활동 및 시설의 설립, 그리고 연구원 모집을 할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을 감면해 준다. 다만, 해당기업은 반드시 법인세액공제와 법인소득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모든 공제 혜택의 상한선은 납세자의

136) 원중학(2010), p. 7 참조

조세채무의 최대 20%(30%, 2014년 4월 1일 이후 2015년 3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위한 특별 혜택률)까지만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혜택을 1년간 차기 연도로 이월은 가능하나 환급받을 수는 없다.

#### 다. 엔젤세제<sup>137)</sup>

엔젤세제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엔젤)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의미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개인이 투자를 한 경우 투자시점과 매각시점에 세제상 우대조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자시점에는 투자액을 그 해의 다른 주식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매각시점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도록 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차기 연도 3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엔젤세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정의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위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와 동일하다.

〈표 IV-12〉 엔젤세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분류 기준(2010)

업종	자본금	종업원 수
제조업, 건설업 등 기타 업종	3억엔 이하	300명 이하
도매업	1억엔 이하	100명 이하
서비스업	5,000만엔 이하	100인 이하
소매업	5,000만엔 이하	50인 이하
고무제품제조업 <sup>1)</sup>	3억엔 이하	900인 이하
소프트웨어, 정보처리서비스업	3억엔 이하	300인 이하
여관업	5,000만엔 이하	200인 이하

주: 1)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자 또는 공업용 벨트 제조업은 제외  
 자료: 원중학(2010), p. 7

137) 원중학(2010), pp. 3~17 참조

엔젤세제 대상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특정주주집단으로부터의 투자액 합계가 6분의 5(약 83%)를 초과하지 않는 회사이어야 한다.
- ② 대규모 법인(자본금 1억 엔 초과 등) 및 해당 대규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예: 자회사 등, 이하 '대규모 법인 그룹')의 소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미등록·미상장 주식회사로서 풍속영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여기서 특정주주집단이란, 기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및 그 친족이나 관련 회사를 포함함)를 말한다. 기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만으로 기발행 주식 총수의 6분의 5(약 83%)를 초과하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규모 법인그룹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하나의 대규모 법인 그룹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는 기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복수의 대규모 법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건의 심사시점은 투자액을 입금한 후, 엔젤세제 확인의 경우에는 입금기 일시점, 사전확인의 경우에는 확인신청일 시점이다.

엔젤세제 대상 기업의 요건과 관련하여, 투자한 연도의 감세조치(우대조치 A 또는 우대조치 B)는 각 우대조치 별로 요건이 다르지만, 매각한 연도의 감세조치는 우대조치 A, 우대조치 B의 요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만족하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엔젤세제 중 투자를 한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소득세 우대 조치에는 A와 B가 있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조치 A는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대상기업 투자액 - 2,000엔'을 그 해의 총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공제대상이 되는 투자액의 상한은  $\text{Min}(\text{총소득금액} \times 40, 1,000\text{만엔})$ 이다. 나아가 다음의 수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 IV-13〉 엔젤세제 중 우대 조치 A의 수혜 요건

설립 경과 연수(사업연도)	요건
1년 미만이며 최초 사업연도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 또는 신사업활동 종사자가 2인 이상이며, 상근 임원·종업원의 10% 이상일 것
1년 미만이며 최초 사업연도를 경과한 경우	연구자 또는 신사업활동 종사자가 2인 이상이며, 상근 임원·종업원의 10% 이상으로, 전기까지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일 것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시험연구비 등(선전비, 마케팅 비용을 포함)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고 전기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또는 연구자 또는 신사업활동 종사자가 2인 이상이며, 상근 임원·종업원의 10% 이상으로, 전기까지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일 것
2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시험연구비 등이 수입금액의 3%를 초과하고 전기까지의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 또는 매출액 성장률이 25%를 초과하며 전기까지의 영업 현금 흐름이 적자일 것

자료: 원종혁(2010), p. 5

〈표 IV-14〉 우대 조치 A의 적용 사례

(단위: 엔)

투자자 A 정보	소득금액	10,000,000
	기업에 투자한 금액	5,000,000
	매각 금액	500,000
	기타 주식 양도익	1,000,000
투자시점	우대조치 A 선택 시	투자액을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총소득금액 × 40% - 2,000) = 10,000,000 × 40% - 2,000 = 3,998,000
	우대조치 B 선택 시	투자액을 기타 주식 양도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기타주식 양도익 - 총투자액) = 1,000,000 - 5,000,000 = (4,000,000)
	결론	우대조치 A를 선택하는 경우에 그 공제액이 더 큼
매각시점	취득원가 계산	취득가액(투자금액) - 우대조치 A 공제분 = 취득원가 5,000,000 - 3,998,000 = 1,002,000
	손실/이익 계산	매각금액 - 취득원가 = 500,000 - 1,002,000 = (502,000) 손실발생
	손실의 취급방법	해당 손실액을 당해연도 또는 차기 3년간 주식 양도익으로부터 이월 공제 가능

자료: 원종혁(2010), pp. 8~9의 내용을 표로 정리

우대 조치 B는 설립 10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대상기업에 투자한 투자액 전액을 그 해의 다른 주식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데, 공제대상이 되는 투자액의 상한은 없으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 IV-15〉 엔젤세제 중 우대 조치 B의 수혜 요건

설립 경과 연수(사업연도)	요건
1년 미만	연구자 또는 신사업활동 종사자가 2인 이상이며, 상근 임원·종업원의 10% 이상
1년 이상 ~ 2년 미만	시험연구비 등(선전비, 마케팅 비용을 포함)이 수입금액의 3%를 초과, 또는 연구자 또는 신사업활동 종사자가 2인 이상이며 상근 임원·종업원의 10% 이상
2년 이상 ~ 5년 미만	시험연구비 등(선전비, 마케팅 비용을 포함)이 수입금액의 3%를 초과, 또는 매출액 성장률이 25%를 초과
5년 이상 ~ 10년 미만	시험연구비 등(선전비, 마케팅 비용을 포함)이 수입금액의 5%를 초과

자료: 원종혁(2010), p. 6

〈표 IV-16〉 우대 조치 B의 적용 사례

(단위: 엔)

투자자 B 정보	소득금액	5,000,000
	기업에 투자한 금액	9,000,000
	매각 금액	2,000,000
	기타 주식 양도익	13,000,000
투자시점	우대 조치 A 선택 시	투자액을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총소득금액 × 40% - 2,000) = 5,000,000 × 40% - 2,000 = 1,998,000
	우대 조치 B 선택 시	투자액을 기타 주식 양도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기타주식 양도익 - 총투자액) = 13,000,000 - 9,000,000 = 4,000,000
	결론	우대조치 B를 선택하는 경우에 그 공제액이 더 큼
매각시점	취득원가 계산	취득가액(투자금액) - 우대조치 B 공제분 = 취득원가 9,000,000 - 4,000,000 = 5,000,000
	손실/이익 계산	매각금액 - 취득원가 = 2,000,000 - 5,000,000 = (3,000,000) 손실발생
	손실의 취급방법	해당 손실액을 당해 연도 또는 차기 3년간 주식 양도익으로부터 이월 공제 가능

자료: 원종혁(2010), p. 9의 내용을 표로 정리

위에서 엔젤세제상의 연구자란, 특정 연구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내에서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자로 시험연구 등에 포함되는 지출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신사업활동종사자란 신규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개발에 종사하는 자나 신규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인지되기 위해 필요한 광고나 시장조사,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엔젤세제상의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업활동에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총 세 가지 활동이 있으며, 현금흐름 계산서는 이러한 세 가지 활동에 있어 현금의 출입을 기재하는 것이다.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은 제조, 판매, 관리활동에 따른 현금입출을 의미한다.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소득세 우대 조치도 엔젤세제에 포함된다. 이때 대상 기업의 주식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당해 연도의 다른 주식 양도차익과 상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해에 모두 상쇄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서는 차기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주식 양도차익과 상쇄할 수 있다. 대상기업이 상장을 하지 않은 채, 파산 또는 해산 등을 하여 주식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기 3년에 걸쳐 손실을 이연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기업이 상장을 하지 않은 채, 파산 또는 해산 등을 하여 주식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기 3년에 걸쳐 손실을 이연할 수 있다. 대상기업에 투자한 당해 연도에 '소득세 우대 조치(우대 조치 A 또는 B)'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대상 금액을 취득원가로부터 차감한 매각손실을 계산한다. 2000년 4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는 투자한 날 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주식을 보유하고 그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대상기업의 주식을 상장 후 매각 시 상장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차익의 50%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한다.<sup>138)</sup>

일본경제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는 신기술 및 신비즈니스 모델로 신규 사업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나 2012년에는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았고, 선진국과 비교 시에도 창업 활동이 저조한 실정이었다.<sup>139)</sup>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의

138) 김진수(2011), p. 16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2014년 6월에 취합한 성장전략에 신규개업 촉진을 위한 세제우대 대책 등을 마련하여 2015년도 세제개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sup>140)</sup> 2015년도 세제개정에 포함될 주요 지원정책<sup>141)</sup>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가정신과 안정적인 기반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한다. 또한 엔젤세제를 확충하여 이용기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현재 엔젤세제 우대대상기업에 대한 기준은 설립한 지 3년 미만이지만, 2015년부터는 5년 미만까지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이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이 안정궤도에 오르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현재의 소득공제 한도인 1,000만엔을 상향 조정해서 투자자들의 투자이익 확대를 유도할 계획인데, 대상기업을 경영상태가 나쁜 기업에는 제한을 두는 ‘영업현금흐름 적자’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흑자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

139)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5454](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5454), 2014.06.16. 접속

140)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5454](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5454), 2014.06.16. 접속

141)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5454](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5454), 2014.06.16. 접속

## 5. 대만

가. 촉진산업등급조례(促進產業昇級條例, Statute for Upgrading Industries)<sup>142)</sup>

대만의 촉진산업등급조례는 대만의 대표적인 벤처 관련 조세지원제도로서,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1991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00년 1월 1일 개정에 따라 10년간 세금 인센티브 제도가 연장되었고, 2009년 12월 31일에 일몰되었다. 촉진산업등급조례는 비록 일몰 되기는 하였으나 1991년 시행 이래, 특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의 기간 동안에 대만 GDP에 4,972억대만달러를 기여하였고, 14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05억대만달러의 추가세수 확보에 기여하였다.<sup>143)</sup>

### 1) 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제우대 조치

가) R&D에 대한 일반적 우대 조치(Incentives for R&D)<sup>144)</sup>

대만의 촉진산업등급조례상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미국과 같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R&D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므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위한 전용 조세지원제도는 아니다. 이 제도는 투자 연도로부터 5년 동안, 당해 연도 법인세에서 R&D 투자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전 2년간의 R&D 투자 평균액보다 초과되는 투자금액의 50%를 당해 연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 공제액은 당해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었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역시 총법인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142) KOTRA(2006), pp. 57~64

143) <http://www.taiwantoday.tw/ct.asp?xItem=45013&CtNode=427> 참조

144) KOTRA(2006), p. 57

나) R&D 인력에 대한 우대 조치(Incentives for R&D personnel training)<sup>145)</sup>

대만 기업은 촉진산업승급조례를 통해 투자 연도로부터 5년 동안, 당해 연도 법인세에서 인력개발 투자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전 2년간의 인력개발 투자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0%를 당해 연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총공제액은 당해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역시 총법인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신기술 및 새로운 장비에 대한 우대 조치(Incentives for new equipment or technology)<sup>146)</sup>

다음과 같은 신기술 및 신장비가 촉진산업승급조례상의 우대 조치 대상이 된다.

- ① 자동화 관련 기기, 장비부문 투자
- ② 공해억제와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 장비부문 투자
- ③ 새로 개발된 또는 무공해 에너지, 에너지 보존, 산업 폐수 재활용 관련 기술, 장비 부문 투자
- ④ 이산화탄소 방출 억제, 에너지 효율 강화관련 기술, 장비부문 투자
- ⑤ 기업의 디지털 정보화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에 대한 투자(정보통신기기, 인터넷 및 TV 기능, 전기 음향영상기기,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위를 충족하는 기술 및 기기에 투자하는 기업은 당해 연도 영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5~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공제받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잔여금액은 이후 5년간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145) KOTRA(2006), p. 58

146) KOTRA(2006), pp. 58-59

2) **신흥,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우대 조치**(Incentives for emerging, important, strategic industries)<sup>147)</sup>

대만은 신흥, 주요, 전략 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에 5년간 다음과 같은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주주에 대한 투자소득공제의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해준 바 있다.

① **주주들을 위한 투자소득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for shareholders)<sup>148)</sup>:

신흥, 전략, 주요 산업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 주주는 당해 연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투자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주식취득으로부터 4년이 되는 연도 이후부터 4년간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기업 주주는 당해 연도 법인세에서 주식가격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개인투자자는 매년 공제받을 금액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에서 주식가격의 1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마지막 연도에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위의 세액공제율은 2000년 1월 1일 이후로 2년마다 1%씩 낮아진다.

② **투자회사에 대한 5년간 비과세**(five-year tax holiday for companies)<sup>149)</sup>:

신흥, 전략, 주요 산업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은 주주들이 주식가격을 납입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주주들에 대한 세제상 우대 대신 법인세의 면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위의 사항을 충족한 신규 법인은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개시일로부터 연속하여 5년 동안 소득세 면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증자를 통하여 확장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확장설비 사용개시일 또는 확장설비를 통한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동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는

147) KOTRA(2006), pp. 59-60

148) KOTRA(2006), pp. 57-67을 발췌하여 정리함

149) KOTRA(2006), 신영임 · 이영환(2010), p. 72 재인용

기업은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는 세제우대에 대한 개시일을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연기기간은 4년을 넘지 못하고, 연기가 시작되는 날은 다음 회계연도의 제1일이다. 그리고 배당하지 않은 이익을 통해 증자를 하려는 기업도 위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3) **영업 및 생산을 위한 기술 취득(Acquisition of related technologies on operation and production)에 대한 우대조치**

대만은 촉진산업승급조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해외로부터의 고도기술 도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sup>150)</sup>

- ① 로열티 지불에 대한 세금 면제(tax exemption on the payment of royalty)
- ② 기술이전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의 5년간 유예(deferment on the payment of income taxes on stock acquired in exchange): 국내외 투자자가 대만기업에 신흥, 주요, 전략 산업에 부합하는 기술을 이전해 주고 해당 기업의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취득주식에 따른 소득세를 주식배당 후 5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 ③ 기술이전의 대가로 취득한 스톡옵션(stock options on stock acquired in exchange for technology transfer): 특허 사용권 또는 기술 사용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받은 쪽이 이를 행사할 때의 과세소득 계산은 다음과 같다.

$$\text{과세소득} = \text{옵션 행사일의 주가} - \text{특허기술의 비용} - \text{옵션 등록가격}$$

150) KOTRA(2006), pp. 57~67

## 나. 산업창신조례(產業創新條例, Statute for Industrial Innovation)<sup>151)</sup>

대만은 19년간 지속되어 오던 촉진산업승급조례(促進產業昇級條例, Statute for Upgrading Industries)를 2009년 말에 일몰시킨 후, 이를 대체할 산업창신조례(產業創新條例, Statute for Industrial<sup>152)</sup> Innovation)를 제정하였다. 이는 대만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법률이다(제72조). 나아가 대만 정부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하였다. 이 수치는 중국(25%), 한국(22%)의 법인세율보다 더 인소한 것이고, 싱가포르(17%), 홍콩(16.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대만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모든 산업 부문의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대만으로의 외국인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행한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국내투자자보다 외국인투자자,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군보다 첨단기술 산업군을 더 선호하던 트렌드를 탈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대만 정부는 이러한 인화된 법인세율이 특히 세제우대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상당히 감소시켜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 1) 촉진산업승급조례(SUT)의 일몰과 산업창신조례(SII) 제정 이유

경제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의한 조세지원제도의 교체를 위해 대만 정부는 촉진산업승급조례를 일몰시키고 대신 산업창신조례를 제정하였다. 당시 대만에는 새로운 산업화된 경제와 세계화의 영향에 따라, 과거 제조업, OEM 제조 등을 통한 개발 전략으로의 회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촉진산업승급조례는 첨단기술기업과 같은 특정 산업 군에 대한 조세지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같은 다른 산업군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

151) Library of Congress, *Taiwan: Law on Industrial Innovation Adopted in Place of Expired Statute for Upgrading Industries*, Apr 22, 2010.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1205401939\\_text](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1205401939_text). 2014. 6. 16. 접속

152) 여기서 'industries'는 농업,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임. Article 1 of the Statute for Industrial Innovation 참조

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촉진산업등급조례를 일몰시키고 산업창신조례의 제정을 통해 광범위한 산업군에 모두 조세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의 변화로도 모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정치적인 배경으로는 2008년 국민당 정권이 집권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부양책을 내놓게 되었고 이때 당시 경제 진단을 통해, 단기간 동안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조세지원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창신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촉진산업등급조례(SUI)와 산업창신조례(SII)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산업창신조례가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2) 산업창신조례상의 조세지원제도

산업창신조례를 살펴보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0년 동안, 대만에 위치한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의 15%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제10조). 단, 총공제액은 당해 기업이 그 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표 IV-17〉 대만의 벤처 관련 조례의 일몰·제정 후의 조세지원제도 비교

	촉진산업등급조례 (Statute for Upgrading Industries)	산업창신조례 (Statute for Industrial Innovation)
시행시기	1991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19년)	2010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10년)
대상	첨단기술기업(high-tech company), 대기업(large corporation)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적 산업군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산업군 또한 기업의 크기에 상관없음(중소기업 포함)
조세지원 제도	R&D에 대한 인센티브(투자액 공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R&D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인건비 공제)	
	신기술 및 신장비에 대한 인센티브(투자액 공제)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주주들에 대한 투자세금 공제)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투자회사에 대한 5년간 세금 면제)	
	로열티 지불에 대한 세금 면제	
기술이전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 5년간 유예 등		

자료: 본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

〈표 IV-17〉에서 보듯이, 대만의 경우 2010년 새로운 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R&D 관련 또는 투자 촉진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10년을 기점으로 대만 정부가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배양·강화를 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 6.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각국의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정리하여 비교하였다(〈표 IV-18〉 참조). 각국의 조세지원제도를 분류해 보면 크게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와 투자자(주주)에 대한 지원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제도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R&D에 대한 세액공제가 조사 대상 5개국(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대만) 모두에서 시행 중이고, 인화된 법인세율을 통한 지원제도는 3개국(영국, 이스라엘, 대만)에서 시행 중이다. 이 외에, 투자 세액공제(대만),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일본)도 있다.

벤처투자자(주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는 각 나라별로 서로 다른 제도들을 운영 중에 있다. 미국은 비상장기업 주식매각손실 과세특례와 주식매각 이익 과세특례, 그리고 엔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VCT 투자자, EIS 주주, 그리고 SEIS 투자자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경우 벤처캐피탈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그 투자 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일본은 벤처캐피탈 투자 촉진 세제우대와 엔젤세제를, 대만은 일몰한 촉진산업승급에서 신흥·주요·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우대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산업창신조례를 제정하여 광범위한 산업군에 모두 세제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로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해

의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단계별로 다양하게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기업규모, R&D 활성화, 설비 및 자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적 목적의 일환으로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이는 OECD (2013a 또는 b p. 213에서 보고 선택)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 32개의 OECD 회원국들 중 초기단계의 창업·혁신기업(Young Innovative Company, YIC)에 세제상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9개국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결과와 일치한다.<sup>153)</sup>

---

153) OECD(2013b), p. 16, 김재진(2013), pp. 52~53 요약하여 정리

〈표 IV-18〉 각국의 벤처기업/캐피탈 관련 조세지원제도 정리

구분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대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p>① 초과누진 법인세율: 소득 범위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세부 부담 경감</p> <p>② 법인제도: S법인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S법인 주주의 주식매각손실과 통상 소득의 합산, SBC 주식투자자에 대한 세금 우대(주식매각의 과세경감, 주식매각손과 통상소득의 합산, SSBC 투자에 대한 특례)</p> <p>③ 파트너십: 이중과세 배제</p>	<p>① 법인세 인하: 슬라이딩 세율 적용(법인소득이 30만~150만파운드인 경우)</p>	<p>① 자본투자촉진법상의 조세혜택: 우선지역 A에 위치한 기업의 법인세율은 6%, A를 제외한 나머지 우선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12.5%로 법인세 과세, 소득창출 자산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p>	<p>① 설비투자 촉진 세제: 취득가액의 최대 100%의 특별상각 또는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2016년 3월 말까지 취득시)</p> <p>② 중소기업 자본 지출 촉진을 위한 세제우대: 설비 취득가액의 최대 30% 특별상각 또는 취득가액 7% 세액공제</p>	<p>① 촉진산업승급조례(2009년 일몰) -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특정 신기술 및 새로운 장비에 대한 투자 회사의 당해 연도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5~20%를 공제</p> <p>- 신상,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우대조치: 투자회사에 대한 5년간 법인세 면제(선택적) - 영업 및 생산을 위한 기술의 획득: 로열티 지불에 대한 세금 면제, 기술이전 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의 5년간 유예</p> <p>② 산업장신조례(2010) - 법인세를 인하 및 대만에 위치한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의 1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부여</p>
	<p>④ R&amp;D 일반적 조세지원: 일반연구개발비의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20%), 단순공제(14%)</p>	<p>② R&amp;D 조세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추가소득공제(22.5%), 연구개발 비용의 조정 전 공제, 자본자산에 대한 지출분의 첫 해 완전상각</p>	<p>② R&amp;D 비용 공제: 산업, 농업, 교통, 에너지 분야 기업의 R&amp;D 비용은 비영발생 당기에 공제 가능(OCS 승인 시)</p>	<p>③ R&amp;D 비용에 대한 일반적 세액공제: 시험연구비에 대한 법인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12% 세액공제 가능</p>	<p>③ 촉진산업승급조례(2009년 일몰) -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5년간 R&amp;D 투자액의 30% 공제, 인력개발 투자액의 30% 공제</p>

〈표 IV-18〉 계속

구분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대만
투자자(주주)에 대한 지원제도	<p>⑤ 비상장기업 주식매각 손실 과세특례: 통산소득과 합산 3,000달러까지</p> <p>⑥ 주식매각 이익 과세특례: 5년 이상 보유주식의 매각이익의 50% 비교세</p> <p>⑦ 엔젤세제: 5년 이상 보유 주식매각이익의 50% 비교세</p>	<p>③ VCT 투자자에 대한 세제 우대: 최대 20만파운드의 연간 투자액의 30%까지 세액공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비교세, 보통주 처분 시 양도소득세 비교세</p> <p>④ EIS 주주에 대한 세제우대: 연간 최대 100만파운드까지 투자액의 30% 소득공제, 주식 차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교세, 주식 매각손 통상소득에 합산, 양도소득세 납부 유예</p> <p>⑤ SES 투자자에 대한 세제 우대: 투자액의 50%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50% 면제(2013~14), 주식매각손 과 통상소득의 합산</p>	<p>③ 벤처캐피탈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우대: 그 투자 실현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교세</p>	<p>④ 벤처캐피탈 투자 촉진 세제우대: 벤처기업 투자로 인한 손실을 위한 보전금(벤처기업의 정부가액 기준 최대 80%까지)</p> <p>⑤ 엔젤세제: 일정 요건 기업에 대해 투자한 경우, 투자 시점과 매각시점에 세제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시점: 투자액을 그 해의 다른 주식 양도의에서 공제</li> <li>- 매각시점: 이익의 경우, 양도익을 2분의 1로 합산하여 과세/손실의 경우, 손실을 차기 연도 3년간 이월하여 공제</li> </ul>	<p>④ 촉진산업업종조례(2009년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우대조치: 주주에 대한 투자세금 공제의 혜택(선택적)</li> </ul>

자료: IV장의 본문내용을 표로 요약하여 정리

---

## V.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

---

제 V 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개요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조사결과를 요약한다.

### 1. 조사 개요

#### 가. 조사 목적

본 조사는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벤처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나. 조사 내용

본 설문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V-1〉 조사 항목

구 분	세부항목
기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캐피탈: 기업유형, 설립 연도, 자본금, 투자규모, 투자업종, 투자유형, 투자기업의 업력, 회수방식, 회수기간</li> <li>- 벤처기업: 업종, 창업 연도, 벤처기업 최초확인 연도, 벤처기업 확인유형, 코스닥 상장 여부, 인수합병 여부, 기업매각 고려 여부, 엔젤투자자/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경험, 자본금, 매출액, 종업원 수</li> </ul>
조세지원제도 활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여부</li> <li>-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 여부</li> <li>-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li> <li>- 활용에 도움이 된 곳, 활용하지 않은 이유</li> </ul>
조세지원제도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이 높은 제도</li> <li>-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li> <li>- 조세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조세지원제도</li> </ul>
조세지원제도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li> <li>-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폐지해야 할 제도</li> <li>-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li> <li>- 신설이 필요한 조세지원제도</li> </ul>
벤처기업 지원정책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li> <li>-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li> <li>-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li> </ul>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연령, 직위, 현 직장경력</li> </ul>

## 다. 조사 설계

### 1) 표본 설계

본 조사의 표본은 전국 17개 시·도의 벤처기업 817개와 벤처캐피탈 23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V-2〉 표본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 전국의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사지역	- 전국 17개 시·도
유효표본	- 벤처기업 817개, 벤처캐피탈 23개

## 2) 조사 방법

본 설문조사는 온라인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를 병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7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다.

〈표 V-3〉 조사 방법

구 분	내 용
조 사 방 법	온라인 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병행
자료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 사 기 간	2014년 7월 30일 ~ 9월 19일

‘실효성이 높은 조세지원제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상위 3개의 항목을 선택할 때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실효성이 높은 제도와 폐지해야 할 제도를 동시에 질문함으로써 조세지원 위주로 답변이 치우치는 것을 통제하고, 무응답 시 다음문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설문조사의 한계성을 보완하였다.

## 라.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의 응답자 특성은 〈표 V-4〉와 〈표 V-5〉에 각각 정리되어 있다.

### 1)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응답자 수는 총 817개 회사로서 그 가운데 699개가 제조업 벤처이다. 기업유형별로는 기술평가보증기업, 연구개발기업, 벤처투자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창업 연도별로 보면 2001년 이전에 창업한 기업이 441개로 과반을 넘는다. 벤처확인 연도별로는 2006년 ~ 2010년 사이에 창업한 기업이 가장 많고 자본금도 20억원 미만이 전체의 과반이다. 종업원 수도 100명 미만이 과반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규모가 작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표 V-4〉 응답자 특성 - 벤처기업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비중
전 체		817	100.0
업종별	농업/임업/어업	1	0.1
	광업	2	0.2
	제조업	699	85.6
	전기가수수도사업	6	0.7
	환경복원업	4	0.5
	건설업	8	1.0
	도매및소매업	12	1.5
	운수업	2	0.2
	정보서비스업	47	5.8
	기술서비스업	29	3.5
	사업지원서비스업	2	0.2
	교육서비스업	2	0.2
여가관련서비스업	3	0.4	
벤처기업 유형별	벤처투자기업	110	13.5
	연구개발기업	257	31.5
	기술평가보증기업	378	46.3
	기술평가대출기업	53	6.5
	예비벤처기업	8	1.0
	모름/무응답	11	1.3

〈표 V-4〉의 계속

구분		사례 수	비중
창업 연도별	2001년 이전	441	54.0
	2001년 ~ 2005년	214	26.2
	2006년 ~ 2010년	141	17.3
	2011년 이후	21	2.6
벤처확인 연도별	2001년 이전	117	14.3
	2001년 ~ 2005년	205	25.1
	2006년 ~ 2010년	332	40.6
	2011년 이후	149	18.2
	모름/무응답	14	1.7
자본금별	10억원 미만	287	35.1
	10~20억원 미만	221	27.1
	20~30억원 미만	128	15.7
	30억원 이상	181	22.2
종업원수별	50명 미만	303	37.1
	50~100명 미만	281	34.4
	100~200명 미만	173	21.2
	200명 이상	60	7.3
지역별	서울	148	18.1
	인천/경기	293	35.9
	부산/울산/경남	128	15.7
	대구/경북	78	9.5
	광주/전라	45	5.5
	대전/세종/충청	116	14.2
	제주/강원	9	1.1
직위별	대표	8	1.0
	임원/부서장	112	13.7
	중간 관리	537	65.7
	기타	160	19.6
직장 경력별	5년 미만	497	60.8
	5~10년 미만	191	23.4
	10년 이상	129	15.8

## 2) 벤처캐피탈

총 23개의 벤처캐피탈이 설문에 응했으며 특성별로 보면 2006년~2010년에 설립된 50억~100억원 미만의 자본금을 가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표 V-5〉 응답자 특성 - 벤처캐피탈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비중
전 체		23	100.0
기업 유형별	창업투자회사	23	100.0
설립 연도별	2005년 이전	4	17.4
	2006년~2010년	14	60.9
	2011년 이후	5	21.7
자본금별	50~100억원 미만	17	73.9
	100억원 이상	6	26.1
지역별	서울	19	82.6
	인천/경기	2	8.7
	부산/울산/경남	1	4.3
	대구/경북	1	4.3
성별	남성	15	65.2
	여성	8	34.8
연령별	39세 이하	13	56.5
	40대	8	34.8
	50대	1	4.3
	60세 이상	1	4.3
직위별	대표	1	4.3
	임원/부사장	6	26.1
	중간 관리	15	65.2
	기타	1	4.3
직장 경력별	5년 미만	14	60.9
	5~10년 미만	8	34.8
	10년 이상	1	4.3

## 2. 조사 결과

### 가. 벤처기업

#### 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

##### 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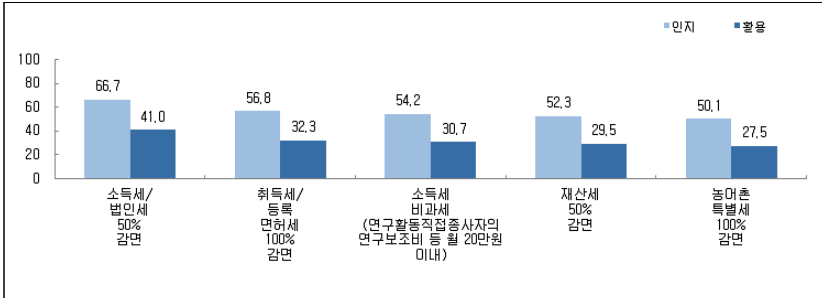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66.7%로 인지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

〈표 V-6〉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결 과	인지 (%)	활용 (%)
문) 귀사는 다음과 같은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오늘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또한 다음과 같은 벤처캐피탈 조세 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각각의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와 활용 여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66.7	41.0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감면	56.8	32.3
재산세 50% 감면	52.3	29.5
농어촌특별세 100% 감면	50.1	27.5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19.7	6.0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 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19.8	5.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5.7	3.9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 시 과세이연	15.4	3.2
기술 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9.0	6.0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대한 과세특례	24.4	10.2
벤처투자 회사의 수입 배당 금액의 익금 불산입	17.5	10.2
소득세 비과세(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54.2	30.7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	21.2	4.5

[그림 V-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단위: %)



주: 상위 5개 항목만 제시

면’(56.8%), ‘연구활동 직접종사자의 연구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54.2%), ‘재산세 감면’(52.3%), 농어촌특별세 감면’(50.1%)의 순으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지원제도 활용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활용률 순위와 인지율 순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기업에서 ‘소득세 비과세(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인지율이 다른 벤처기업유형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는 투자를 받지 않은 업체에 비해 모든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여부도 인지 여부와 같은 응답자 특성을 보였다.

#### 나)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여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인지 여부에 대해 벤처기업에게 물어본 결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인지율이 17.0%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 제도에 대해서는 10% 내외의 인지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벤처기업의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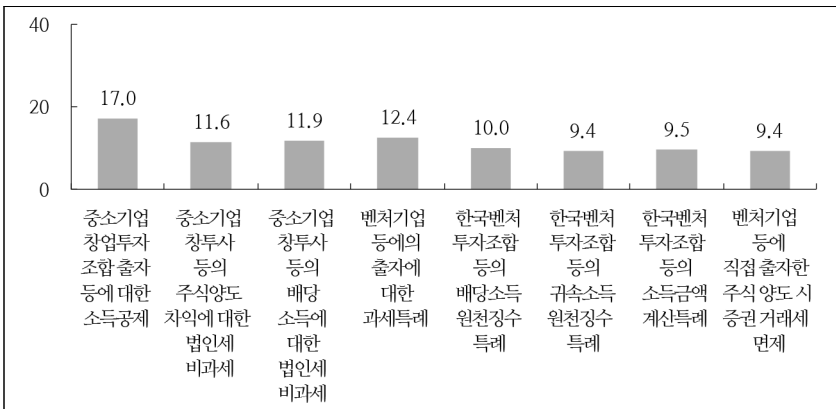
〈표 V-7〉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여부

문) 귀사는 다음과 같은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오늘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또한 다음과 같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각각의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와 활용 여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 과	비중(%)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7.0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11.6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11.9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2.4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	10.0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특례	9.4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9.5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 거래세 면제	9.4

[그림 V-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여부

(단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여부는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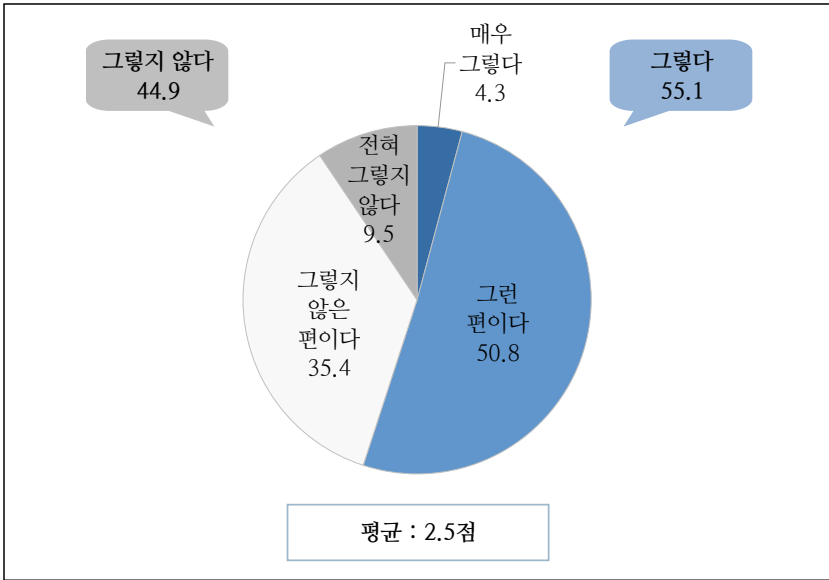
〈표 V-8〉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문) 귀사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비중(%)	
매우 그렇다		4.3	55.1
그런 편이다		50.8	
그렇지 않은 편이다		35.4	44.9
전혀 그렇지 않다		9.5	
계(n=817)		100.0	
평균(4점 만점)		2.5 점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창업 연도별로는 2001년 이전 창업한 업체에서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벤처확인 유형별로는 연구개발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여부별로는 상장한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림 V-3]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단위: %)



다-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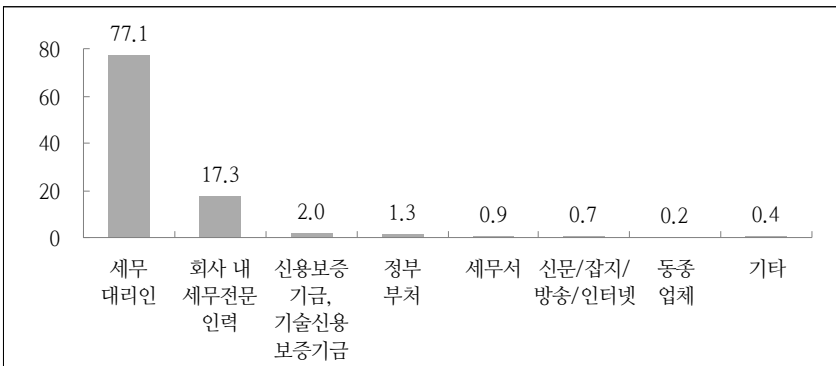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업체(n=450)들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주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77.1%로 가장 많았다.

〈표 V-9〉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문) 그렇다면, 귀사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누구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까?	
결 과	비중(%)
세무대리인	77.1
회사 내 세무전문 인력	17.3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2.0
정부부처	1.3
세무서	0.9
신문/잡지/방송/인터넷	0.7
동종업체	0.2
기타	0.4
계(n=450)	100.0

[그림 V-4]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단위: %)



다-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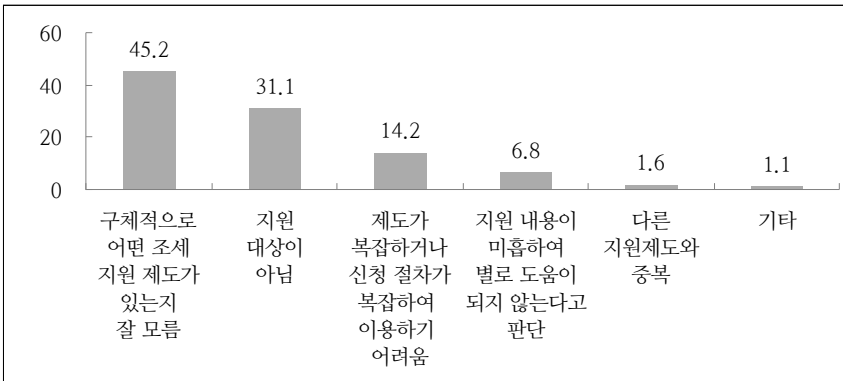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n=367)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지원제도가 있는지 잘 모름'(45.2%), '지원대상이 아님'이 31.1%로 가장 많았다.

〈표 V-10〉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문) 그렇다면, 귀사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 과	비중(%)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지원제도가 있는지 잘 모름	45.2
지원 대상이 아님	31.1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려움	14.2
지원 내용이 미흡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6.8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	1.6
기타	1.1
계(n=367)	100.0

〈그림 V-5〉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와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지원제도가 있는지 잘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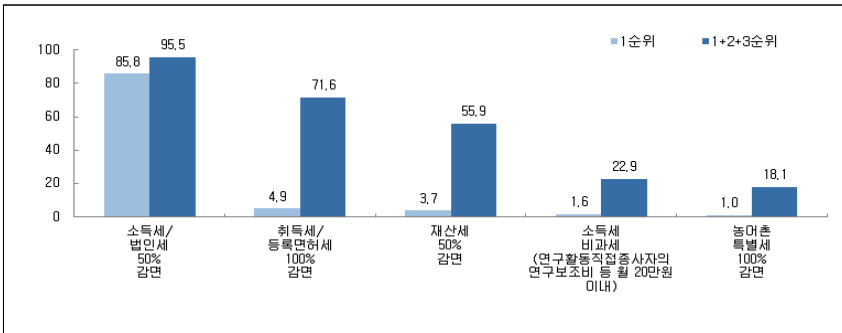
## 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실효성

### 가) 실효성이 높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순위 응답기준으로는 대부분(85.8%)의 업체에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로 응답하였다. 1+2+3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95.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71.6%), ‘재산세 감면’(55.9%), ‘연구활동 직접종사자의 연구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48.4점으로 다른 제도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21.0점), ‘재산세 감면’(12.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6] 실효성이 높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단위: %)



주: 상위 5개 항목만 제시

〈표 V-11〉 실효성이 높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문) 귀사의 활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어느 것 입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시고,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해당 순위에 점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결 과	1순위 (%)	1+2+3순위 (%)	점수 (점)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85.8	95.5	48.4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감면	4.9	71.6	21.0
재산세 50% 감면	3.7	55.9	12.6
소득세 비과세(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6	22.9	6.8
농어촌 특별세 100% 감면	1.0	18.1	4.4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대한 과세특례	0.9	5.8	1.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	0.7	4.0	1.1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0.6	3.7	1.0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0.4	3.7	1.0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0.4	3.3	1.0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 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0.1	3.1	0.7
벤처 지주 회사의 수입배당 금액의 익금불산입	-	1.3	0.3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채투자시 과세이연	-	1.1	0.3
계(n=817)	100.0	-	100.0

실효성이 높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1순위 기준으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복응답 기준으로는 창업 연도가 늦을수록 ‘소득세/법인세 감면’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코스닥 상장 여부별로는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에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나 상장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소득세 비과세’가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점수기준 응답자 특성은 중복응답 기준과 비슷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나)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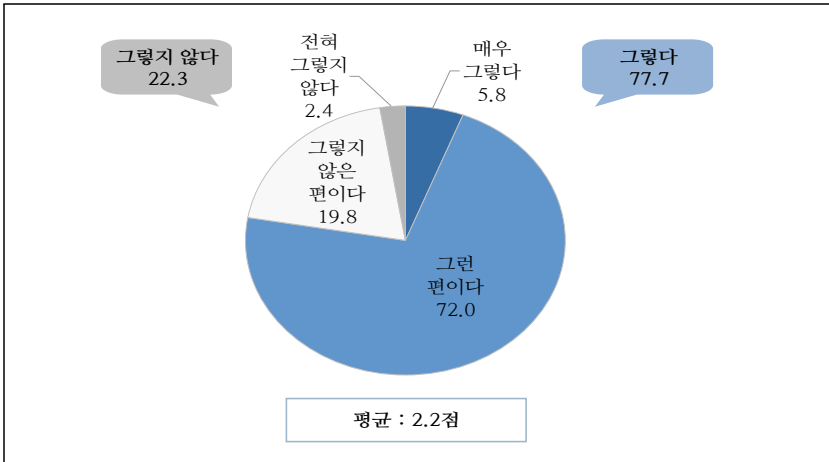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77.7%로 ‘효과가 없다’(22.3%)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1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문) 귀사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비중(%)
매우 그렇다	5.8
그런 편이다	72.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8
전혀 그렇지 않다	2.4
계(n=817)	100.0
평균	2.2 점

〈그림 V-7〉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단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기업과 기술평가보증기업에서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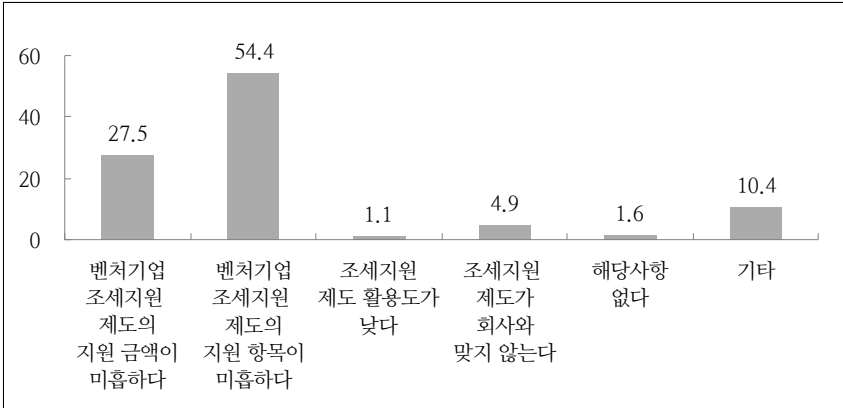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자(n=182)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절반 이상(54.4%)이 ‘지원항목이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13〉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 귀사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지원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 과	비중(%)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 금액이 미흡하다	27.5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 항목이 미흡하다	54.4
조세지원제도 활용도가 낮다	1.1
조세지원제도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	4.9
해당사항 없다	1.6
기타	10.4
계(n=182)	100.0

[그림 V-8]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다)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물어본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79.8%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중복응답 기준으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90.8%),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62.7%), '재산세 감면'(5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점수 기준은 중복응답 기준과 순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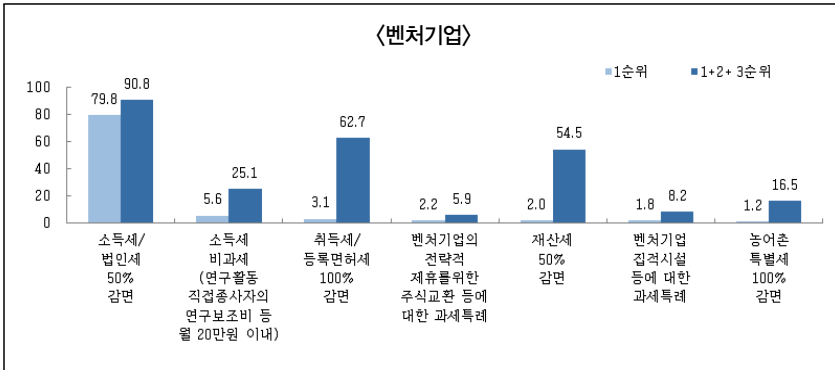
〈표 V-14〉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문) 귀사는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시고,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해당 순위에 점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결 과	1순위 (%)	1+2+3순위 (%)	점수 (점)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79.8	90.8	45.8
소득세 비과세(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5.6	25.1	7.9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감면	3.1	62.7	18.3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에 대한과세특례	2.2	5.9	1.9
재산세 50% 감면	2.0	54.5	12.2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대한 과세특례	1.8	8.2	2.2
농어촌 특별세 100% 감면	1.2	16.5	4.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1	5.5	1.7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유 3년간 소득세 분할 납부	1.0	5.6	1.7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0.9	3.2	1.0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0.6	5.4	1.6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 시 과세이연	0.6	3.3	1.0
벤처지주 회사의 수입배당 금액의 익금불산입	0.1	2.3	0.6
계(n=817)	100.0	-	100.0

[그림 V-9]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단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1순위 기준으로는 코스닥 비상장 업체, 엔젤 투자자/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지 않은 업체에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의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복응답 기준으로는 코스닥 비상장 업체에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던 반면, 코스닥 상장 업체에서는 ‘연구활동 직접종사자의 연구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4) 벤처기업 조세 지원제도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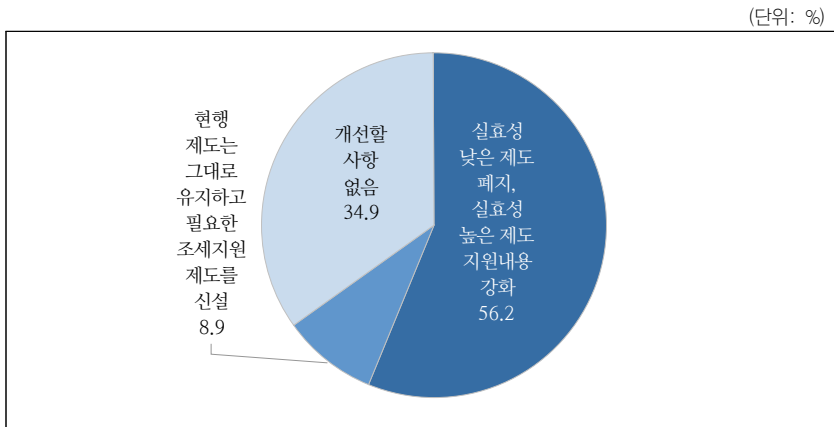
##### 가)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의 지원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6.2%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V-15〉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문) 귀사는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결 과	비중(%)
실효성 낮은 제도 폐지, 실효성 높은 제도 지원내용 강화	56.2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조세지원 제도를 신설	8.9
개선할 사항 없음	34.9
계(n=817)	100.0

〔그림 V-10〕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술평가보증기업과 엔젤투자자/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업체에서 ‘실효성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 높은 제도의 지원 내용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벤처확인 연도가 빠를수록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서 ‘개선할 사항이 없음’이라

는 응답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나)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폐지해야 할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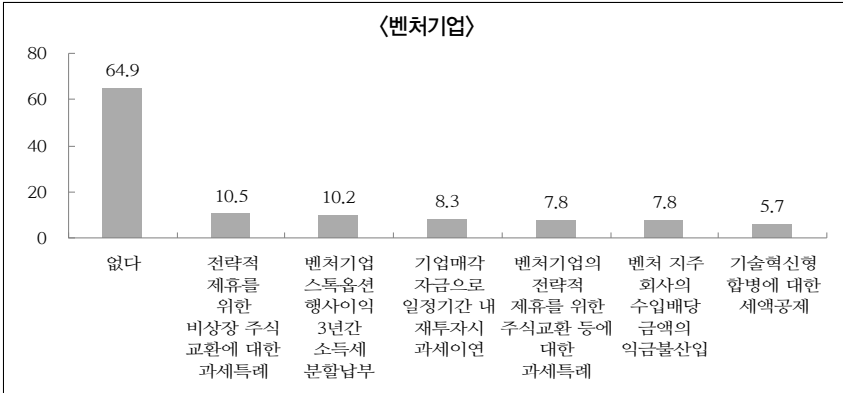
실효성이 낮아 폐지해야 할 제도로는 ‘없다’(64.9%)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10.5%),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6〉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폐지해야 할 제도

문) 그렇다면, 귀사는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이 낮아 폐지해야 할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결 과	비중(%)
없다	64.9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0.5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	10.2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채투자 시 과세이연	8.3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7.8
벤처 지주 회사의 수입배당 금액의 익금불산입	7.8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5.7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5.2
소득세 비과세(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4.8
농어촌 특별세 100% 감면	4.6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대한 과세특례	2.6
취득세/ 등록면허세 100% 감면	0.9
재산세 50% 감면	0.7
(n=459)	-

[그림 V-11]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폐지해야 할 제도

(단위: %)



다)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 '자격요건 완화'가 32.2%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나, 중복응답 기준으로는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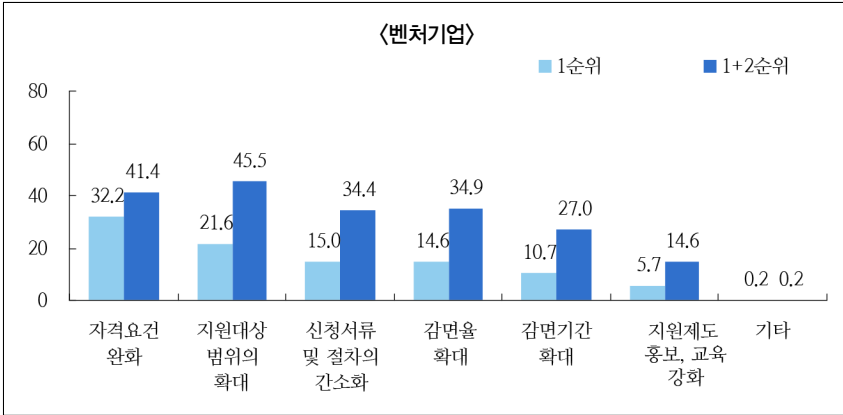
<표 V-17>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문) 그렇다면, 귀사는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결 과	1순위 (%)	1+2순위 (%)
자격요건 완화	32.2	41.4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21.6	45.5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15.0	34.4
감면을 확대	14.6	34.9
감면기간 확대	10.7	27.0
지원제도 홍보, 교육강화	5.7	14.6
기타	0.2	0.2
계(n=459)	100.0	-

[그림 V-12]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단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창업 연도가 늦을수록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라는 응답이, 코스닥 상장 업체에서는 ‘감면율 확대’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라) 신설이 필요한 조세지원제도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자(n=73)는 ‘지원제도 홍보’, ‘지원대상 범위 확대’, ‘연구활동 종사자 이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등의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18〉 신설이 필요한 조세지원제도

문) 그렇다면, 귀사는 어떠한 내용의 조세지원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비중(%)
지원제도 홍보	11.0
지원대상 범위 확대	8.2
연구활동 종사자 이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5.5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기간연장	4.1
지원대상 규모 확대	2.7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7
창업벤처뿐 아니라 일반 벤처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필요	2.7
법인세 추가 감면	2.7
기계 무상 임대 지원	1.4
무이자 대출 제도	1.4
연구활동을 위한 특별 조세 지원 제도 신설	1.4
감면세율 확대	1.4
조세지원제도 자격 요건 강화	1.4
대출 금리 인하	1.4
성장단계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	1.4
시설 투자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신설	1.4
감면분에 대해서도 추가 세금지원	1.4
급여 지원	1.4
벤처기업 M&A시 조세지원을 위한 가산점	1.4
개발비용	1.4
매출에 따른 과세가 아닌 이익률에 따른 과세	1.4
부실 채권에 대한 부가세 환급기한 감축	1.4
부가세에 대하여 일정부분 감면에 대한 지원제도	1.4
기술개발 자금의 정부주도 지원	1.4
대상기업의 확대와 중복감면	1.4
벤처기업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1.4
신입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 감면	1.4
지방세 조세특례와 연계하여 추가 지원	1.4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	17.8
모름/무응답	20.5
계(n=73)	100.0

## 5) 벤처기업 지원정책 전반

### 가)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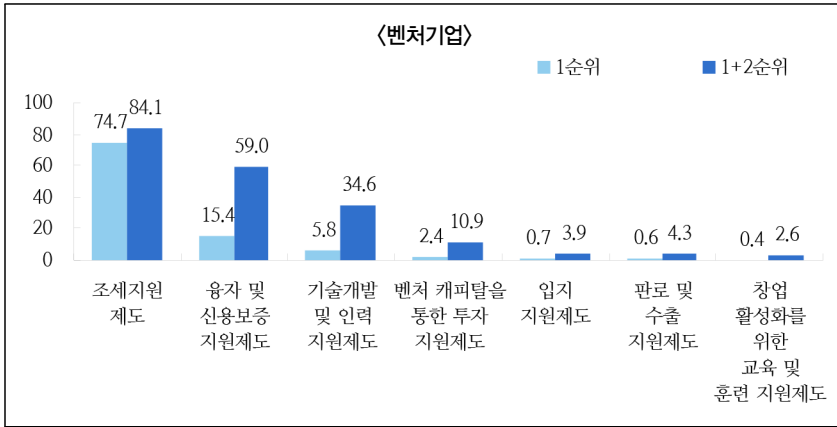
조세지원제도를 포함한 벤처기업 지원정책 전반에 걸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에 대해 물어본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조세지원제도'(74.7%)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융자 및 신용보증 지원제도'가 15.4%로 나타났다. 또한,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도 '조세지원제도'가 84.1%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융자 및 신용보증 지원제도'(59.0%), '기술개발 및 인력 지원제도'(34.6%) 등으로 나타났다.

〈표 V-19〉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벤처기업)

결 과	1순위	1+2순위
	(%)	(%)
조세지원제도	74.7	84.1
융자 및 신용보증 지원제도	15.4	59.0
기술개발 및 인력 지원제도	5.8	34.6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 지원제도	2.4	10.9
입지 지원제도	0.7	3.9
판로 및 수출 지원제도	0.6	4.3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제도	0.4	2.6
계(n=817)	100.0	-

[그림 V-13]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

(단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벤처기업 확인 연도가 늦을수록,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에서 ‘조세지원제도’를, 기술평가대출기업에서 ‘융자 및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기업에서는 ‘기술개발 및 인력 지원제도’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업체에서는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 지원제도’라는 응답비율이, 투자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는 ‘조세지원제도’와 ‘융자 및 신용보증 지원제도’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나)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

2013년 5월 정부에서 추진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의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신설’(16.4%)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한편, 중복 응답 기준으로는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도입’(28.8%),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신설’(28.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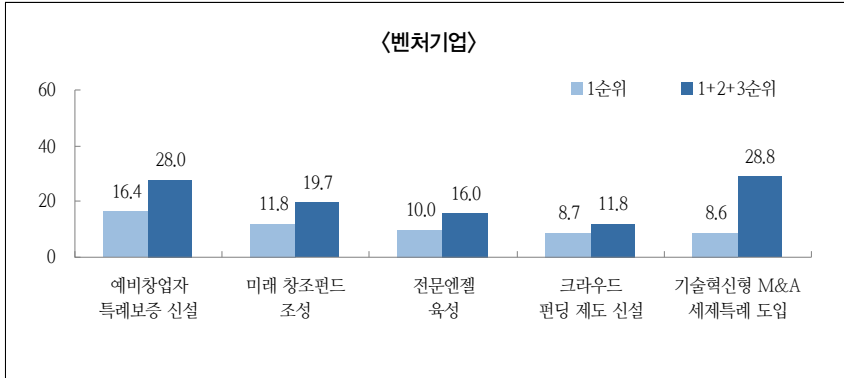
〈표 V-20〉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

문) 귀사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결 과	1순위 (%)	1+2+3순위 (%)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신설	16.4	28.0
미래 창조펀드 조성	11.8	19.7
전문엔젤 육성	10.0	16.0
클라우드 펀딩 제도 신설	8.7	11.8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도입	8.6	28.8
엔젤 소득공제 확대	5.8	12.2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	3.2	13.3
M&A 절차 간소화	2.9	15.7
성장사다리펀드 등 성장투자 확대	2.7	10.6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개선	2.7	9.5
중소기업 M&A 시 중소기업 졸업 유예	2.3	7.0
주식 교환 및 채투자시 과세이연 허용	2.1	10.3
코넥스 시장 세제 지원 확대	1.1	5.9
벤처1세대 투자 펀드 조성	0.7	4.9
중소기업 M&A 보증 도입	0.6	7.8
성공 벤처인 등 멘토링 자원 확보	0.6	7.1
대기업 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 유예 등	0.4	3.2
코스닥 시장분부 독립성 강화	0.4	1.3
코스닥 상장유치/지원 기능 강화	0.4	4.5
코넥스 기업 투자제한 완화	0.4	1.2
코넥스 상장/공시 부담 완화	0.2	2.4
해외동포 등 해외투자 유치	0.2	2.1
모태펀드의 M&A투자 매칭방식 변경	0.1	0.6
모름/무응답	17.7	17.7
계(n=817)	100.0	-

[그림 V-14]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벤처기업)

(단위: %)



주: 상위 5개 항목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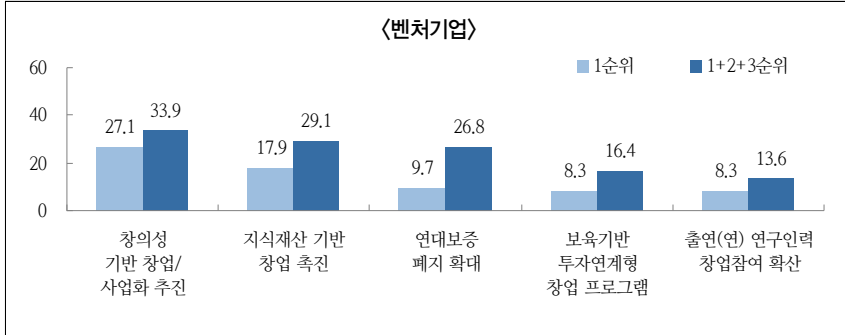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에서 '미래 창조펀드'가 벤처창업 활성화가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중복응답 기준으로는 코스닥 비상장 업체가 코스닥 상장 업체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창의성 기반 창업/사업화 추진'을 27.1%로 가장 많이 선택 하였으며, 이어서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17.9%), '연대보증 폐지 확대'(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복응답 기준으로는 '창의성 기반 창업/사업화 추진'이 33.9%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이어서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29.1%), '출연(연)·대학 기술사업화 촉진'(27.1%)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림 V-15]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벤처기업)

(단위: %)



주: 상위 5개 항목만 제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1순위 기준으로는 코스닥 상장 업체에서 ‘지식 재산 기반 창업 촉진’이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매출액이 높을수록 ‘창의성 기반 창업/사업화 추진’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중복응답 기준으로도 매출액이 높을수록 ‘창의성 기반 창업/사업화 추진’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나. 벤처캐피탈

### 1)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

#### 가)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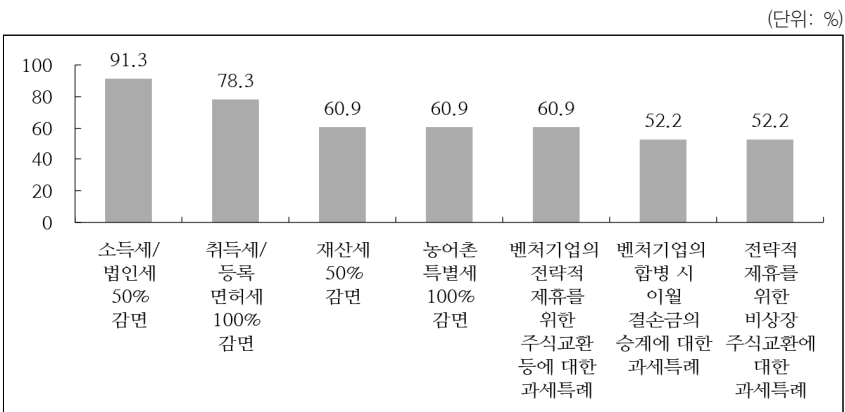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벤처기업과 동일한 질문을 벤처캐피탈사에 한 결과, ‘소득세/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91.3%)의 업체 담당자들이 알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이 78.3%, ‘재산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감면’, ‘벤처기업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각각 60.9%의 인지율을 보였다.

〈표 V-2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여부

문) 귀사는 다음과 같은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오늘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또한 다음과 같은 벤처캐피탈 조세 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각각의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와 활용 여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 과	비중(%)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91.3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감면	78.3
재산세 50% 감면	60.9
농어촌특별세 100% 감면	60.9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60.9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 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52.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52.2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 시 과세이연	39.1
기술 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39.1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대한 과세특례	47.8
벤처지주 회사의 수입 배당 금액의 익금불산입	52.2
소득세 비과세(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4.8
벤처기업 소득음선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	52.2

〔그림 V-16〕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 여부



나)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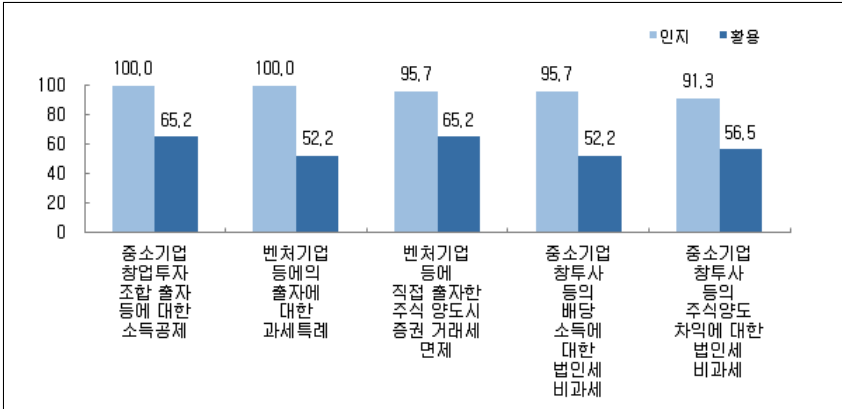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모든 업체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 거래세 면제’에 대한 인지도가 95.7%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의 인지도는 73.9%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한편,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 거래세 면제’ 제도(65.2%)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이어서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56.5%),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52.2%),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5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문) 귀사는 다음과 같은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오늘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또한 다음과 같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각각의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와 활용 여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 과	인지 (%)	활용 (%)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00.0	65.2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91.3	56.5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95.7	52.2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00.0	52.2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	82.6	43.5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특례	82.6	43.5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73.9	43.5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 거래세 면제	95.7	65.2

[그림 V-17]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단위: %)



주: 상위 5개 항목만 제시

다)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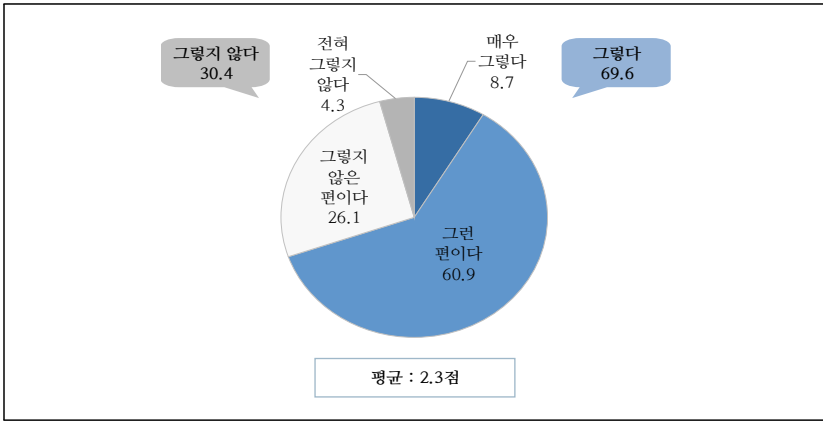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69.6%,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4%로 나타났다.

<표 V-23>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문) 귀사는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비중(%)
매우 그렇다	8.7
그런 편이다	60.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1
전혀 그렇지 않다	4.3
계(n=23)	100.0
평균	2.3 점

[그림 V-18]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단위: %)



다-1)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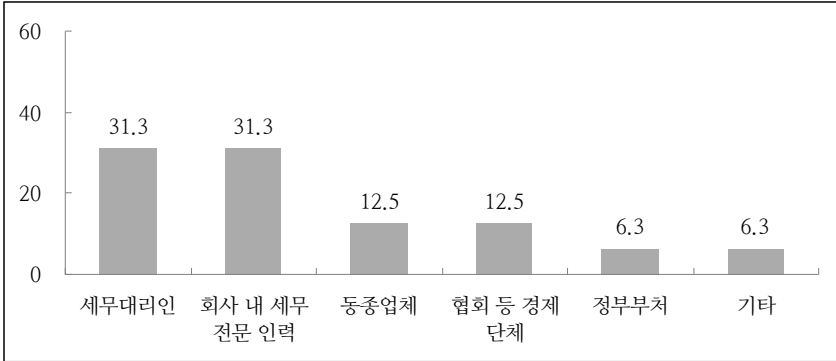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업체(n=16)들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주로 ‘세무대리인’이나 ‘회사 내 세무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24〉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문) 그렇다면, 귀사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누구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까?	
결 과	비중(%)
세무대리인	31.3
회사 내 세무전문 인력	31.3
동종업체	12.5
협회 등 경제단체	12.5
정부부처	6.3
기타	6.3
계(n=16)	100.0

[그림 V-19]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은 곳

(단위: %)



다-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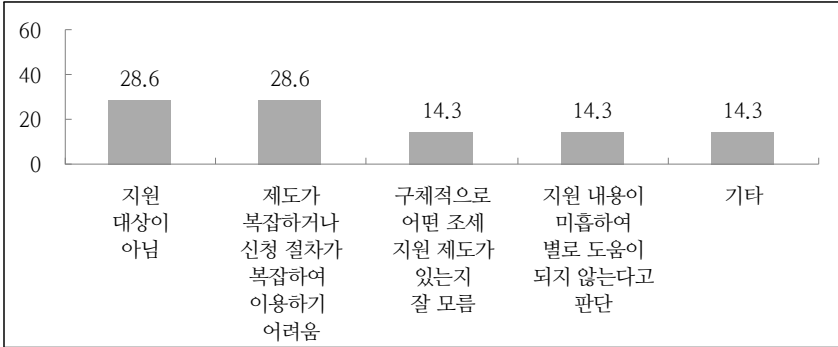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n=7)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지원 대상이 아님’,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려움’이 28.6%로 가장 많았다.

〈표 V-25〉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문) 그렇다면, 귀사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 과	비중(%)
지원 대상이 아님	28.6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려움	28.6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지원 제도가 있는지 잘 모름	14.3
지원 내용이 미흡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14.3
기타	14.3
계(n=7)	100.0

[그림 V-20]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실효성

### 가) 실효성이 높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기준으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절반 이상(52.2%)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1+2+3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가 73.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65.2%),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56.5%),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5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점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29.0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6.1점),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17.2점),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3.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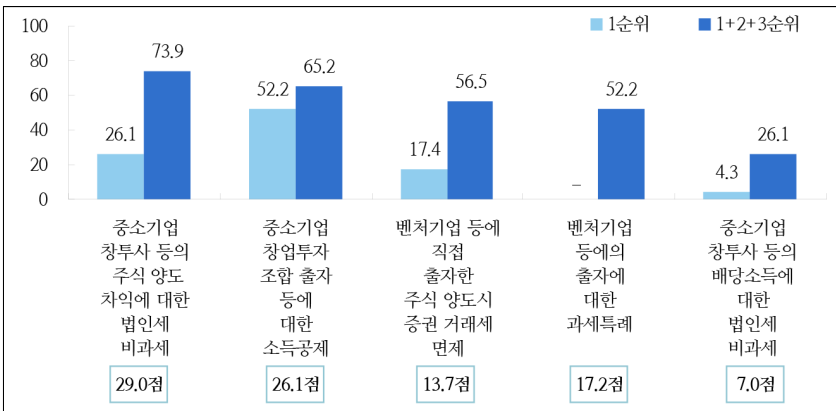
〈표 V-26〉 실효성이 높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문) 귀사의 활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시고,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해당 순위에 점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결 과	1순위 (%)	1+2+3순위 (%)	점수 (점)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26.1	73.9	29.0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52.2	65.2	26.1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17.4	56.5	17.2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2.2	13.7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4.3	26.1	7.0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	-	13.0	3.5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	8.7	2.6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특례	-	4.3	0.9
계(n=23)	100.0	-	-

〔그림 V-21〕 실효성이 높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단위: %)



주: 상위 5개 항목만 제시

나)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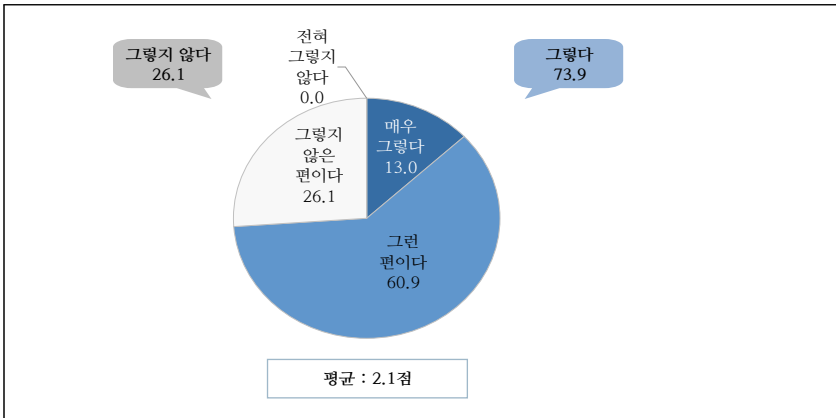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73.9%로 ‘효과가 없다’(26.1%)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V-27〉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문) 귀사는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비중(%)
매우 그렇다	13.0
그런 편이다	60.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1
전혀 그렇지 않다	0.0
계(n=23)	100.0
평균	2.1 점

[그림 V-2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효과 여부

(단위: %)



나-1)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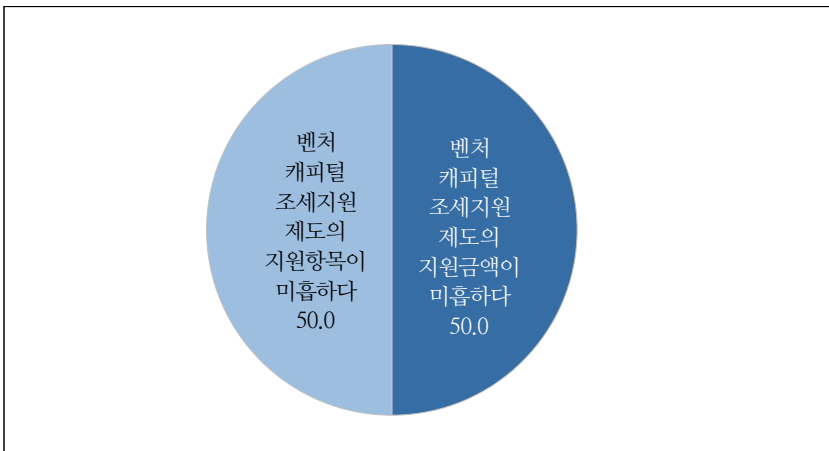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자(n=6)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지원금액이 미흡하다', '지원항목이 미흡하다'가 각각 50%씩 응답되었다.

〈표 V-28〉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 귀사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지원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 과	비중(%)
벤처캐피탈 조세지원 제도의 지원금액이 미흡하다	50.0
벤처캐피탈 조세지원 제도의 지원항목이 미흡하다	50.0
계(n=6)	100.0

[그림 V-23]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다)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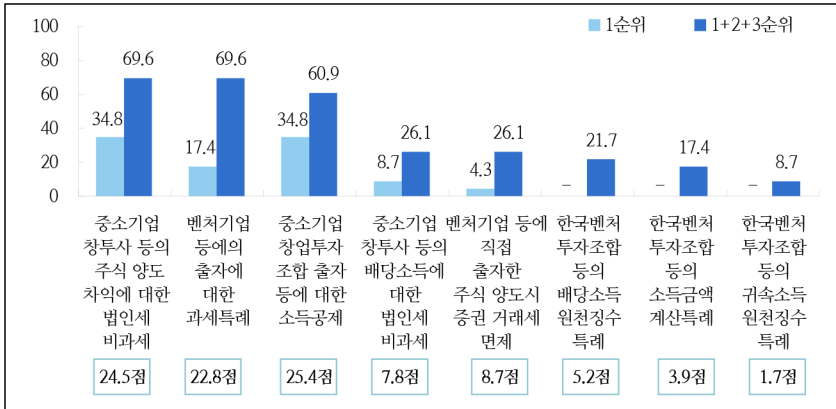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34.8%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한편, 중복응답 기준으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라는 응답이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점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5.4점)가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24.5점),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2.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9〉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문) 귀사는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시고,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해당 순위에 점수를 입력해주시시오.			
결 과	1순위 (%)	1+2+3순위 (%)	점수 (점)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34.8	69.6	24.5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7.4	69.6	22.8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4.8	60.9	25.4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8.7	26.1	7.8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 거래세 면제	4.3	26.1	8.7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	-	21.7	5.2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	17.4	3.9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특례	-	8.7	1.7
계(n=23)	100.0	-	100.0

[그림 V-24]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단위: %)



### 3) 벤처캐피탈 조세 지원제도 개선사항

#### 가)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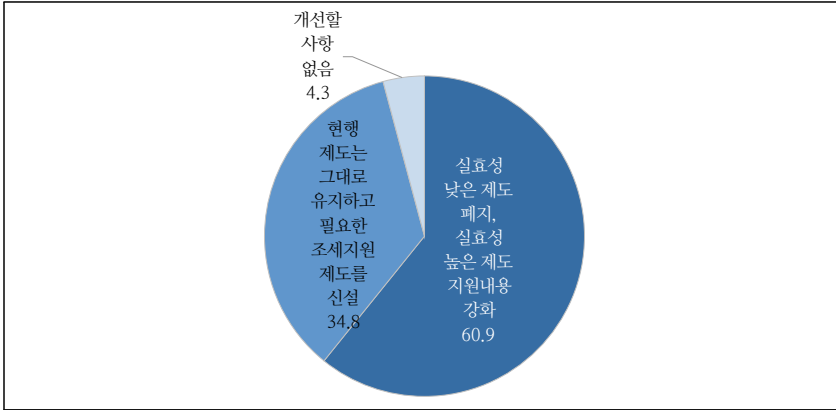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의 지원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0.9%로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34.8%)보다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V-30>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문) 귀하는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결 과	비중(%)
실효성 낮은 제도 폐지, 실효성 높은 제도 지원내용 강화	60.9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조세지원제도를 신설	34.8
개선할 사항 없음	4.3
계(n=23)	100.0

[그림 V-25]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

(단위: %)



나)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폐지해야 할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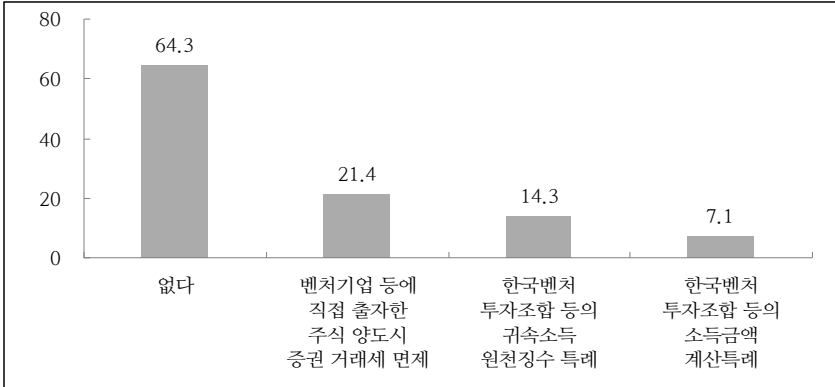
실효성이 낮아 폐지해야 할 제도로는 ‘없다’(64.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 거래세 면제’(21.4%)가 그 다음이었다.

<표 V-31>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폐지해야 할 제도

문) 그렇다면, 귀사는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이 낮아 폐지해야 할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결 과	비중(%)
없다	64.3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 거래세 면제	21.4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특례	14.3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7.1
계(n=14)	100.0

[그림 V-26]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폐지해야 할 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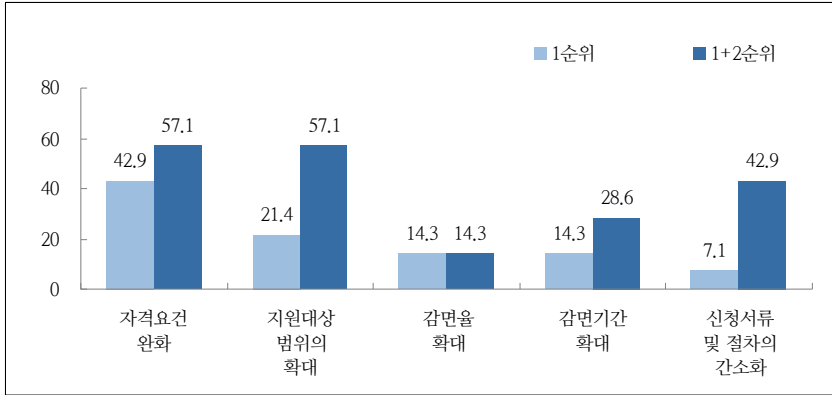
다)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 '자격요건 완화'가 42.9%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중복응답 기준으로 '자격요건 완화',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가 42.9%로 나타났다.

<표 V-32>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문) 그렇다면, 귀사는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요.			
결 과	1순위 (%)	1+2순위 (%)	
자격요건 완화	42.9	57.1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21.4	57.1	
감면율 확대	14.3	14.3	
감면기간 확대	14.3	28.6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7.1	42.9	
계(n=14)	100.0	-	

[그림 V-27]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 (단위: %)



라) 신설이 필요한 조세지원제도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자(n=8)는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법인세 및 이자소득세 감면’, ‘조합에 출자한 경우 투자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확대’, ‘신주의 범위에 회사의 1년 이상 보유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제도들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33> 신설이 필요한 조세지원제도

문) 그렇다면, 귀사는 어떠한 내용의 조세지원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비중(%)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법인세 및 이자소득세 감면	12.5
조합에 출자한 경우 투자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확대	12.5
신주의 범위에 회사의 1년 이상 보유 자기주식을 포함	12.5
모름/무응답	62.5
계(n=8)	100.0

#### 4) 벤처기업 지원정책 전반

##### 가)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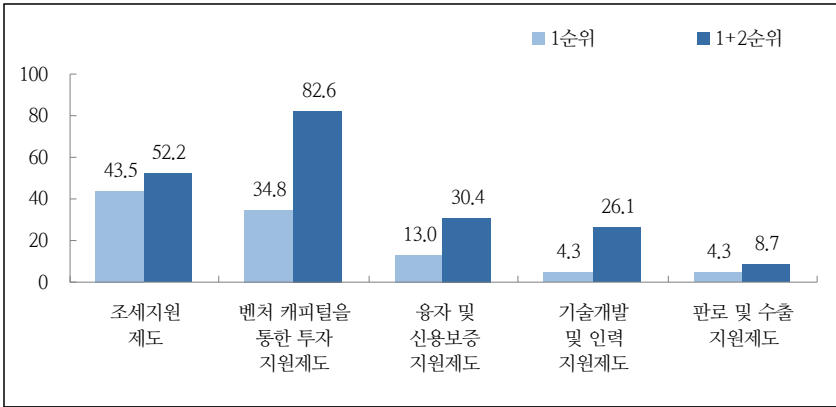
벤처기업 지원정책 전반에 걸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조세지원제도'(43.5%)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지원제도'가 34.8%로 응답되었다.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는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지원제도'가 82.6%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조세지원제도'가 52.2%로 응답되었다.

〈표 V-34〉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벤처캐피탈)

문) 귀사는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결 과	1순위 (%)	1+2순위 (%)
조세지원제도	43.5	52.2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지원제도	34.8	82.6
융자 및 신용보증 지원제도	13.0	30.4
기술개발 및 인력 지원제도	4.3	26.1
판로 및 수출 지원제도	4.3	8.7
계(n=23)	100.0	-

[그림 V-28]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실효성 높은 정책

(단위: %)



나)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

2013년 5월 정부에서 추진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의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 '미래 창조펀드 조성'(30.4%)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한편, 중복응답 기준으로는 '미래창조펀드 조성', '성장사다리펀드 등 성장투자 확대'라는 응답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개선'이 26.1%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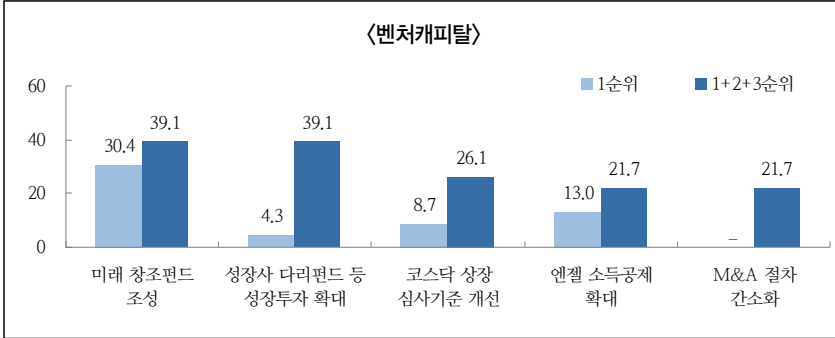
〈표 V-35〉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벤처캐피탈)

문) 귀사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세요.

결 과	1순위 (%)	1+2+3순위 (%)
미래창조펀드 조성	30.4	39.1
성장사다리펀드 등 성장투자 확대	4.3	39.1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개선	8.7	26.1
엔젤 소득공제 확대	13.0	21.7
M&A 절차 간소화	-	21.7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도입	-	17.4
모태 펀드의 M&A투자 매칭방식 변경	8.7	17.4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신설	8.7	13.0
전문엔젤 육성	13.0	13.0
코넥스 상장/공시 부담 완화	-	13.0
주식 교환 및 재투자시 과세이연 허용	-	13.0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	-	8.7
중소기업 M&A 보증 도입	-	8.7
코스닥 상장유치/지원 기능 강화	-	8.7
코넥스 기업 투자제한 완화	-	8.7
예비 창업자 특별보증 신설	-	4.3
대기업 인수기업의 계열사편입 유예 등	-	4.3
중소기업 M&A 시 중소기업 졸업 유예	4.3	4.3
코스닥 시장본부 독립성 강화	4.3	4.3
코넥스 시장 세제 지원 확대	4.3	4.3
벤처1세대 투자 펀드 조성	-	4.3
성공 벤처인 등 멘토링 자원 확보	-	4.3
계(n=23)	100.0	-

[그림 V-29]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벤처캐피탈)

(단위: %)



주: 상위 5개 항목만 제시

다)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스톡옵션 부여 확대 및 세제지원'을 21.7%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창의성 기반 창업/사업화 추진', '보육기반 투자 연계형 창업 프로그램'(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복응답 기준으로는 '중소벤처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가 43.5%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 핵심기술 공증 및 유출방지'가 39.1%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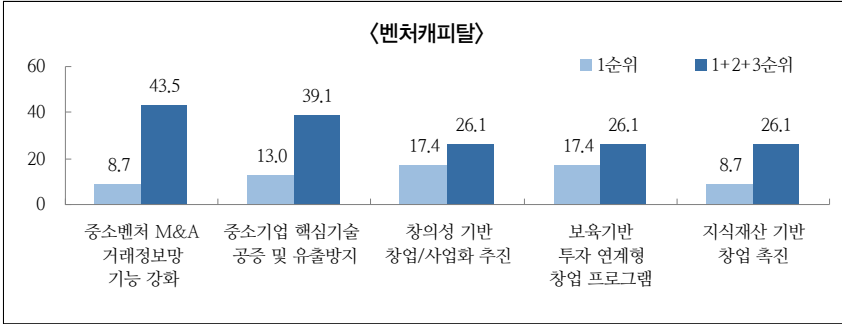
〈표 V-36〉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벤처캐피탈)

문) 귀사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시요.

결 과	1순위 (%)	1+2+3순위 (%)
중소벤처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	8.7	43.5
중소기업 핵심기술 공증 및 유출방지	13.0	39.1
창의성 기반 창업/사업화 추진	17.4	26.1
보육기반 투자 연계형 창업 프로그램	17.4	26.1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8.7	26.1
스톡옵션 부여 확대 및 세제지원	21.7	26.1
기술 평가정보 제공 강화	4.3	21.7
재기 기업인 자금 및 투자 확대	-	21.7
연대보증 폐지 확대	-	17.4
공공정보 활용 등 SW 창업 붐 조성	-	8.7
출연연 연구인력 창업참여 확산	-	8.7
해외 특허 출원 지원	-	8.7
지식 재산권 보호펀드 추가 조성	-	8.7
출연연 대학 기술사업화 촉진	-	4.3
기술유용 행위 고발 및 과징금 강화	-	4.3
기술유용 행위 감시 강화	4.3	4.3
회생컨설팅 실시	4.3	4.3
계(n=23)	100.0	-

[그림 V-30]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정책(벤처캐피탈)

(단위: %)



주: 상위 5개 항목만 제시

###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절에서는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실패를 파악함으로써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벤처기업 817개, 벤처캐피탈 2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로 구분하여 요약하였다.

#### 가.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조세지원제도’가 1+2순위 중복응답 기준 84.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융자 및 신용보증 지원제도’(59.0%), ‘기술개발 및 인력 지원제도’(3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로 나타나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44.9%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n=367)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지원제도

가 있는지 잘 모름'이 45.2%, '지원대상이 아님'이 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 '자격요건 완화'가 32.2%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77.7%로 22.3%인 '효과가 없다'라는 응답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1순위 응답기준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가 85.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2+3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95.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71.6%), '재산세 감면'(55.9%),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등 월 20만원 이내의 소득 비과세'(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79.8%로 가장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 폐지, 실효성이 높은 제도 지원내용 강화'가 56.2%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자는 의견(8.9%)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실효성이 낮아 폐지해야 할 제도로는 '없다'(64.9%)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 특례'(10.5%),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나.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사결과 중 벤처기업 지원정책 전반에 걸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 1순위 기준으로는 43.5%인 조세지원제도가,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는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지원제도'가 82.6%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69.6%,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4%로

나타났다.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65.2%)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이어서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56.5%),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52.2%),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5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n=7)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지원 대상이 아님’,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려움’이 28.6%로 가장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 ‘자격요건 완화’가 42.9%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중복응답 기준으로 ‘자격요건 완화’, ‘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가 42.9%로 나타났다.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73.9%로 26.1%의 ‘효과가 없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제도로는 1순위 응답기준으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52.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반면, 1+2+3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가 73.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65.2%),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56.5%),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5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 폐지, 실효성이 높은 제도 지원내용 강화’가 60.9%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자는 의견 34.8%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다.

한편, 실효성이 낮아 폐지해야 할 제도로는 ‘없다’(64.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21.4%)

가 그 다음이었다.

#### 다. 정책적 시사점

본 조사는 VENTUREIN(벤처인)에서 공시한 2014년 5월 말 기준 벤처기업 명단 약 25,000개와 NICE 신용정보(주)의 KIS-VALUE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명단 중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수작업으로 대조하여 명단을 구축하였으며, 이 중 벤처기업 817개, 벤처캐피탈 23개를 대상으로 온라인조사·전화조사·면접조사의 방법으로 2014년 7월부터 2개월에 걸쳐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치를 두었다. 첫째, '실효성이 높은 조세지원 제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상위 3개의 항목을 선택 시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점수를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두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둘째, 실효성이 높은 제도와 폐지해야 할 제도를 동시에 질문함으로써 조세지원 위주로 답변이 치우치는 것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응답 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모두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의 지원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6.2%, 60.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현행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 '자격요건 완화'가 벤처기업 32.2%, 벤처캐피탈 4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적인 여건과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실효성 있는 제도 위주로 개편하되, 벤처산업 지원 차원에서 조세지원제도의 지원요건 및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 VI.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

### 1. 선행연구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연구는 크게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과 조세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특히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며, 주로 벤처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대근과 이귀선(2002)<sup>154)</sup>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코스닥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이들 법인에게 주어지는 세제상 혜택이 실제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지 분석한 결과, 벤처기업의 조세부담이 일반기업의 조세부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비중소기업의 조세부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오와 노희천(2003)<sup>155)</sup>은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구분하여 세제상 혜택이 세전수익률의 하락을 초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암묵적 조세가설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 바,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세제상 혜택이 기업에 유보되며,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에 비해 유보되는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sup>156)</sup>

---

154) 김대근과 이귀선(2002), pp. 54~56

155) 정운오와 노희천(2013), pp. 150~151

156) Wilkie(1992)는 "진입장벽, 거래비용 등의 시장마찰이나 법적 제약이 없다면 모든 기업의 세후수익률은 동일할 것이므로 조세혜택이 큰 기업일수록 세전수익률은 낮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저자는 1968년에서 1985년까지의 기간 동안 각 연도별로 세전자기자본수익률과 조세혜택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바, 198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의 관계를 얻었으며 1982, 1983, 1984년을 제외한 나머지 14개년에 걸

이형수·김갑순(2010)<sup>157)</sup>은 내재적 존재 가설과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된 타기업군에 비하여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과 내재적 조세의 존재로 인하여 세제상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세전순이익이 여타 기업에 비하여 더 적은지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벤처기업이 여타 기업에 비하여 세제상 혜택을 더 많이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재적 조세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였다.

김동훈(2012)<sup>158)</sup>은 창업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 동안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닥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기업그룹별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여부에 대해서 T-검증을 하였다. 분석결과, 대체로 창업벤처기업이 일반벤처기업보다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 간의 유효법인세율에 대하여도 2002년을 제외하고는 창업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벤처기업과 일반대기업, 그리고 전체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분석에서도 벤처기업의 유효세율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서병우·문승권(2014)<sup>159)</sup>은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세부담률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 간에 조세부담률에 차이가 있었고,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송치승과 박재필(2013)<sup>160)</sup>은 405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성과변수를 이용하여 벤처기

---

친 음(-)의 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암묵적 조세가 기업에 대해서도 존재한다는 가설과 일치한다.(정운오와 노희천(2003), p. 132 재인용).”

157) 이형수·김갑순(2010), pp. 239~240

158) 김동훈(2012), pp. 130~131

159) 서병우와 문승권(2014), p. 179

160) 송치승과 박재필(2013), p. 215

업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성과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특히,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중에서 세제지원은 현재 가장 실효성 높은 벤처지원정책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술정책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벤처기업지원정책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용된 모형의 과반수에서 기술정책과 창업정책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조세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춤으로써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러한 조세혜택이 기업의 세전수익률을 낮춘다는 내재적(암묵적) 조세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그 결과가 분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연구설계

### 가. 자료수집 및 표본선정

본 연구보고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보다 낮은지를 살펴보고,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첫번째,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효법인세율을 비교하였다. 동 분석을 위한 표본기업은 이형수·김갑순(2010)을 비롯한 이전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 벤처기업들보다 비교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높고, 재무자료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자료수집이 수월하기 때문이다.<sup>161)</sup> 표본기업을 코스닥상장기업으로 한정된 이유는 벤처기업을 지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이 중소기업이어야 하기 때문이며, 중소기업의 비중이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상대적

161) 김동훈(2012), p. 120.

으로 훨씬 크기 때문이다.<sup>162)</sup> 본 연구의 표본선정기간은 1997년 10월 1일 이후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므로 1998년부터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유효법인세율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인 법인세 비용의 경우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1999년 이연법인세 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동 기간 이후의 법인세 비용 개념이 이전과 개념상 일치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1999년부터 2013년 동안을 연구대상 기간으로 하였다.

두번째,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조세지원제도가 벤처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기업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2013년 5월 기준 벤처기업 중 817개 기업에 대하여 조세제도의 활용 여부를 조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였다. 총 817개 기업에서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은 423개였으며, 조세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394개 기업이었다. 표본기간은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도입되기 전을 포함한 1990~2013년으로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본 실증분석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자료는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표본은 제외하였다. (1) 연구대상 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정책이나 재무제표의 양식 등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상이한 금융업, (2) 분석에 통일을 기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산이 12월 31일이 아닌 기업, (3) 분석을 위한 재무제표가 누락된 기업이다. 추가적으로 유효법인세율을 구하기 위한 표본에는 경제적 해석이 곤란하므로 법인세 비용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순이익이 0이거나 음수인 기업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표본 수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극단치로 인한 분석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변수의 상·하위 1%에 해당하는 표본의 값을 winsorization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162) 상계서, p. 120.

## 나. 분석방법 및 변수 측정

### 1) 유효법인세율

#### 가) 분석방법

유효법인세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기업유형별 유효법인세율의 차이 여부에 대해서는 T-test와 ANOVA분석을 하였다. 연도별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에 대한 ANOVA분석도 실시하였다.

#### 나) 유효법인세율의 개념과 측정

기업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기존의 조세정책의 평가나 새로운 조세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하여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회계연구자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유효법인세율은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sup>163)</sup>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유효법인세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용변수(proxy)를 이용해 왔으며, 유효법인세율의 정의는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이익의 비율을 말한다.<sup>164)</sup>

본 연구에서는 유효법인세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비용 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었다. 분자에 해당되는 법인세 부담액은 실제 재무자료에 기초하여 측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자료의 입수가 어려우므로 회계자료에 기초한 법인세 비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효법인세율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유효법인세율} = \frac{\text{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text{법인세 비용 차감전순이익}}$$

163) 이창우와 전규안(1997), p. 851

164) 상계서, p. 853

다) 우리나라 명목법인세율의 추이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구조는 <표 VI-1>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법인과 조합법인과 같은 법인 유형 및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1998년 이후에도 몇 차례의 변천과정이 있었다.

<표 VI-1> 우리나라 명목법인세율 변천과정

(단위: %)

구분			'98.1.1~	'02.1.1~	'05.1.1~
법인 세율	일반법인 <sup>1)</sup>	1억원 초과	28	27	25
		1억원 이하	16	15	13
	조합법인 <sup>2)</sup>	12	12	12	
원천징수세율 <sup>3)</sup>			22 <sup>4)</sup>	15	14

구분			'08.1.1~	'09.1.1~	'10.1.1~	'12.1.1~
법인 세율	일반법인 <sup>1)</sup>	200억원 초과	25	22	22	22
		200억원 이하				20
		2억원 이하	11	11	10	10
	조합법인 <sup>2)</sup>	12	9	9	9	
원천징수세율 <sup>3)</sup>			14	15	14	14

- 주: 1) 법인세 산출방식: (예) 과세표준 3억원일 때('09년의 경우)  
 $(2\text{억원} \times 11\%) + [(3\text{억원}-2\text{억원}) \times 22\%] = 44,000\text{천원}$
- 2) 조합법인(농협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수협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영업초생 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세 산출방식:  
 $(\text{당기순이익} + \text{기부금손금불산입액} + \text{적대비손금불산입액}) \times \text{세율}$
- 3) 원천징수란 소득(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액을 징수하여 매월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지급받은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 4) '00~'01.6월은 20%, '01.7~'01.12월은 15%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3, p. 85

1990년대 후반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하여 각각 16%, 28%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꾸준히 인하되어 2005년 이후로 각각 13%, 25%가 적용되었다. MB 정부는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

정하고, 세율도 수차례에 걸쳐서 인하하였다.<sup>165)</sup>

현행 법인세율은 2012년 이후부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바, 유망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세 중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신설하여,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10%, 2억원 초과 법인과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20%와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sup>166)</sup>

## 2) 기업의 성과

두번째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Asteriou and Hall(2007)과 Mayende(2013)에 근거하여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기초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Cobb-Douglas 생산함수에서 산출량(Q)은 자본(K), 노동(L), 그리고 그 외의 생산요소들로 인하여 결정된다.<sup>167)</sup> 그리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일반적인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검증모형을 설정하였다.

$$Q = AL^\alpha K^\beta T^Y Z^\phi \quad (1)$$

$Q_{it}$ : 산출량(output)

$L_{it}$ : 노동(labor)

$K_{it}$ : 자본(capital)

$T_{it}$ : 조세지원 여부를 나타내는 터미변수(tax incentive)

$Z_{it}$ : 기업특성변수 벡터(firm specific variables)

본 연구에서는 산출량(Q)으로 매출액(Sale)과 부가가치(Value\_added)를

165)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omment/comment\\_law\\_jomun\\_explain.jsp](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omment/comment_law_jomun_explain.jsp), 2015.02.23. 접속

166)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omment/comment\\_law\\_jomun\\_explain.jsp](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omment/comment_law_jomun_explain.jsp), 2015.02.23. 접속

167) 지성권 외(2011), p. 371

사용하였으며, 자본생산요소(K)는 자본집약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유형자산 금액을 이용하였다.<sup>168)</sup> 노동생산요소(L)는 노동집약도로서 해당 기업의 종업원 수를 사용하였다. 조세지원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1)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적용받은 적이 있는 기업과 (2)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식 (1)으로부터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를 취하여 다음과 같은 식 (2)를 도출하였다.

$$\ln Q = C_o + \alpha \ln L + \beta \ln K + \gamma T + \phi Z + \eta_i + \epsilon \quad (2)$$

〈표 VI-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정의
종속변수	Log_sale	log(매출액)
	Log_Value_added	log(부가가치)
설명변수	Log_Labor	log(종업원 수)
	Log_Capital	log(유형자산)
	Tax Incentive	조세지원을 하나라도 받은 적이 있는 기업 1, 그렇지 않은 경우 0
	Tax Incentive1	법인세 감면을 받은 기업 1, 그렇지 않은 경우 0
	Venture_Policy	벤처기업 육성 정책 도입 후인 1999년 이후는 1, 이전은 0
기업특성변수	Age	기업연령
산업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한편, 벤처기업의 성과는 분석되지 않는 패널개체 특성변수( $\eta_i$ )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효과(Fixed Effects)모형 또는 확률효과(Random Effects) 모형으로 추정될 수 있다. 만약, 설명변수들과 패널개체 특성( $\eta_i$ )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률효과모형을 채택하게 되며, 설명변수들과 패널개체 특성( $\eta_i$ ) 간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을 채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168) 지성권 외(2011), p. 371

하고자 할 경우에는 Hausman Test를 통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s)모형 또는 확률효과(Random Effects)모형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sup>169)</sup>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Hausman Test 결과에 근거하여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 3. 실증분석 결과

#### 가. 기술통계량

〈표 VI-3〉에는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와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 유효법인세율의 평균값은 벤처기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 기술통계량

Panel A: 유효법인세율

	기업유형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유효법인세율	벤처기업	1,062	16.00	9.06	0.47	50.53
	중소기업	2,416	20.33	9.70	1.56	62.04
	대기업	2,950	22.23	9.94	1.46	61.77
	합계	6,428	20.49	9.95	0.47	62.04

Panel B: 기업 성과분석 변수

변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og_Sale	1,876	23.09	1.14	19.31	25.40
Log_Value_added	1,837	21.61	1.03	18.72	23.78
Log_Capital	1,749	20.90	1.82	13.39	23.87
Log_Labor	1,876	20.10	1.05	16.93	22.13
Age	1,871	12.82	6.84	2.00	45.00

한편, 〈표 VI-4〉는 기업의 성과 분석 시 사용되는 종속변수인 매출액과 부가가치와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과

169) 민인식과 최필선(2012), pp. 174~180.

부가가치는 대부분의 설명변수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VI-4〉 상관관계분석

변수	Log_Sale	Log_Capital	Log_Labor	Age
Log_Sale	1.0000			
Log_Capital	0.2073***	1.0000		
Log_Labor	0.2860***	0.4147***	1.0000	
Age	0.1144***	0.0639***	0.0595***	1.0000

변수	Log_Value_added	Log_Capital	Log_Labor	Age
Log_Value_added	1.0000			
Log_Capital	0.5268***	1.0000		
Log_Labor	0.8013***	0.4147***	1.0000	
Age	0.0802***	0.0639***	0.0595***	1.0000

## 나. 분석결과

### 1) 유효법인세율의 차이

#### 가) 연도별 유효법인세율

〈표 VI-5〉와 〈그림 VI-1〉은 1999~2013년까지 연도별 유효법인세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2011년 이후로는 20%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유효법인세율은 2008년 22.3%에서 2009년에 17.7%로 4.7%p 크게 하락한 바, 이는 Business Friendly 정책을 표방한 MB 정부가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표준 기준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율도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로 인하한 데 기인한다.<sup>170)</sup>

170) 2005.1.1.~2007.12.31에는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표 VI-5〉 연도별 평균 유효법인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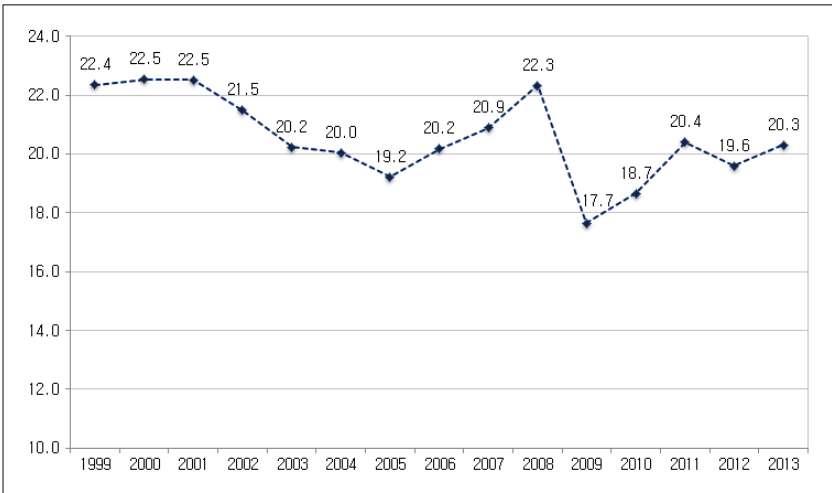
(단위: %)

연도	평균 유효법인세율	ANOVA(F값)
1999	22.4	8.99***
2000	22.5	
2001	22.5	
2002	21.5	
2003	20.2	
2004	20.0	
2005	19.2	
2006	20.2	
2007	20.9	
2008	22.3	
2009	17.7	
2010	18.7	
2011	20.4	
2012	19.6	
2013	20.3	

주: 1. 유효법인세율=법인세 비용/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 \*\*\*:1%의 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증)

〔그림 VI-1〕 연도별 평균 유효법인세율 추이

(단위: %)



나) 벤처기업과 비벤처기업 간의 유효법인세율의 차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닥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중소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유효법인세율(=법인세 비용/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의 차이여부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여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표 VI-6>은 기업 그룹별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1999~2000년까지 기업그룹별 유효법인세율은 벤처기업 < 비벤처중소기업 < 비벤처대기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과 비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편, ANOVA 분석결과에서도 기업유형별 유효법인세율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6> 벤처기업과 비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 차이 검증결과

기간	구분	표본 수	평균	t-값	ANOVA(F-값)
1999~2013	벤처기업	1,062	16.00	-16.4242***	161.25***
	비벤처기업	5,366	21.38		
	벤처기업	1,062	16.00	-12.3789***	
	중소기업	2,416	20.33		
	벤처기업	1,062	16.00	-17.9202***	
	대기업	2,950	22.23		

주: 1. 유효법인세율 = 법인세 비용/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 \*\*\*: p<0.01, \*\*: p<0.05, \*: p<0.1. 양측검정

2)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칼럼은 조세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이며, 두 번째와 네 번째 칼럼은 법인세 50% 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으로 구분된다. <표 VI-7>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본과 노동은 기업 성과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즉, 자본 및 노동이 1%p 증가 시 매출액이 각각 0.0296%p, 0.887%p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기업성과가 0.393%p 증가하였으며, 법인세 50%를 감면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0.234%p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1% 유의수준에서 모형에 관계없이 기업성과에 대하여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7〉 조세지원제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독립변수	Model 1(Log_Sale)		Model 2(Log_Value_added)	
	(1)	(2)	(1)	(2)
상수	15.68*** [0.669]	15.85*** [0.668]	13.40*** [0.653]	13.50*** [0.651]
Log_Capital	0.0282** [0.0134]	0.0296** [0.0134]	0.290*** [0.0135]	0.292*** [0.0135]
Log_Labor	0.883*** [0.0301]	0.887*** [0.0301]	0.0888*** [0.0295]	0.0909*** [0.0295]
Tax_Incentive	0.393*** [0.119]	- -	0.291*** [0.100]	- -
Tax_Incentive1	- -	0.234** [0.103]	- -	0.209** [0.0858]
Venture_Policy	2.580*** [0.488]	2.566*** [0.488]	1.682*** [0.505]	1.665*** [0.506]
Age	0.0140* [0.00850]	0.0038 [0.00743]	0.0108 [0.00718]	0.00455 [0.00620]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산업더미	Yes	Yes	Yes	Yes
관측 수	1,871	1,871	1,832	1,832
기업 수	259	259	259	259

주: 1. 〈표 VI-7〉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참조.  
 2. [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 4. 요약 및 시사점

제Ⅶ장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기업의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을 다른 기업의 세율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효법인세율(=법인세 비용/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의 차이 여부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비벤처기업(중소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T-test 및 ANOVA 분석을 한 결과, 그룹별 유효법인세율의 크기는 벤처기업 < 비벤처 중소기업 < 비벤처대기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모형에 관계없이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는바,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기업성과가 약 0.2~0.4%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71)</sup>

본 연구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여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171) 본 분석의 표본은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를 기초로 하여 선정되었음

---

## Ⅶ.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

### 1. 벤처산업 조세지원의 타당성<sup>172)</sup>

정부는 1997년 8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금융, 세제상 혜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주장하는 이유로 ‘시장실패로 인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정부 지원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업초기 벤처기업들은 기술력과 경영성과를 검증받기 이전 단계이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투자가 사회적 최적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금융시장의 위험회피적 성향은 벤처기업의 신기술이 상업화되기 이전 단계에는 기술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 사업 실패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사업성을 인정받아 리스크가 낮은 안전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sup>173)</sup>. 둘째, “기업가는 상품과 생산과정의 특성에 대하여 잠재적인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한다.<sup>174)</sup> 이러한 벤처기업의 특징들은

---

172) 김진수·김재진(2002), pp. 34~37, 김재진(2013), pp. 25~26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하되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평가한 본 보고서의 V장과 VI을 추가함

173) 김진수·김재진(2000), 김진수·김재진(2002), p. 35 재인용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의 수익을 사회적 수익보다 낮게 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이익을 저하시키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가장 큰 정책목표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와 성장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제로 정부로부터 조세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유효법인세율 및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은 조세지원제도라고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있다’라는 응답이 벤처기업 77.7%, 벤처캐피탈 73.9%로 나타났다. 둘째,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실효성이 낮은 제도 폐지, 실효성이 높은 지원내용 강화’가 각각 56.2%, 60.9%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자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유효법인세율의 크기를 1999~2013년 동안 6,42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T-test 및 분산분석(ANOVA)을 한 결과, 벤처기업이 16.0%로 비벤처 중소기업 20.3%, 비벤처 대기업 22.2%에 비해 유의하게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기업성과가 조세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약 0.2~0.4%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그 정책적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74) OEDE(2004), 손동원(2006), p. 10 재인용

## 2.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sup>175)</sup>

1997년 8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로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최적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혁신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성과를 검증받지 못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창업초기 단계의 자본조달은 금융위기 이후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바, 금융권에서는 창업초기단계의 혁신기업에 대한 리스크로 인하여 대출을 기피하고, 벤처캐피탈사들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기 단계의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OECD 주요국에서도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모색하여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자금조달 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바, 주요 수단으로는 조세지원, 규제완화 등이 있다.<sup>176)</sup>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혜택은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되고 있는 세제상 혜택은 크게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과 벤처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엔젤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그리고 벤처캐피탈 투자자에 대한 간접적인 조세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특징은 주로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중점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제도는 일정한 자격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부가하여 추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수준이 미미한 것은 아니다.

OECD(2013)의 연구결과<sup>177)</sup>에 따르면, 주요 회원국들에서도 벤처기업에

175) 김진수·김재진(2000), pp. 269~271, 김재진(2013), pp. 51~53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176) 김재진(2013), p. 52

177) OECD(2013b), p. 16, 김재진(2013), pp. 52~53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하였음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보다는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접적인 조세지원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32개의 OECD 회원국들 중 창업초기단계의 혁신기업(Young Innovative Company)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 및 사회부담금 감면 등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9개국에 불과하였다. 반면, 대다수의 국가들이 창업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고할 목적으로 벤처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조세지원 유형을 살펴보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tax deduction)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은 조사에 참여한 OECD 32개국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일랜드,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터키 등 15개국으로 나타나,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을 위한 주요 조세지원유형은 소득공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투자 및 재투자를 제고시킬 목적으로 주식 매각으로 인한 자본이득 및 손실(capital gains and losses)의 과세이연(carry forward) 및 손실상계와 같은 조세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조사에 참여한 OECD 32개국 중 덴마크, 이스라엘,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12개국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혁신기업(Young Innovative Company)에 대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초기단계의 벤처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였다. 최근 5년간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포함하여 세제상으로 혜택을 확대한 OECD 회원국들은 조사대상 32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일본 5개국으로 나타났다.

김재진과 김진수(2002)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성장 잠재력이 없는 벤처기업을 무분별하게 양산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조세정책 방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비롯하여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78)</sup>고 언급하고 있는바, 이는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이 향후에도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크게 투자 및 회수, 그리고 재투자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바, 세제상 혜택도 투자단계별 특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벤처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동력 확보 및 벤처기업의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함과 더불어 고용을 창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선택과 집중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기본 정책방향은 “투자의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기술 및 혁신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벤처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sup>179)</sup> 하지만 벤처캐피탈은 투자자금의 회수가 중요하므로 기술력만 있는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부담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이 기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력만을 가진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은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아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정책금융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벤처투자가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은 대상기업의 도덕적 해이

178) 김재진·김진수(2002), p. 267

179) 김재진(2013), p. 51

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지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15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정여건이나 벤처산업 육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를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의 지원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모두 각각 56.2%, 60.9%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자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바, 이러한 결과는 재정적인 여건과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실효성 있는 제도 위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이 있는 조세지원제도는 보다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및 세수여건을 감안하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세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유효법인세율 및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효과를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가. 실효성 없는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 및 세수여건에서 보듯이, 과세당국이 원하던 수준보다 정보 제공의 범위가 크게 축소되어 통과된 FIU법과 최근 3년간의 세수 결손을 감안할 때, 공약가계부상의 공약이행재원 134.8조원 가운데 약 36%인 48조원을 5년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는 계획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후 세율을 인상하거나 국채 발행

을 검토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현 세대를 비롯하여 미래 세대까지 세율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다.<sup>180)</sup> 즉,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미래세대는 국채상환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고, 현재세대는 국채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없이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방안으로 당초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15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정여건이나 벤처산업육성 측면에서 실효성 없는 지원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벤처자금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여 벤처투자자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 없는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 일몰이 적용되는 제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그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재설계하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세감면제도 중 44.0%(총 29.8조원 중 13.1조원)에 일몰기한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일몰이 종료되는 경우는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으로 쉽지 않다.<sup>181)</sup>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8〉 참조)

둘째,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이해당사자의 수요에 근거(〈표 VII-1〉와 〈표 VII-2〉 참조)하되, 조세지원제도와 함은 국민경제적 효과, 타산업과의 연계성까지 검증해야 하므로 사전·사후적

180) 김재진(2014), p. 4

181) 전병목 외, 「조세지출 사전·사후 관리 개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자료, 2014, p. 5

인 타당성 검증·평가절차 등을 마련하여 그 효과를 면밀히 검증한 후 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높은 조세지원 제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위 3개의 항목을 선택 시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점수를 부여하여 상대적인 가중치를 두어 측정하였다.

〈표 VII-1〉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인지·활용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순위)

조세지원 항목	인지 및 활용 여부		실효성이 높은 제도	폐지해야 할 제도
	인지	활용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1	1	1	13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감면	2	2	2	11
재산세 50% 감면	4	4	3	12
농어촌특별세 100% 감면	5	5	4	9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9	8	5	4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 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8	10	6	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2	12	7	1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 시 과세이연	13	13	9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0	9	8	6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대한 과세특례	6	6	10	10
벤처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1	7	11	5
소득세 비과세(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3	12	8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	7	11	13	2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이 낮아 폐지해야 할 제도로는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10.5%),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10.2%)의 순이었다. 동 제도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라는 자금의 선순환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중간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M&A를 통한 회수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태조사의 응답자별 특성에서도 대부분의 기업이 인수합병이나 기업매각 경험이 없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인수 및 합병, 기업매각 시의 조세지원제도의 인지 및 활용도가 저조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도입되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저조하고 아직 실효성이 미미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의 수요에 근거하므로 현실을 잘 반영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에 한계도 있어, 조세지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타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사와 사후 심층평가를 통하여 반드시 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벤처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제도는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여 벤처기업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표 VII-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인지·활용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순위)

조세지원 항목	인지 및 활용여부		실효성이 높은 제도	폐지해야 할 제도
	인지	활용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1	2	-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4	3	1	-
중소기업 창투자 등의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2	4	5	-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4	4	-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	5	5	6	-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특례	6	5	8	2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7	5	7	3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3	2	3	1

#### 나. 실효성 있는 제도 지원 강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재정적인 여건과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실효성 있는 제도 위주로 개편하되, 벤처산업 지원 차원에서 조세지원제도의 지원요건 및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1) 벤처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적인 성향과 벤처투자자금의 회수 기회 부족으로 인하여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단계와 인수·합병 단계로 구분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벤처기업 창업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개시일 이후 5년 내에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50%를 감면하며, 창업일로부터 4년간 취·등록세, 2년간 인지세는 전액 면제하고 있다.<sup>182)</sup>

그러나 동 제도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이를 일반 벤처기업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1999년 이후부터 창업 후 3년 이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동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밑거름이 되어 창업하는 중소·벤처기업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의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VI장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기업성과가 약 0.2~0.4%p 높게 나타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7〉 참조). 그리고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에서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응답기준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가 85.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sup>183)</sup>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18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6조 제1항 제19호, 제119조 제2항, 제120조 제3항, 제121조

183) 1+2+3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95.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71.6%), ‘재산세 감면’(55.9%), ‘연구활동 직접종사자의 연구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점수 기준으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48.4점으로 다른 제도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21.0점), ‘재산세 감면’(12.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있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도 1순위 기준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79.8%로 가장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V장의 실태조사와 제VI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의 확대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판단된다.

다만, 일반 벤처기업에게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성장잠재력이 없는 벤처기업의 양산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성 및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서는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1998년 이후로 벤처기업확인제도<sup>184)</sup>를 시행하고 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초기단계에 인적·물적으로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하에서는 일반 벤처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성장잠재력이 없는 벤처기업까지 무분별하게 지원이 이루어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 2)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은 일반적으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본력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벤처기업에 자금을 비롯하여 경영, 기술지도, 컨설팅 등을 중

184)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으로 제도개편이 단행되었음. 자금시장에서 실제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사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함

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sup>185)</sup> 즉, “벤처캐피탈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자금의 공급을 꺼려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사업실패 시 개인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높은 수익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기술 사업에 용이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준다”는 측면에서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는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화에 중요한 요소이다.<sup>186)</sup> 따라서 벤처캐피탈의 투자 베이스를 확충하여 벤처투자가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수준에 미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1) 전문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혜택 확대와 재투자 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 도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전문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혜택 확대<sup>187)</sup>

창업초기의 벤처기업들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적 역량과 성과를 검증받지 못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벤처캐피탈 투자자 중 엔젤은 벤처기업의 초기 자금조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고,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엔젤투자자의 투자위험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2011년 이후로 확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50%<sup>188)</sup>까지 확대하

185) 김재진(2013), p. 36

186) 김진수·김재진(2000), p. 272

187) 김진수(2011), pp. 21~22, 김재진(2013), pp. 63~64를 참조하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1) 벤처기업 817개, 벤처캐피탈 23개를 대상으로 온라인조사·전화조사·면접조사의 방법으로 2014년 7월부터 2개월에 걸쳐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초로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임

188) 「조세특례제한법」상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비율 변천과정: (97.12.) 20% → (99.9) 30% → (02.1) 15% → (07.1) 10% → (11.12) 20% → (13.1) 30% → (현재) 5천만

였고, 투자대상도 기존에는 벤처기업에 한하였으나,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엔젤투자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및 투자조합의 엔젤투자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공제종합한도인 2,50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박유리 외(2012)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이윤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경험이 있는 엔젤투자자가 증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89)</sup>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엔젤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14년 7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sup>190)</sup>

따라서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 엔젤투자자 중 적정요건<sup>191)</sup>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엔젤이라 하더라도 투자위험이 매우 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전문엔젤투자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엔젤투자자에 비해서는 투자규모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문엔젤투자자들에 대한 조세지원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조세지원은 그 실효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제도 중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성공한 벤처인 등이 중심이 되는 ‘전문엔젤투자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도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

---

원 이하 시 50%, 5천만원 초과 시 30%

189) 박유리·전성주·주재욱(2012), p. 20

19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191) 전문엔젤이 되기 위한 요건은 (1) 최근 3년 동안 신주 또는 지분 투자의 형태로 1억 원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을 것, (2) 창업기업을 멘토링할 수 있는 상장법인의 창업자 또는 2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등의 경력요건을 갖추어 것임. 전문엔젤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동기간 경과 시 투자실적 등 요건을 다시 확인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란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 시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 출자 또는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단, 해당 연도의 공제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50%<sup>192)</sup>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한도를 두었고, 3년 이내 출자 지분 등을 이전·회수 시 추정하는 의무보유기한을 두고 있다.<sup>193)</sup>

본 보고서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음의 세제상 혜택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행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둘째,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우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으로, (1)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과세 연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거나 (2) 소득공제할 수 있는 과세 연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나)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 도입<sup>194)</sup>

최근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은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의 벤처자금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여 자금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투자

192)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변천과정: (2001년) 50% → (2008년) 30% → (2011) 40% → (현재) 50%

19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194) 김진수(2011), pp. 21~22, 김재진(2013), pp. 63~64를 참조하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1) 벤처기업 817개, 벤처캐피탈 23개를 대상으로 온라인조사·전화조사·면접조사의 방법으로 2014년 7월부터 2개월에 걸쳐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초로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임

자금 회수시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벤처투자자금 중간회수 시장인 기업공개(IPO)가 국내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의 정체로 2012년 기준 평균 소요기간이 12.2년이 걸리고 있고,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수 추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기업 수는 2000년 178개에서 2013년에는 37개로 급감하기도 하였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창업 및 초기단계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에 기존의 투자가 재투자됨으로써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서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세제상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sup>195)</sup>

따라서 벤처자금의 재투자를 통하여 창업 및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벤처기업 및 투자조합 출자 재투자 시 자본이득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법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sup>196)</sup>

벤처투자 시 자금조달 유형에 따라 다양한 세제상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3년 이내로 보유한 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처분이익을 3년 이내에 EIS<sup>197)</sup> 적격기업의 발행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제율과 투자액 한도는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개인투자자가 적격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시 투자금액의 30%를 투자금액의 최대 100만파운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sup>198)</sup>

19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조

196)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동 방안을 포함하였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서 벤처기업 출자금 소득공제제도의 일몰 연장으로 인하여 채택되지 아니하였음(김진수 (2011), p. 21)

197)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비상장 적격기업(Qualifying Company)이 발행한 신규주식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으로, 적격투자자(Qualifying Individual)가 적격기업이 발행한 적격주식(Qualifying Shares)에 투자 시 적용되는 제도로 1994년에 도입됨

다만, 개인투자자가 투자 후 3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기한 내에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한 이후 다른 벤처기업 주식에 일정 규모 이상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조건 위반 시에는 이를 추정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은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활성화하여 자금조달과 투자, 회수 그리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자금의 선순환구조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98) EIS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변천과정

회계연도	투자액 한도	소득공제율
1997-1998	10만파운드	20%
1998-1999	15만파운드	20%
2004-2005	20만파운드	20%
2006-2007	40만파운드	20%
2008-2009	50만파운드	20%
2011-2012	50만파운드	30%
2012-2013	100만파운드	30%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86140/141126\\_NS\\_EIS\\_SEIS\\_Intro\\_Note\\_FIN.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86140/141126_NS_EIS_SEIS_Intro_Note_FIN.pdf), 2014.06.14. 접속

---

## VIII. 요약 및 결론

---

벤처기업은 “위험은 높으나 성공 시 기대수익이 큰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생 중소기업”<sup>199)</sup>으로서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쉽게 회수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자금의 선순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처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현황 및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및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실증분석하여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는 2013년에 29,135개가 되었다. 2000년 8,798개에서 연평균 약 19.4%씩 증가하여, 벤처캐피탈 신규투자금액과 투자잔액은 2013년 기준으로 각각 1조 3,845억원, 4조 4,673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초기 및 중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8년 이후로 7년을 초과하는 후기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4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하여 자금조달이 가장 필요한 초기단계에 오히려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회수

---

199) 김진수·김재진(2000), p. 186, 김재진(2013), p. 13

시장을 살펴보면, 2013년 벤처캐피탈의 회수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수유형은 49.8%인 장외매각 및 상환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공개(IPO)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유형은 2008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2년 기준 16.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 수는 2013년 기준으로 신규 기업공개(IPO) 기업 수 37개 중 17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 수가 벤처기업 기업공개(IPO) 수 23개 가운데 95.7%인 22개로 나타났다.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이르러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창업단계 및 인수·합병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은 크게 벤처캐피탈의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투자 및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구분되어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지원요건 충족 시 추가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적용하고 있어 외국과 비교하여 미흡한 수준은 아니다. 한편,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투자, 보유, 처분 단계별로 더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817개사, 벤처캐피탈 23개사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는 74.7%가 조세지원제도라고 응답하였으

며,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77.7%, 73.9%로 높게 나타났다.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가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완화’가 1순위 기준 32.2%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벤처캐피탈의 경우에는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로 나타났으며,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제도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모두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의 지원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존 수혜업체 조차도 기존제도 유지하여 추가적으로 새로운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것보다 실효성 없는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기업의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유효법인세율의 크기를 1999~2013년 동안 6,42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T-test 및 분산분석(ANOVA)을 한 결과, 그룹별 유효법인세율의 크기는 벤처기업 < 비벤처중소기업 < 비벤처대기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기업성고가 조세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약 0.2~0.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당성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적 성향과 벤처투자자금 회수기회의 부족이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여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시장실패”<sup>200)</sup>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은 고용창출 및 장기성장을

200) 김진수·김재진(2000), pp. 34-37 참조

위한 기술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OECD(1996)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sup>201)</sup>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라는 벤처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자본시장으로의 접근 기회가 제한적인 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벤처자금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여 벤처투자자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방향은 재정 여건이나 벤처산업 육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벤처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등의 제도를 강화하거나 벤처투자자의 투자이익 과세이연제도 등의 제도를 신설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가장 큰 공헌점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첫째, VENTUREIN(벤처인)에서 공시한 2014년 5월 말 기준 벤처기업 명단 약 25,000개와 NICE 신용정보(주)의 KIS-VALUE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명단 중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수작업으로 대조하여 명단을 구축하였으며, 이 중 벤처기업 817개, 벤처캐피탈 23개를 대상으로 온라인조사·전화조사·면접 조사의 방법으로 2014년 7월부터 2개월에 걸쳐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이 향후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책 방향 결정 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당국은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방향을 설계 시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국민적

---

201) OECD(1996), p. 4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_\_\_\_\_, 『2013 조세개요』, 2013. 8.
- 김대근·이귀선, 「코스닥등록법인의 조세혜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5권, 2002.
- 김동훈,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2권 제1호, 2012. 1.
- 김영수, 『미국세법』, 2014.
- 김재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_\_\_\_\_, 『세수 측면으로 본 재정건전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김재진·김진수, 『벤처캐피탈 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0.  
\_\_\_\_\_,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 김진수,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1.
- 김진수·김재진,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12.
- 남장근,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원 확충방안-주요국의 경험을 토대로-』, 산업연구원, 1998.
- 민인식과 최필선, 『패널데이터 분석』, (주) 지필미디어, 2012.
- 박유리·전성주·주재욱, 「ICT 벤처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KISDI Premium Repor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3년 제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_\_\_\_\_,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4년 제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손동원 외, 『벤처정책의 성과평가 및 향후 방향』, 인하대학교, 2006.
- 손원익, 『조세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대책』,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손원익 외, 『주요국의 연구개발(R&D) 조세지원 대상 비용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이형수·김갑순, 「내제적 조세를 이용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분석」, 『조세연구』, 제10권 제3집, 2010.
- 이창우·전규안, 「조세부담측정치로서의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영학연구』, 제26권 제4호, 1997. 11.
- 서병우·문승권,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및 정책적 개선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2권 제2집, 2014.
- 송치승·박재필,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분석」, 『기업경영연구』, 제20권 제5호, 2013. 10
- 신영임·이영환,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0.
- 원종학, 『일본의 벤처기업 투자(엔젤투자) 촉진 세제지원 방안에 관한 자료 수집』, 2010.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I)』,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전병목 외, 「조세지출 사전·사후 관리 개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자료, 2014.
- 정운오·노희천,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암묵적 조세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대학교 경영론집』,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제37권 제 4 호, 2003.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본격적인 엔젤투자의 시대가 열린다』, 2012. 12. 10.
- 지성권 외, 「중업원 재량권과 성과보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37집, 2011.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Newsletter』, Vol. 87, 2014. 10.
- KOTRA, 『한국·싱가포르·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각국 투자유치기관, 인센티브 제도 및 투자환경 비교』, 2006.
-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일본, 벤처기업 등 개업 촉진지원책 마련」, 2014. 5. 13.
- Asteriou, D. & Hall, S. G.(Eds.), Applied Econometrics, New York, NY: Macmillian Publishers Limited., 2007.
- Da Rin, D., G. Nicodano and A. Sembenelli, “Public Policy and the Creation of Active Venture Capital Marke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0, 2006, pp. 1699~723.
- Ernst & Young, “Outline of Tax Reforms to Stimulate Investment,” Japan Tax newsletter, October 31, 2013.
- HMRC, “Venture Capital Trusts Statistics,” Table 8.6, Official Statistics release IRS, 2014 Instructions for Form 1120: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2014.
- Kerr, W.R., J. Lerner and A. Schoar, “The Consequences of Entrepreneurial Finance: A Regression Discontinuity Analysis,” Harvard Business School Entrepreneurial Management Working Paper No. 10-086, 2010.
- Levenfeld, Platt & Romem, “Israel, Country Q&A,” Private Equity 2009 Volume 2: Venture Capital, Cross-Border Handbooks, 2009.
- Library of Congress, Taiwan: Law on Industrial Innovation Adopted in Place of Expired Statute for Upgrading Industries, Apr 22, 2010.
- Mason, C., “Public Policy Support for the Informal Venture Capital Market in Europe: A Critical Review,”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27, 2009.
- Mayende, “The Effects of Tax Incentives on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Uganda,” Journal of Politics and Law, Vol. 6, No. 4, 2013.

Ministry of Economy of the State of Israel, "Taxation Benefits for Foreign Investors in Israeli Investment Funds," 2012.

NVCA, Venture Impact: The Economic Importance of Venture Capital-Backed Companies to the U.S. Economy, 2011.

OECD, Venture Capital and Innovation, 1996.

\_\_\_\_\_,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2.

\_\_\_\_\_, OECD Work on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2013-14, 2013a.

\_\_\_\_\_, Policies for Seed and Early Stage Finance: Summary of the 2012 OECD Financing Questionnaire, 2013b.

\_\_\_\_\_, Venture Capital: Trends and Policy Recommendation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Publishing, 2004.

PwC, Innovation: Government's Many Roles in Fostering Innovation, 2010.

Reuters, T., MoneyTree™ Report, PWC, 2014.

Wilkie, P., "Empirical Evidence of Implicit Taxes in the Corporate Sector",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92.

벤처기업협회, <http://www.venture.or.kr>

벤처확인 · 공시시스템 벤처인, <https://www.venturein.or.kr>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http://www.kvca.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http://www.mosf.go.kr/\\_bbs/rss.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93  
&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7&hdnDiv=185&&actionType=view&runno=59461&hdnTopicDate=2005-10-06&hdnPage=39](http://www.mosf.go.kr/_bbs/rss.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93&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7&hdnDiv=185&&actionType=view&runno=59461&hdnTopicDate=2005-10-06&hdnPage=39)

<http://www.investinisrael.gov.il/NR/exeres/3405B5DE-829B-4F0B-A70D-A48F88080067.htm>

<http://www.investinisrael.gov.il/NR/exeres/3405B5DE-829B-4F0B-A70D-A48F>

88080067.htm

<http://www.israelbusiness.org.il/financialassistance/investmentincentives>

[http://www.ivc-online.com/language/en-US/Research\\_Center/IVC\\_Publications/VC\\_Fund\\_Reports/VC\\_Fund\\_Raising.aspx](http://www.ivc-online.com/language/en-US/Research_Center/IVC_Publications/VC_Fund_Reports/VC_Fund_Raising.aspx)

<http://asialawprofiles.com/Guide/489/Taiwan-legislation-guide.html>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1205401939\\_text](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1205401939_text)

<http://www.wantchinatimes.com/UploadFiles/Taiwan's%20Statute%20for%20Industrial%20innovation.pdf>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5454](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5454)

<http://www.magma.co.uk/seis-government-statistics>

<http://www.magma.co.uk/seed-enterprise-investment-scheme-introduction>

[http://www.nvca.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44&Itemid=103](http://www.nvca.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44&Itemid=103)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hmrc.gov.uk/statistics/vct.htm#1>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56400/eis-intro.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56400/eis-intro.pdf)

# 부 록: 질문지



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 3702-2100, 팩스 (02. 3702-2121), 한국갤럽홈페이지 www.gallup.co.kr, 관리메일주소 panel.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KOREA**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Gallup 2014-162-009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조사\_벤처기업

ID AI-4

--	--	--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향후 벤처산업의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해 급번 조사에서 꼭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사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귀사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우리나라의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제출해 주신 자료는 반드시 조사와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되며, 귀사의 비밀은 철저히 보정됨을 약속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7월-8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박무익  
 남남면연구원 박수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191  
 팩스 02-732-6279

■ 지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 성 별 :	1. 남자	2. 여자	■ 연 령 :	만 _____세		
■ 직 위 :	1. 대표		2. 임원/부사장		■ 현 직장경력 :	
	3. 중간관리(직을 갖: _____)		4. 기타(직을 갖: _____)		_____년 _____개월	

**● 응답해 주실 때 꼭 지켜 주십시오 ●**

1. 응답은 귀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응답을 할 수 있는 대표이사나 회계담당자(임원 및 관리자(과장급 이상)께서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계 관련 담당자(임원 및 관리자)이 아닌신 경우 담당자분께 조사표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3. 귀사의 실태 파악이 목적이므로 응답을 귀사 기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3) 귀사의 창업연도는 언제이며, 벤처기업 최초 확인연도는 언제입니까?

구 분	항 목
문1-3-1) 창업연도	_____ 년
문1-3-2) 벤처기업 최초확인연도	_____ 년

문1-4) 귀사의 벤처기업 확인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2014년 현재)

1. 벤처투자기업(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연구개발기업(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
4. 기술평가대출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5. 예비벤처기업(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문1-5) 귀사는 코스닥(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까?

1. 상장      →
2. 비상장   →

**(문1-5)에서 2번 응답자만**

문1-5-1) 귀사는 현재 코스닥(거래소) 상장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1.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2. 고려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3.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4. 이미 추진 중에 있다

문1-6) 귀사는 인수합병(M&A)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1. 인수합병 경험
- 2. 피인수합병 경험
- 3. 경험없음

**(문1-6)에서 3번 응답자만**

문1-6-1) 귀사는 현재 타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2. 고려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 3.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 4. 이미 추진 중에 있다

문1-7) 귀사는 현재 자사 기업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2. 고려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 3.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 4. 이미 추진 중에 있다

문1-8) 귀사는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1-9) 귀사는 벤처캐피탈(투자조합 포함)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1-9)에서 1번 응답자만**

문1-9-1) 귀사에 투자한 벤처캐피탈(투자조합포함)은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 1. 자금투자 외에는 경영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 등 거의 역할이 없었다.
- 2. 자금투자 외에 벤처기업 경영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였다.
- 3. 기타( )

문1-10) 귀사의 자본금과 연간 매출액 및 종업원 규모는 어떠합니까?(2013년 말 기준)

구 분	항 목
문1-10-1)	
자본금	_____ 억원
문1-10-2)	
연간매출액	_____ 억원
문1-10-3)	
종업원	_____ 명

다음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실태"에 대해 어쨌습니까.

문2) 귀사는 다음과 같은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오늘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또한 다음과 같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각각의 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와 활용여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여부는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분항 모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체별	조세지원제도	문2-1)인지여부		문2-2)활용여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벤처기업	1.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	2	1	2
	2.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20조 제3항)	1	2	1	2
	3. 재산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1	2	1	2
	4. 동이존특별세 100% 감면(동이존특별세법 제4조 제3호)	1	2	1	2
	5.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1	2	1	2
	6.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1	2	1	2
	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시행령 제43조의7)	1	2	1	2
	8. 기업매각 자금으로 인정기간 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시행령 제43조의8)	1	2	1	2
	9.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제12조의4, 시행령 제11조의3, 제11조의4)	1	2	1	2
	10.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1	2	1	2
	11. 벤처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1	2	1	2
	12. 소득세 비과세(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1	2	1	2
	13. 벤처기업 소득유선 행사의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1	2	1	2
벤처캐피탈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	1	2	X	
	1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과외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1	2		
	1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4항)	1	2		
	17.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1	2		
	18.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1	2		
	19.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1	2		
	20.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	1	2		
	21.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1	2		

문3) 귀사는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그런 편이다
-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3)에서 1, 2번 응답자만**

문3-1) 그렇다면, 귀사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누구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까?

- 1.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 2. 회사 내 세무전문 인력
- 3. 세무서
- 4. 정부부처(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 5. 동종업체
- 6.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7. 신문·잡지·방송·인터넷
- 8. 협회 등 경제단체
- 9. 기타(적용 것 : \_\_\_\_\_)

**(문3)에서 3, 4번 응답자만**

문3-2) 그렇다면, 귀사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지원 대상이 아님
- 2.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지원제도가 있는지 잘 모름
- 3.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려움
- 4. 지원내용이 미흡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용하지 않음
- 5. 기타(적용 것 : \_\_\_\_\_)

**다음은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어쨌겠습니까.**

문4) 귀사의 활용여부와는 상관없이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시고,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해당 순위에 점수를 입력해주시시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b>보기항목 번호</b>				<del>X</del>
<b>점수(점)</b>				<b>100</b>

- 1.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2.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감면
- 3. 재산세 50% 감면
- 4. 농어촌특별세 100% 감면
- 5.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6.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8.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제투자시 과세이연
- 9.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10.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1. 벤처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12. 소득세 비과세(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1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



**(문7)에서 1번 응답지만)**

문7-1) 그렇다면, 귀사는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이 낮아 폐지해야 할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문4, 문6에서 선택한 보기항목은 제외하고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2.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감면
3. 재산세 50% 감면
4. 농어촌특별세 100% 감면
5.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6.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8.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9.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0. 벤처기업직접시설 등에 대한 과세특례
11. 벤처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2. 소득세 비과세(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
99. 없다

**(문7)에서 1번 응답지만)**

문7-2) 그렇다면, 귀사는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

1. 자격요건 완화
2.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3.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4. 감면율 확대
5. 감면기간 확대
6. 지원제도 홍보, 교육강화
7. 기타(적용 것 : \_\_\_\_\_)

**(문7)에서 2번 응답지만)**

문7-3) 그렇다면, 귀사는 어떠한 내용의 조세지원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벤처기업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8) 귀사는 벤처기업 지원 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

1. 조세지원제도
2. 융자 및 신용보증지원제도
3.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지원제도
4.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제도 : R&D 지원, 병역특례제도, 스톡옵션제도 등
5. 입지지원제도 : 실험실 공간설치 허용,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전용단지 건축금지 특례 등
6. 판로 및 수출지원제도 :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방송광고 지원 등
7.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제도
8. 기타(적용 것 : \_\_\_\_\_)

지난해 5월부터 정부는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시작으로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크게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정책과 '벤처 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나뉘어집니다.

문9-1) 귀사는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시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구분	보기항목
창업·초기단계	1.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신설
	2. 엔젤소속중재 확대
	3. 전문엔젤 육성
	4. 미래창조펀드 조성
	5. 예비창업자 특별보증 신설
성장·회수단계	6. 기술혁신형 M&A 세계특례 도입
	7. 대기업 인수기업의 계열사편입 유예 등
	8. 중소기업 M&A 시 중소기업 졸업 유예
	9. M&A 절차 간소화
	10. 도태펀드의 M&A투자 매칭방식 변경
	11. 성장사다리펀드 등 성장투자 확대
	12.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
	13. 중소기업 M&A 보증 도입
	14. 코스닥 시장본부 독립성 강화
	15.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개선
	16. 코스닥 상장유치·지원 기능 강화
	17. 코넥스 상장·공시 부담 완화
	18. 코넥스 기업 투자제한 완화
	19. 코넥스 시장 세계 지원 확대
제투자단계	20. 주식교환 및 제투자시 과세이연 허용
	21. 벤처1세대 투자 펀드 조성
	22. 해외동포 등 해외투자 유치
	23. 성공 벤처인 등 멘토링 자원 확보

문9-2) 귀사는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벤처 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구분	보기항목
창업 플랫폼 구축 확대	1. 창의성 기반 창업·사업화 추진
	2. 보육기반 투자연계형 창업 프로그램
	3.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4. 공공정보 활용 등 SW 창업 받 조성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의 벤처창업 유입 촉진	5. 스톡옵션 부여 확대 및 세제지원
	6. 출연(연) 연구인력 창업참여 확산
	7. 출연(연), 대학 기술사업화 촉진
	8. 창업미자 도입
기술 보호 및 도용 방지 강화	9. 중소기업 핵심기술 공증 및 유출방지
	10. 해외 특허 출원 지원
	11. 지식재산권 보호펀드 추가 조성
	12. 기술유용 행위 고발 및 과징금 강화
M&A·기술평가 관련 정보유통 확대	13. 기술유용 행위 감시 강화
	14. 중소기업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
제도전 환경 개선	15. 기술평가정보 제공 강화
	16. 계기기업인 자금 및 투자 확대
	17. 연대보증 폐지 확대
	18. 공공정보 등록 선별적 단축
	19. 회생권실행 실시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면접 후 기록**

회 사 명	
응답자 성명	
부 서	
휴대폰 번호	

에 디 터	김 증 원



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 3702-2100, 팩스 (02. 3702-2121), 한국갤럽홈페이지 www.gallup.co.kr, 갤럽패널홈 panel.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KOREA**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ID AI-4

Gallup 2014-162-009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조사\_벤처캐피탈**

--	--	--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향후 벤처산업의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해 금번 조사에서 꼭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사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귀사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우리나라의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는 반드시 조사와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되며, 귀사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7월-8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박무익  
 담당연구원 권수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191



<input type="checkbox"/> 지역 : <input type="checkbox"/> 성 별 : <input type="checkbox"/> 직 위 :	1. 서울 7. 울산 13. 전북	2. 부산 8. 세종 14. 전남	3. 대구 9. 경기 15. 경북	4. 인천 10. 강원 16. 경남	5. 광주 11. 충북 17. 제주	6. 대전 12. 충남
	1. 남자 2. 여자	<input type="checkbox"/> 연 령 :	만 _____세			
	1. 대표 2. 임원/부서장 3. 중간관리(직을 것: _____) 4. 기타(직을 것: _____)	<input type="checkbox"/> 현 직장경력 :	_____년 _____개월			

**● 응답해 주실 때 꼭 지켜 주십시오 ●**

- 응답은 귀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응답을 할 수 있는 대표이사나 회계담당자(임원 및 관리자(과장급 이상)께서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 관련 담당자분(임원 및 관리자)이 아닌신 경우 담당자분께 메일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 귀사의 실태 파악이 목적이므로 응답을 귀사 기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귀사의 일반적인 기업개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1-1) 귀사의 기업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3. 유한회사(LLC)

문1-2) 귀사의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문1-3) 귀사의 자본금과 투자규모는 어떠합니까?(2013년 말 기준)

구 분		항 목
문1-3-1) 자본금		_____ 억원
문1-3-2)	금액	_____ 억원
투자규모(누적)	업체 수	_____ 개
문1-3-3)	금액	_____ 억원
조합출자금(누적)	조합 수	_____ 개

문1-4) 귀사의 주된 투자업종은 무엇입니까?(금액기준)

1. 정보통신
2. 일반제조
3. 생명공학
4. 문화콘텐츠
5. 서비스/교육
6. 원료제생/환경복원
7. 유통
8. 기타

문1-5) 귀사의 주된 투자수단(투자유형)은 무엇입니까?(금액기준)

1. 보통주
2. 우선주
3. 투자사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4. 프로젝트
5. 기타

문1-6-1) 현재 귀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주된(업체 수가 많은) 업력은 어느 단계에 포함됩니까?

1. 초기단계(3년 이내)
2. 중기단계(3년~7년)
3. 후기단계(7년 초과)

문1-6-2) 현재 귀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주된(투자 금액이 큰) 업력은 어느 단계에 포함됩니까?

1. 초기단계(3년 이내)
2. 중기단계(3년~7년)
3. 후기단계(7년 초과)

문1-7) 회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였습니다(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예정 수단)

1. IPO
2. M&A
3. 프로젝트
4. 강의매각 및 상환
5. 기타(해외투자 등)

문1-8) 투자시점부터의 평균 회수기간은 얼마입니까(미회수의 경우 예상 기간)

1. 1년 이내
2. 1년~3년
3. 3년~5년
4. 5년 이상

다음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실태'에 대해 어쨌겠습니까.

문2) 귀사는 다음과 같은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오늘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또한 다음과 같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각각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부와 활용여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도부 항목은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별	조세지원제도	문2-1)인지도부		문2-2)활용여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벤처기업	1.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	2	X	
	2.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20조 제3항)	1	2		
	3. 재산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1	2		
	4. 농어촌특별세 100% 감면(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1	2		
	5.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1	2		
	6.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산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1	2		
	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시행령 제43조의7)	1	2		
	8.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시행령 제43조의8)	1	2		
	9.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제12조의4, 시행령 제11조의3, 제11조의4)	1	2		
	10.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1	2		
	11. 벤처투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이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1	2		
	12. 소득세 비과세(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1	2		
	13. 벤처기업 소득유선 행사의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1	2		
벤처캐피탈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	1	2	1	2
	1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1	2	1	2
	1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4항)	1	2	1	2
	17.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1	2	1	2
	18.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1	2	1	2
	19.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1	2	1	2
	20.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	1	2	1	2
	21.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1	2	1	2

문3) 귀사는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그런 편이다
-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3)에서 1, 2번 응답자만**

문3-1) 그렇다면, 귀사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누구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까?

- 1.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 2. 회사 내 세무전문 인력
- 3. 세무서
- 4. 정부부처(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 5. 동종업체
- 6.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7. 신문·잡지·방송·인터넷
- 8. 협회 등 경제단체
- 9. 기타(적용 것 : \_\_\_\_\_)

**(문3)에서 3, 4번 응답자만**

문3-2) 그렇다면, 귀사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지원 대상이 아님
- 2.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지원제도가 있는지 잘 모름
- 3. 제도가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려움
- 4. 지원내용이 미흡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용하지 않음
- 5. 기타(적용 것 : \_\_\_\_\_)

**다음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4) 귀사의 활용여부와는 상관없이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시고,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해당 순위에 점수를 입력해주시시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보기항목 번호				X
점수(점)				100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4.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 6.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 특례
- 7.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 8.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문5) 귀사는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그런 편이다
-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5)에서 3, 4번 응답지만)**

문5-1) 귀사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가 지원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금액이 미흡하다
2.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항목이 미흡하다
3. 기타(적용 것 : \_\_\_\_\_)

문6) 귀사는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시고,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해당 순위에 점수를 입력해주시시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보기항목 번호				X
점수(점)				100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4.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5.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6.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 특례
7.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8.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다음은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7) 귀사는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1.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의 지원내용을 강화  $\longrightarrow$  [ ]
2.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조세지원제도를 신설  $\longrightarrow$  [ ]
3. 개선할 사항 없음  $\longrightarrow$  [ ]

**(문7)에서 1번 응답지만)**

문7-1) 그렇다면, 귀사는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이 낮아 폐지해야 할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문4, 문6에서 선택한 보기항목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4.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5.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6.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귀속소득 원천징수 특례
7.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8.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99. 없다

**(문7)에서 1번 응답지만**

문7-2) 그렇다면, 귀사는 현행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중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1. 적용요건 완화
2.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3. 신청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4.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5. 의무보유기간 완화
6. 지원제도 홍보, 교육강화
7. 기타(적용 것 : \_\_\_\_\_)

**(문7)에서 2번 응답지만**

문7-3) 그렇다면, 귀사는 어떠한 내용의 조세지원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다음은 “벤처기업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8) 귀사는 벤처기업 지원 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1. 조세지원제도
2. 융자 및 신용보증지원제도
3.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지원제도
4.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제도 : R&D 지원, 병역특례제도, 스톡옵션제도 등
5. 입지지원제도 : 실험실 공간설치 허용,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전용단지 건축규격 특례 등
6. 판로 및 수출지원제도 :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방송광고 지원 등
7.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제도
8. 기타(적용 것 : \_\_\_\_\_)

지난해 5월부터 정부는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시작으로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크게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과 '벤처 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나뉘어집니다.

문9-1) 귀사는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 촉진'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b>구분</b>	<b>보기항목</b>	
창업·초기단계	1. 클라우드 펀딩 제도 신설	
	2. 엔젤소통공개 확대	
	3. 전문엔젤 육성	
	4. 미래창조펀드 조성	
	5.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신설	
성장·회수단계	6. 기술혁신형 M&A 세계특례 도입	
	7. 대기업 인수기업의 계열사편입 유예 등	
	8. 중소기업 M&A 시 중소기업 졸업 유예	
	9. M&A 절차 간소화	
	10. 모태펀드의 M&A투자 매칭방식 변경	
	11. 성장사다리펀드 등 성장투자 확대	
	12.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	
	13. 중소기업 M&A 보증 도입	
	14. 코스닥 시장분부 독립성 강화	
	15.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개선	
	16. 코스닥 상장유치·지원 기능 강화	
	17. 코넥스 상장·공시 부담 완화	
	18. 코넥스 기업 투자제한 완화	
	19. 코넥스 시장 세계 지원 확대	
재투자단계	20. 주식교환 및 재투자시 과세이연 허용	
	21. 벤처1세대 투자 펀드 조성	
	22. 해외동료 등 해외투자 유치	
	23. 성공 벤처인 등 멘토링 자원 확보	

문9-2) 귀사는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벤처 창업 인프라 확충' 정책 중 벤처창업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구분	보기항목
창업 플랫폼 구축 확대	1. 창의성 기반 창업·사업화 추진
	2. 보육기반 투자연계형 창업 프로그램
	3.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4. 공공정보 활용 등 SW 창업 붐 조성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의 벤처창업 유입 촉진	5. 스톡옵션 부여 확대 및 세제지원
	6. 출연(연) 연구인력 창업참여 확산
	7. 출연(연) 대학 기술사업화 촉진
	8. 창업미자 도입
기술 보호 및 도용 방지 강화	9. 중소기업 핵심기술 공중 및 유출방지
	10. 해외 특허 출원 지원
	11. 지식재산권 보호펀드 추가 조성
	12. 기술유용 행위 고발 및 과징금 강화
M&A·기술평가 관련 정보유통 확대	13. 기술유용 행위 감시 강화
	14. 중소벤처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
	15. 기술평가정보 제공 강화
제도전 환경 개선	16. 재기기업인 자금 및 투자 확대
	17. 연대보증 폐지 확대
	18. 공공정보 등록 선별적 단축
	19. 회생권실행 실시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면접후기록	
회 사 명	
응답자 성명	
부 서	
전 화 번 호	
에 디 터	검 증 원

##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김재진·홍범교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바,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쉽게 회수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자금의 선순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즉, 벤처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제도의 정책목표는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구조가 제대로 정착되어 성장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의 성장과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세제상 혜택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 817개, 벤처캐피탈 23개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은 조세지원제도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있다’라는 응답이 벤처기업 77.7%, 벤처캐피탈 73.9%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향후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 폐지, 실효성이 높은 제도 지원내용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벤처기업 56.2%, 벤처캐피탈 60.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및 기업의 성과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효법인세율의 크기를 1999~2013년 동안 6,42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벤처기업이 1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비벤처 중소기업 20.3%, 비벤처 대기업 22.2%로 나타났다. 둘째,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기업 성과가 조세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약 0.2~0.4%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으로 재정여건이나 벤처산업 육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소득세·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등의 제도를 강화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이 향후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방향 의사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당국은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방향을 설계 시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Studies on Improvements for Tax Benefit Systems to Promote Venture Industry

---

Jae-Jin Kim · Beom-Gyo Hong

Venture businesses are 'the newborn SMEs with high risks, independent new technology or ideas, vigorous entrepreneurship, pioneering new markets and potentials for high return in cases of success'. In order to promote establishments and growth of venture business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fficient funds. In other words, the purposes of various policies supporting venture businesses should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venture businesses with well-functioning virtuous circle of 「establishment → growth → return → re-investment」 and correction of market failure.

In Korea, tax benefit systems in support for the growth of venture businesses are widely regulated by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Corporate Tax Act」, 「Income Tax Act」 and 「Local Tax Act」, and mostly targeted for the venture inventors. Lately tax benefits for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extended.

This report illustrates the results from a survey on current status of venture-friendly tax benefit systems with 817 venture businesses and 23 venture capitals as follows. Firstly, the tax benefit systems are known to be the most effective among all other venture-friendly policies: 77.7% of

venture businesses and 73.9% of venture capitals answered 'tax benefits are effective'. Secondly, in regards to improvement for the current tax benefit systems, 56.2% of venture businesses and 60.9% of venture capital answered 'ineffective system must be abolished and effective system must be extended'. Additionally, an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venture-friendly tax benefit systems and business performances has revealed the followings. Firstly, the venture businesses are facing with the lowest effective corporate rate of 16% followed by the non-venture SMEs with the rate of 20.3% and the non-venture large enterprises with the rate of 22.2%.

Secondly, the performance of the businesses with the tax benefits increased by 0.2~0.4% compared to those without tax benefits, which illustrates that the venture-friendly tax benefit systems are effective.

From these findings, this report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s for venture-friendly tax policies: considering both sides of tax revenue and venture upbringing, the ineffective systems have to be abolished meanwhile the effective systems have to be extended in a way to increase the income tax/corporate tax reductions, and to initiate a deferred tax system for the investment return of venture inventors.

It is expected that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venture-fostering tax policies in this report are utilized in establishing the policy directions of venture-related tax benefit systems. It is important to build a national consensus based on this kind of research when policy makers design policy directions for future tax benefit systems.

## ■ 저자약력

### 김 재 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홍 범 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미국 New York 시립대학교 Queens College 경제학과 조교수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원  
허윤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14-08

##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

발행	2014년 12월 31일
저자	김재진·홍범교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전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1-466호
정가	10,000원
조판 및 인쇄	고려씨엔피 (02)2277-1508/9
I S B N	978-89-8191-738-8 93320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